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徐湊教 · 宋栢勳 · 宋泳官 · 鄭智元 · 李彰洙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徐溱敎 · 宋栢勳 · 宋泳官 · 鄭智元 · 李彰洙



서 언

2007년 1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26개국 통상장관들의 DDA의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해온 DDA가 조만간 공식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DDA가 중단된 2006년 7월 이후 공식 재개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라미 사무총장은 DDA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절충의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제네바 차원에서도 주요 협상그룹 의장의 비공식 접촉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요국 각료들에 의한 DDA 공식재개 합의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본격화될 DDA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DDA 세부원칙(modality)의 도출 이후 최근 정상화까지 DDA의 진행과정이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협상 의제별로 핵심 쟁점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DDA 주요 협상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 이후 2006년 7월 DDA 중단까지 과정에 중점을 두어 주요 의제별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주요국간의 대립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DDA의 최종 타결방향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또한 가능성이 높은 DDA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DDA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계측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개될 DDA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정부의 DDA 협상 관계자, 관련 학계와 전문가그룹에 유익한 자료가 됨은 물론 국민들이 DDA를 이해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원장 李 景 台



국문 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2007년 3월 말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된다면, 또는 비록 완벽한 형태의 세부원칙은 아니더라도 주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세부원칙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2007년 말 DDA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DDA 진행추이를 감안할 때 2007년 3월까지의 협상을 통해 그 동안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여왔던 주요국들이 세부원칙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세부원칙 도출의 관건인 삼각쟁점에 대해서 주요국간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이 DDA 타결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절충은 가능할 수 있다.

DDA 주요 의제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농업분야에서는 관세감축 폭과 민감품목의 대우, 그리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보조의 감축 폭 등이 주요 쟁점이다.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적용될 스위스 공식의 계수,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수준, 미양허 품목의 양허에 대한 mark-up 수치 등이 핵심 쟁점으로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의 농산물 관세감축 및 민감품목의 대우에 관해서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는 방어적 입장에 있으며, G20은 미국과 EU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감축에서는 EU와 G20이 미국의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간의 차이가 매우 커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관세 감축 계수가 가급적 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선진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업이 DDA 전체의 진전을 결정하는 핵심분야가 된 상태이다.

농업협상과 같이 기설정 의제인 서비스협상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2002년 이후부터이다. 서비스협상은 양허협상과 규범협상으로 구분되는데, 규범협상의 의제로는 국내규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다.

서비스 양허협상은 2006년에 복수적 R/O(request/offer) 협상방식이 도입되었지만 사실상 2003년 9월 제5차 WTO 칸쿤 각료회의 이후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규범협상의 국내규제는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의 채택’ 등 가시적 성과를 내었지만 다른 분야는 거의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7년 DDA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서비스 양허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규제는 DDA종료 전까지 협정문을 만들기로 한 합의에 따라 논의가 계속될 것이지만, 의미있는 협정문 도출을 위해서는 ‘필요성 심사 도입’ 등 핵심 쟁점에 관해 미국과 다른 회원국간의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DDA 협상의 총 9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채택된 규범분야에서는 반덤핑,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의제이다. 협상 초기에는 논의가 협정의 명료화나 개선과 관련된 이슈 발굴 차원에 머물렀으나,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에는 기제안된 내용에 대한 회원국간의 비공식회의가 계속되었고, 2006년 들어서는 제안서별 논의를 마치고 회원국간의 이견차이를 좁혀 구체적인 조문을 작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범분야에서는 DDA 협상이 재개되면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시작되는 등 급속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DA 예상타결 시나리오에 기초한 DDA 타결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GDP 성장이나 후생증가에서 소폭 손해를 보지만(GDP 증가가 0.88%에서 0.72%로 하락) 산업전체의 산출액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경제전체의 산출액 증가 폭은 15.2억 달러에서 49.1억 달러로 확대)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산출액 증가 폭은 농업의 개도국 유지 또는 선진국 대우 조건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제조업 산출액 증가 폭은 25.2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로 확대, 서비스의 경우 54.1억 달러에서 53.8억 달러로 소폭 감소) 농업부문 자체의 산출액은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도국지위 유지시 28.9억 달러 감소에 그치나 선진국 조건시 64.9억 달러 감소로 산출액 감소 폭이 대폭 확대).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DDA 대응전략 수립시 농업부문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AMA분야에서 우리나라는 DDA 타결로 인해 대(對) 개도국 제조업시장 접근 및 이에 따른 수출증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세감축 공식은 가급적 선진국과 공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계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전기·전자 등 분야별 무세화에도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는 DDA 협상 결과 세계적인 서비스 양허의 대폭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부문의 개방 여부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DDA는 물론 우리나라 스스로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차 례

서언	1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16
3. 연구 내용 및 방법	17
4.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DDA 개요	21
1. DDA 출범 배경	22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23
3. 협상 경과	26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26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7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28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29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33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37
1. 농업	38
가. 협상 동향	38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41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52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58
가. 협상 동향	58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63
다. 향후 협상 전망	74
3. 서비스	75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75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86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99
4. 규범	100
가. 개요	100
나. 논의 동향	101
다. 향후 전망	111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13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114
가. 국가 및 산업분류	114
나. 분석 시나리오	117
다. 데이터베이스	119
2. 분석결과	122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122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128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137
가. 농업부문모형	137
나. 대상 품목	139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139
라. 파급 영향	141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47
1. DDA 전망	148
가. 낙관적 전망	149
나. 비관적 전망	151
2. DDA 대응 전략	153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153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155
참고문헌	167
부록	169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170
2. 농업부문모형	172
Executive Summary	177



표 차례

표 2-1. 다자무역협상	22
표 2-2. DDA의 주요 의제	24
표 2-3. DDA의 협상의제별 기구	25
표 2-4. 2005년 DDA 관련 주요 통상 관련 회의	32
표 3-1. 2006년 DDA 농업 협상	40
표 3-2. 주요국의 입장: 관세감축	42
표 3-3. 주요국의 입장: 민감품목	45
표 3-4. 주요국의 입장: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	47
표 3-5. 주요국의 입장: 국내보조분야	50
표 3-6. G6 국가의 농산물 관세 감축 모의실험 결과	53
표 3-7.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모의실험 결과	55
표 3-8. 미국의 CCP 지급 수준(2002~04년 평균)	56
표 3-9. 이중계수 관련 국가별 입장	65
표 3-10. 분야별 무세화가 논의되는 분야	69
표 3-11. 한국의 NTB 최종 리스트	71
표 3-12. 1차 양허요청서 제출 및 접수 현황	77
표 3-13. 국내규제 각국 입장	88
표 3-14. ESM 각국 입장	95
표 4-1. 국가분류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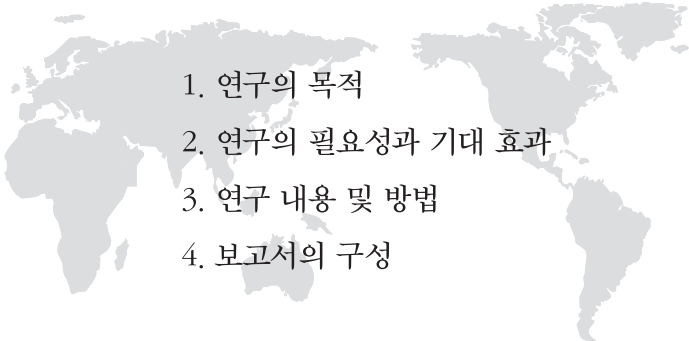
표 4-2.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표	116
표 4-3. DDA 효과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118
표 4-4. WTO 양허세율 및 실행세율	120
표 4-5. 국가별 서비스부문별 관세상당치	122
표 4-6. 시나리오별 거시경제효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24
표 4-7. 시나리오별 산출액변동: 한국에 미치는 영향	127
표 4-8. 시나리오별 거시경제효과: 각 협상그룹에 미치는 영향	132
표 4-9. 시나리오별 농업생산액의 변화	141
표 4-10. 시나리오별 곡물 생산액의 변화	142
표 4-11. 시나리오별 채소 생산액의 변화	143
표 4-12. 시나리오별 과일 생산액의 변화	145
표 4-13. 시나리오별 축산 및 낙농 생산액의 변화	146
표 5-1. 개발단계별 평균 양허 현황(2004년 3월 현재)	161
부표 1-1. 중남미 3개국 제안 조정계수 옵션	171



그림 차례

그림 4-1. 농업부문 전망모형의 기본 틀	138
그림 5-1. 기존 양허 관련 개선된 분야(2005년 초 현재)	162
부도 3-1. 농업부문모형의 수출입 결정구조	176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목적

2006년 11월 16일 라미(Lamy)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사무총장은 임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를 소집하여 사실상 DDA의 정상화를 선언하였다. 비록 DDA의 재개를 명확히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협상그룹별로 진행해 온 개별 접촉(contact)을 다자화(multilateralizing)하는데 광범위한 지지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2007년말 까지 DDA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2007년 3월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해 왔던 DDA는 공식적인 협상 재개의 발판이 만들어졌으며, 2007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DDA 협상추이와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할 때, 2007년 3월말까지 세부원칙(modality)의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DA 진전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분야에서 미국이 농업보조금의 추가 감축 의사를 비치고 있으나, 여전히 대폭적인 농산물 관세 감축과 TRQ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EU와의 타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도 관세감축의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며, 서비스분야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DDA 타결의 핵심 전제 조건인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의 연장을 위한 여건 마련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DDA를 둘러싼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경 DDA의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말 DDA 타결을 위해서는 늦어도 2007년 3월까지의 세부원칙이 합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하고, 3월에 주요국의 정치적 타

협을 강력히 종용한다는 협상전망이다. 이럴 경우 DDA는 내년 3월말을 전후해 급진전되어 2007년말에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세한 전망은 2007년말 DDA 종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업, 비농업, 서비스 등 시장접근분야 주요 협상에서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을 감안할 때 2007년 3월말까지의 협상을 통해 DDA의 세부원칙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결국 DDA는 2007년 3월을 전후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2007년 3월말까지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되고, 미국의 TPA가 순조롭게 연장된다면 DDA는 2007년 말에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여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9년 중으로 DDA 결과가 이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7년 3월말 세부원칙 도출에 실패한다면 DDA는 2~3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WTO에 의한 다자적 무역자유화라는 가치의 손상은 물론 WTO 자체의 근본적인 회의론까지 등장하여 WTO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재개될 DDA에 맞추어 주요 협상의제별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2004년 7월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도출 이후 2006년 말까지 DDA 주요 협상의제별 논의 동향과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검토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이후 2006년 7월 DDA 중단까지의 협상 전개과정에 중점을 두고, 주요 의제별로 핵심 쟁점과 주요국간의 대립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DDA의 최종 타결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또한 DDA 타결 전망에 기초하여 DDA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계측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파급영향 계측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재개될 DDA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및 협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의 DDA는 FTA와 함께 향후 국제통상의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타결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¹⁾ 국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DA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측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동시 다발적인 FTA의 추진으로 자칫 DD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소홀해 질 수 있다. 그러나 DDA는 FTA와 달리 양국간 특정 관심품목에 대한 상호 입장 배려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실적인 무역 규범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따라서 DD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FTA에 결코 못지않다. 그러므로 DDA의 타결 방향을 사전에 전망하여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향후 DDA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최근까지의 DDA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장, DDA 타결 전망 및 그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은 DDA의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는 물론 우리 정부가 DDA의 주요 의제별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학술적으로도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고려한 중장기 자본 축적효과를 연구대상으로 한 점과 세부 품목별 접근이 필요한 농업부문은 부분균형모형에 의한 파급영향 분석 결과를 보완한 점은 기존 DDA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태적 분석 및 거시적 분석의 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2004년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GDP비중은 83.8%이다. 이는 아일랜드(144.9%), 네덜란드(125.5%) 보다는 낮지만 미국(24.1%), 일본(24.3%), 독일(71.1%) 등의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4년 ‘기본골격 합의’이후 최근까지 DDA의 주요 협상의제별로 협상 동향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드러난 핵심 쟁점별로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DDA 타결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가능성이 높은 DDA 타결전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DDA 타결이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및 무역, 개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는 것도 주요 연구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계측된 영향에 기초하여 DDA의 주요 의제별로 대응전략을 수립·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연구대상 분야를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서비스 등 3개의 시장접근분야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로 논의 동향, 협상 쟁점, 주요국의 입장, 향후 타결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²⁾ 이와함께 각종 보조금 및 지역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규범분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과 향후 협상 전망을 추가해 DDA 연구의 전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연구방법으로 WTO의 사무국 배경문서는 물론 개별 위원회 자료와 각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문헌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각국의 무역 및 관세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DDA 타결이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와 무역 및 개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GE 분석과 부분균형분석을 병행하였다. 특히 CGE분석에

2) DDA에서 다루고 있는 협상분야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지적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DSU) 등 모두 9개이다. 이 가운데 무역원활화는 2004년 7월 기본골격 합의안(일명 July Package) 이전까지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하나였으나, 기본골격 도출이후 무역원활화 분야만 협상을 시작하고 나머지 3개 분야는 이번 DDA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합의되었다.

서는 양허세율과 실행세율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급영향을 계측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을 시도하였다. CGE모형을 이용하여 DDA 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기존 연구에서는 WTO에서 논의되는 관세 감축률을 그대로 GTAP 자료상의 감축률로 설정하여 파급영향을 계량화하고 있다. 그러나 GTAP상의 관세는 실제 무역거래를 반영한 세율로서 실행세율에 가깝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WTO에 양허한 양허세율과 실제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실행관세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양허관세가 실행관세보다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축률을 그대로 GTAP 감축률로 적용하면 실제 관세감축의 파급영향은 과도하게 추정되기 십상이다.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허세율이 실행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양허관세 감축률을 실행세율 감축률로 보고 동일한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은 자칫 시장개방에 의한 파급영향을 과도하게 추정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TAP상 산업분류별로 CGE모형에서 적용되는 실행관세와 WTO 양허세율을 구하고, 양허관세 감축과 실행세율 감축간의 관계식을 설정하여 GTAP 상의 실행세율 감축 폭을 계산하고 이를 모의실험에 적용하였다.

또한 무역 자유화의 효과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정태효과 파악에 머물지 않고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동태적 성격을 모형을 설정하여 파급영향을 전망하여 기존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심이 큰 농업부문은 품목별 영향분석을 위하여 부분균형모형에 기초한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CGE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DD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종합적인 접근방안을 취한 점이 이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다.

4. 보고서의 구성

DDA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 DDA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였다.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까지를 1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³⁾ 이 단계의 협상은 각국의 기본 입장 제시와 세부원칙 도출 실패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제 2단계는 칸쿤 각료회의 이후 2004년 7월,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이 합의되기까지로 볼 수 있다. 이는 그 만큼 세부원칙의 도출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비록 세부원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기본골격이 합의·도출된 데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골격 도출이후부터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를 3단계로, 2006년 협상을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DDA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DDA의 핵심 의제인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및 규범 분야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주요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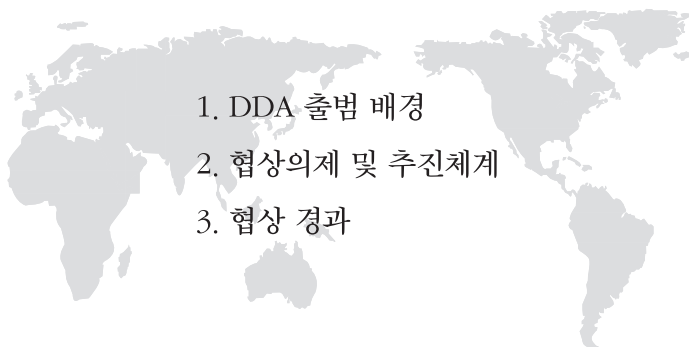
4장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DD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단된 DDA의 최종 타결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핵심 쟁점별로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5장에서는 최근의 협상 재개 움직임과 함께 향후 DDA를 전망한 후 주요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3) 이러한 구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지만, DDA가 전개된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DDA 전체 흐름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구분된 것이다.

4) 시나리오는 DDA의 최종 타결방향을 예측하여 설정되었으나, 동시에 향후 재개될 DDA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쟁점도 고려되었다.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1. DDA 출범 배경

WTO/DDA는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설립 이후 9번째, 1995년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

DDA 이전의 다자무역협상(일명 라운드)은 1986~93년 동안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가 대표적이다. UR 결과 WTO가 설립되어 1994년 정식 발족되었으며, 이로서 기존 GATT와 달리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가 확립되었다.

표 2-1. 다자무역협상

차수	라운드 명칭	협상연도	참여국가수
1	제네바(Geneva)	1947	23
2	애너지(Annecy)	1949	33
3	토르퀘이(Torquay)	1950	34
4	제네바(Geneva)	1956	22
5	딜론(Dillon)	1960~61	45
6	케네디(Kennedy)	1962~67	48
7	도쿄(Tokyo)	1973~79	99
8	우루과이(Uruguay)	1986~93	123
9	DDA(Doha)	2001~현재	149

주: 1) DDA는 출범 당시(2001. 11) 14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2001. 12), 대만(2002. 1) 아르메니아(2003. 2), 마케도니아(2003.4), 네팔(2004. 4), 캄보디아(2004. 10), 사우디아라비아(2005.12)등 7개국이 가입하여 12월 현재 149개국이 참가.

자료: 최낙균 외(2002), WTO(<http://www.wto.org>)

한편 UR에서는 일반 상품의 관세이외에 서비스(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등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마련되어 다자무역체제의 범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DDA 출범의 근본 배경으로 무엇보다도 UR 협상결과를 이행하면서 드러난 다수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UR이 농업을 다자간 무역규범 아래로 편입시키기는 데는 성공했으나, 높은 관세를 대폭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분야는 서비스분야와 함께 2000년부터 다시 협상을 하기로 미리 규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도 관세감축 및 UR 당시 양허하지 않은 품목의 시장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FTA 추진 움직임도 DDA의 출범 배경이다. 거대 경제권과 다양한 형태의 FTA체결로 인해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대폭적인 무역자유화가 구체화되자 WTO와의 괴리가 발생함은 물론 WTO를 바라보는 회원국들의 시각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개도국들의 개발 요구와 맞물려 WTO가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과감한 시장개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DDA의 출범이라는 결과를 낳았다.⁵⁾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DDA는 총 9개의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는 2000년 초부터

5) 한편 이전 라운드와 달리 DDA가 개발아젠더로 명명된 주요 원인은 개도국들의 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은 이전까지의 다자무역협상에서와 달리 단순한 시장개방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새롭게 출범하는 뉴라운드에서는 반드시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새로운 라운드는 이와 같은 개도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하개발아젠더로 정해졌다.

협상이 시작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이다. 나머지 7개 의제는 비농산물 시장 접근(NAMA), 규범,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등이다.

규범(rules)에서는 반덤핑, 보조금(수산물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싱가포르 이슈에서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포함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⁶⁾

이러한 9개 의제중 핵심은 농업과 NAMA, 서비스 분야인데 현재와 같이 DDA가 중단된 주요 원인도 이들 세 개 분야, 특히 농업과 NAMA에서의 주요국간 입장 대립이 근본 원인이다.

WTO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GC)이다. 다만 DDA의 원활한 진행과 감독을 위해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설치되어 있어서 DDA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2. DDA의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물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주: 1)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는 협상을 개시하고 나머지 3개 분야는 DDA협상의제에서 제외하기로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되었음.

자료: 강문성(2004),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웹페이지(<http://www.wtodda.net/>).

6)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포르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을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국 대표(주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모여(원칙적으로 2년에 1번 개최) 핵심 쟁점을 결정한다. 상설기구인 일반이사회(주로 각국의 WTO 대사가 대표로 참석)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며, 평소에는 각료회의의 임무를 대행하고 있다. 무역협상위원회(의장: WTO 사무총장)는 일반이사회의 정례회의마다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시 협상기구를 설치하고, DDA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개별 의제에서의 협상 진행은 TNC에서 결정한 대로 분야별 특별회의의장의 주재아래 진행되고 있다.⁷⁾

표 2-3. DDA의 협상의제별 기구

협상의제		담당기구
농업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서비스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시장접근 협상그룹(신설)
WTO 규범(반덤핑, 보조금 등)		규범 협상그룹(신설)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신설)
지식재산권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GI) 다지등록시스템 설치 협상	TRIPS 이사회 특별회의
	의약품 특허특례, TRIPS협정 재검토	TRIPS 이사회
무역과 환경		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
무역과 개발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분쟁해결양해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

자료: 최낙균 외(2002), WTO(<http://www.wto.org/>)

7) TNC는 2002년 2월, NAMA, 규범 등 2개의 분야별 협상그룹을 설치하고 해당협상그룹이 세부 협상을 진행토록 한 바 있으며,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 등의 사안은 해당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DDA는 2001년 11월 도하 각료선언으로 출범되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2002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 의제인 경우 DDA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NAMA, 규범 등의 협상그룹은 2002년 2월에 설치되어 같은 해 3월에 1차 협상이 열렸다. 1차 협상에서는 의장단 소개 및 향후 협상 일정과 방식 등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사실상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DDA는 주요 의제별로 협상이 진행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주요국의 참여한 입장 대립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농업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목적으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수출국과 EU와 일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수입국의 참여한 입장 대립으로 세부원칙 도출시한(2003년 3월말)을 지키지 못했다.

NAMA 분야에서도 고관세 및 관세누진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세인하공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2003년 5월로 설정된 협상방식의 합의시한을 넘겼다.

서비스분야협상은 양허분야에서 선진국들이 금융, 통신, 환경,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폭 넓은 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개도국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신 인력이동이 자유화를 요구해 선·개도국간 입장대립이 계속되었다. 전반적으로 140여개 회원국 가운데 40여개 국가만이 서비스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서비스 규범분야는 개도국들이 세이

프가드 규범의 조기 수립을 요구한 데 반해 선진국들은 이에 소극적으로 일관했으며, 보조금이나 정부조달분야도 논의가 부진한 실정이었다.

결국 DDA는 전분야에 걸쳐 출범당시 제시된 협상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개도국 우대조치(S&D) 강화(2002년 6월말), 이행문제(2002년 12월말)는 자연스럽게 협상시한을 넘겼으며, 일부 S&D문제에 대한 합의안이 칸쿤 각료회의에 상정되긴 했지만, 결국 채택되지는 않았다[재정경제부(2003)]. 다만 2002년말이 시한이었던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결정은 다음 해인 2003년 8월에 가서야 어렵게 채택되었다(WT/L/540). 이 결정⁸⁾은 비록 계획보다 늦어진 했지만 이 시기의 DDA의 가장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WTO 각료회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로 인해 결렬로 막을 내렸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DDA의 전체 일정을(2005년 1월 1일 DDA 종료)을 고려하여 그 중간점인 2003년 9월에 개최됨으로써 그동안의 DDA 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DDA 진전을 위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는 중간점검 성격의 각료회의였다.

그러나 DDA가 2003년 상반기까지의 세부원칙 도출에 실패하고 농업 등의 협상에서 사실상 교착상태를 빠지자 회원국들은 칸쿤 각료회의의 기대수준을 낮추었다. 즉 수출입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을 보이고 있던 농업과 NAMA 등 분야에서 세부원칙 대신에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세부원칙의 기본골격을 도출하는 것으로 기대수준을 낮추고,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도 관련 협상을 개시하는 정도로 각료

8) 의약품 수출국은 TRIPS협정의 강제실시권을 통해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회원국이 필요한 물량만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의를 마무리짓는다는 차원에서 회의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쿤 각료회의는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 개시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는 한편 농업분야의 핵심 쟁점을 두고 선진국과 수출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사실상 기본골격 조차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각료회의 의장은 협상의 기본 골격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절충 실패를 이유로 각료회의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원인으로 주요 협상의제에 관한 회원국간 이견 대립, WTO 구조적 의사 결정 문제, 지역주의의 확산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표면상 드러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 여부 말고도 농업, NAMA,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등에서 회원국간 첨예한 입장대립이 칸쿤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핵심 원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WTO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즉 WTO의 의사결정은 ‘합의(consensus)’방식인데, 회원국이 148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합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수적으로 늘어난 개도국이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 2000년 이후 FTA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DDA와 같은 다자무역협상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감소한 점도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협상은 2004년 3월을 넘기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2004년 4월 쥘릭(Zoellick) 미국 USTR 대표(당시)의 주재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되

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EU가 농업 및 싱가포르 이슈에서 신축성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OECD 각료회의에서 DDA의 진전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데 일조하였다. 이에 따라 DDA는 7월말을 시한으로 농업, NAMA, 싱가포르 이슈 등의 분야에서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2004년 8월 1일 새벽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WT/GC/W/535)이 채택되었다.

상기 합의문 3항에 따라 도하 각료선언문 45항에 나타난 2005년 1월 1일의 DDA 시한은 자동 연장되었으며(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협상을 지속) 결국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⁹⁾

이와 같은 DDA의 연기는 DDA 이전 다자무역협상이었던 UR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UR은 최종 타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음), 미리 예견되어온 사실이 었다[최낙균 외(2003, pp. 309~311)]. 다만 WTO와 회원국 모두는 UR의 경험을 통해 다자무역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DDA가 UR처럼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결국 DDA는 비록 세부원칙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세부원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기본골격(종종 ‘7월 패키지(July Package)’라고 부르기도 함)은 이후 DDA 진전의 기초가 되었다.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기본골격 합의이후 DDA는 빠른 진행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농업 협상에서 비종가세의 종가상당치를 계산하는 문제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다

9) 2004년 10월 20일 WTO 일반이사회는 제6차 홍콩 각료회의의 개최시기를 2005년 12월 13~18일로 확정하였음.

른 분야의 협상도 농업협상과 연계하여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기본골격이 합의 도출된 이후 WTO 회원국간에 형성된 공감대는 (1)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자유화를 위한 세부원칙(modalities)을 조속히 마련하고, (2) 서비스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장개방 양허안(critical mass of market opening offers)을 확보하며, (3) 규범과 무역원활화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실현하고, (4) 모든 협상분야에서 개발(development dimension) 요소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2005년 7월까지 홍콩 각료회의를 위한 1차 윤곽(first approximation: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한 1차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에 임했으나, 결국 2005년 7월 말까지 1차 윤곽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단지 개별 협상그룹의장이 그 때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작성한 '현황 보고서(status reports)'만이 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05년 9월에 재개된 DDA는 WTO의 신임집행부 출범과 함께 12월로 예정된 홍콩 각료선언문의 초안 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농업, NAMA,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시장개방 감축수치가 주요국의 제안을 통해 제시됨으로써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라미(Pascal Lamy) 사무총장은 11월 26일 각료선언문 1차 초안을 배포하였다. 동 초안은 농업, NAMA 등 기존 주요 협상의제에 앞서 개도국의 관심 이슈인 개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DDA의 성과물을 '개발 package'로 하려는 사무총장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12월 1일 라미 사무총장은 홍콩 각료선언 제2차 초안을 배포하였는데, 2차 초안에서는 개별협상그룹 의장보고 내용 중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이후 농업 및 NAMA 분야의 협상 진전 내용을 본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2차 초안은 12월 2일 개최된 일반이사회(GC)에서 홍콩 각료회의에 상정할 각료선언문

초안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일반이사회는 수정된 제3차 초안을 다시 채택하였는데 (12월 7일), 3차 초안에는 서비스 관련 분야의 추가적인 bracket, 통가(Tonga)의 WTO 가입,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제3차 초안에는 (1) 농업, NAMA 협상 관련 세부원칙의 결정과 양허표 제출 시한, (2) 서비스협상 관련하여 제출된 협상그룹 의장보고서(협상목표, 접근방식, 작업일정)를 향후 협상의 기초로 활용할지 여부, (3) 환경상품 협상의 방식 및 일정, (4)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제공 시한 및 범위 등 4가지를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표시하면서 각료들의 결정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졌다.

한편 일반이사회에 앞서 11월 30일 개최된 그린룸(Green Room)회의에서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의할 핵심이슈(농업: 5가지, NAMA: 3가지)가 합의되었다. 농업 분야에서 5가지 핵심 쟁점은 (1) 국내보조 감축공식의 요소 및 국내보조에 대한 규율, (2) 관세감축 공식의 요소 및 신축성, (3)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시한 합의를 위한 parallelism과 관련 합의에 필요한 사항, (4) 면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 (5) 개도국 우대조항 등이었으며, NAMA 분야에서의 3가지 핵심 쟁점은 (1) 관세감축공식 및 관련 요소, (2) 신축성 관련 미결 쟁점, (3) 미양허품목 처리 문제(mark-up) 등이었다.

12월 13~18일 동안 홍콩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발(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 농업(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 비농산물 시장접근(관세인하공식) 등이었다. 이러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미국과 EU는 회의를 간 내내 참여한 입장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또다시 각료회의가 결렬될 경우 DDA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인식한 주요국들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여 어렵게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각료선언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분야에서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이 2013년으로 확정되었다는 점과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스위스공식을 적용하는데

합의한 점, 그리고 개발분야에서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
를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¹⁰⁾ 또한 각료선언문은
2006년말 DDA 종결을 목표로 2006년 4월까지 세부원칙을 도출하고, 2006년 7월
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야심찬 협상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홍콩 각료회의는 협상분야별로 완벽한 세부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개최된 회의로서 어려운 가운데 각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향
후 DDA 진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각료
선언문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협상의 실질적 진
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2004년 7월 기본골격 도출이후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주요 통상장
관 회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2005년 DDA 관련 주요 통상 관련 회의

일자	회의	장소	비고
3월 2~4일	소규모 각료회의	케냐	-
3월 18~19일	G20 각료회의	인도	-
5월 2일	G10 각료회의	프랑스 파리	AVE 전환 합의
5월 4일	OECD 각료회의	프랑스 파리	-
6월 2~3일	APEC 각료회의	한국 제주	NAMA 스위스공식 지지
6월 11~12일	G33 각료회의	인도네시아	-
7월 12~13일	소규모 각료회의	중국 대련	G20 농업분야 관세감축공식지지 확산
7월 21~22일	무역협상위원회	스위스 제네바	-
11월 7일	주요 5개국* 각료회의	영국 런던	-
11월 8~9일	주요국 회의	스위스 제네바	사무총장 주재 회의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	한국 부산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12월 13~18일	제6차 WTO 각료회의	홍콩	-

주: 2005년 9월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각 분야별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음.

* FIPs(Five Interested Parties): 미국, EC, 인도, 브라질, 호주 등 주요 5개국

10) 홍콩 각료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강문성(2005), “홍콩 각료회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오늘
의 세계경제 05-4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DDA 협상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2006년 4월말 세부원칙(modality) 합의·도출이라는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2006년 초부터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DDA의 핵심인 농업협상은 예년과 달리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개최되었으며,¹¹⁾ DDA를 주도하고 하고 있는 주요 6개국(G6)¹²⁾도 각료급 또는 실무 고위급(Senior Official Meeting: SOM) 회담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매월 공식,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DDA는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이해절충이 미진하여 4월말 세부원칙 도출을 지킬 수 없게되었다.

DDA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가로 막고 있는 핵심 쟁점은 소위 ‘삼각쟁점(triangle issues)’으로 불리는 농업과 NAMA에서의 관세 감축 폭과 농업보조금의 감축 폭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대립이었다. 즉 그동안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 설정이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2013년으로 합의된 이후, DDA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위한 남은 핵심 쟁점은 농업분야에서의 보조금 및 관세 감축 폭과 NAMA에서의 개도국의 관세 감축 폭 등 3가지로 좁혀졌다.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는 무역왜곡보조의 감축 폭이 주요국간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핵심 쟁점이다. 농산물 관세 감축 폭과 관련해서는 구간별 관세 감축률과 민감품목의 대우가 핵심쟁점이다. NAMA에서는 관세인하공식으로 스위스공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핵심쟁점은 개도국에게 적용될 계수(실질적

11) 예년의 경우 농업협상의 대개 3월초부터 시작되어 1년에 6~7차례 진행되었다.

12)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가 주요 4개국(G4)이며, 호주가 일본이 추가되어 주요 6개국(G6)을 이룬다.

으로 관세상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의 크기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 계수를 놓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삼각쟁점은 공교롭게도 DDA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과 EU, G20¹³⁾ 등 3대 핵심 세력의 이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특히 각 세력간에 쟁점별로 공세적 입장과 수세적 입장이 서로 얹혀 있어, DDA 전체의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는 EU와 G20가 연합하여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관세 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G20가 같은 편에서 EU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 NAMA의 관세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EU가 연대하여 개도국을 대표되는 G20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2006년 4월 세부원칙 도출이 어려워지자 이의 마지막 시도로 5월부터 6주간 연속협상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6년 6월 개별 협상그룹의장은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제시된 초안을 기초로 2006년 7월 24일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마지막 타협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국내보조감축에서 미국이 기존입장을 고수하여 주요국간 절충이 어려워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DDA 모든 분야에서의 협상 중단(suspend)”을 선언하였다.

DDA 중단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경직된 입장을 들 수 있다. 미국은 EU와 브라질, 인도의 무역왜곡 농업보조금의 추가감축 요구에 대해 EU의 농산물 관세 인하 및 TRQ 확대 폭 미흡과 개도국의 과도한 특별품목 요구를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라미 총장의 협상 중단 선언은 사실상 7월 말로 예상되었던 세부원칙 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협상시한을 연기하기보다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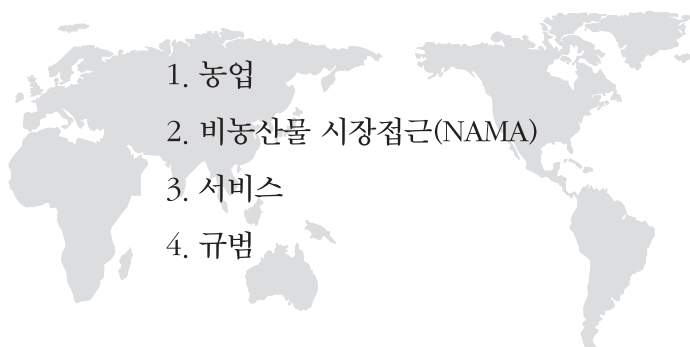
13) 지난 2003년 멕시코 각료회의 개최 직전에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으로 주로 선진국의 농업보조와 관세의 철폐 내지 대폭 감소를 주장하고 있음.

협상시한의 반복적인 미준수로 인한 협상동력의 상실을 막고, 다른 한편 회원국들 간 WTO 체제의 위기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재개시 서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DDA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라미 사무총장의 정상화 발언으로 사실상 공식 재개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라미 총장의 제안은 DDA의 재개(resumption)를 의미하기 보다는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07년 3월말까지는 세부원칙에 대한 라미총장의 초안이 제시되어 정치적으로 세부원칙 도출에 대한 주요국간 정치적 입장절충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주요국간 타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교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촉진권한이 연장되고, 미국의 기대수준이 다소 하향 조정되거나 또는 EU가 일부 양보를 한다면 DDA는 2007년 말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1) 2006년 1월~4월

농업협상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2006년 4월말 세부원칙(modality) 합의·도출이라는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2006년 초부터 빠른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농업협상은 예년과 달리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개최되었으며,¹⁴⁾ 농업협상을 주도하고 하고 있는 주요 6개국(G6)¹⁵⁾도 각료급 또는 실무 고위급(Senior Official Meeting: SOM) 회담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이해절충이 미진하여 4월말 세부원칙 도출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2006년 1월 협상은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1월 농업협상 직후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국 각료들은 4월말 세부원칙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으며,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의장도 핵심 쟁점별로 상세한 질의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향후 협상은 이를 토대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세부원칙에 필요한 문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찬 추진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1월의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는 2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월 농업협상부터는 팔코너의장이 제시한 쟁점별 질문서를 중심으로 분야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홍콩각료회의 당시 수준에서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주요 6개국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

14) 예년의 경우 농업협상의 대개 3월초부터 시작되어 1년에 6~7차례 진행되었다.

15)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가 주요 4개국(G4)이며, 호주가 일본이 추가되어 주요 6개국(G6)을 이룬다.

한 타협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이어졌다.

4월 말 세부원칙 도출 시한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3월 협상에서는 국내보조와 식량원조에서 일부 진전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와 보조금 감축 폭,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4월 말 세부원칙의 마련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특히 4월 초 브라질에서 열린 미국, EU, 브라질 3개국 통상장관의 회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이 실패로 끝나자 4월 세부원칙 도출은 사실상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2) 2006년 5월~7월

4월 협상에서 세부원칙 도출이 불가능해지자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의장은 현재의 협상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세부원칙을 도출하고자, 5월 초부터 2주 단위로 연속해서 3번의 농업협상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협상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협상은 5월초부터 시작하는 2주간 연속협상에 들어갔다.

6주간의 연속협상 마치고 팔코너 의장은 6월 21일 농업분야 세부원칙을 배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6월 29일~7월 1일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을 놓고 주요국들이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다시 실패하였다.

농업협상에서의 타협안 도출 실패로 NAMA 등 진전되지 않자 DDA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라미 사무총장은 G8 정상회담(7. 15~1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참가하여, 8개국 정상들에게 DDA 진전을 요청하였다. 이에 7월 23일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마련해 보고자 개최된 G6 각료회의(7. 23~24)에서도 미

국이 국내보조분야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사실상 7월말로 예정된 세부원칙 도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라미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DDA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G6 각료회의에서 EU는 농산물 관세감축 폭을 놓고 기존의 자신의 입장(평균 38% 감축)에서 신축성을 보여 G20 제안에 가까운 평균 50% 감축과 무역왜곡보조의 75% 감축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과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민감품목의 TRQ 확대 수준을 놓고 미국과 EU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국 타협안 마련은 실패로 끝났다.

표 3-1. 2006년 DDA 농업 협상

1월 23~27일	1월 농업협상 (스위스, 제네바)
1월 27~28일	소규모 각료회의 (스위스, 다보스)
2월 9일	팔코너 의장 질의서 배포
2월 13~17일	2월 농업협상 (스위스, 제네바)
2월 21~22일	미국·EU 통상장관 회담 (미국, 워싱턴)
2월 27~3월 1일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프랑스, 파리)
3월 7~8일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스위스, 제네바)
3월 10~12일	G6 각료회의 (영국, 런던)
3월 20~24일	3월 농업협상 (스위스, 제네바)
3월 27~28일	G12 실무 고위급회담 (스위스, 제네바)
3월 31~4월 1일	3차(미국, EU, 브라질)통상장관회담(리우데 자네이루)
4월 6일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프랑스, 파리)
4월 18~21일	4월 농업협상
4월 21일	그린룸(Green Room)회의 (스위스, 제네바)
5월 11~22일	농업협상
5월 22일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프랑스, 파리)
5월 23일	소규모 각료회의(프랑스, 파리)
5월 29~6월 2일	연속 농업협상
6월 12~19일	연속 농업협상
6월 22일	의장초안 배포
6월 27일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스위스, 제네바)
7월 17~18일	G8 정상회담
7월 23~24일	G6 각료회담
7월 24일	라미 사무총장 DDA 중단을 선언

한편 미국은 EU의 새로운 제안이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기대 수준과는 거리가 있고, 동시에 개도국들의 특별품목 요구 등도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DDA 농업협상의 목표수준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보조에서의 EU와 G20의 추가감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2006년초부터 DDA 중단까지 농업협상 관련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1) 시장접근분야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은 관세 감축 폭이지만 이의 예외를 적용받는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가 실질적인 시장개방 폭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감축 폭과 민감품목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개도국우대의 일환으로 제시된 특별품목이 관세감축에서 예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리고 수출 개도국의 입장에서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도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특히 이러한 쟁점들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 쟁점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 관세 감축 폭

관세구간의 수는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4개로 이미 확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간 경계와 구간별 관세 감축률은 수출입국간 입장 차이로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미해결 쟁점으로 남겨 놓았다. 다만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은 G20의 제안이 타협의 기준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구간별 감축률에 대해서 미국은 최상위 관세구간에 평균 90% 감축을, 그 다음

으로 높은 구간에는 평균 80% 감축을, 세 번째 구간에는 평균 70%, 그리고 최하위 구간에서는 평균 60%의 관세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EU는 최상위 관세구간에 60% 감축을, 그 다음 구간에는 55% 감축을, 세 번째 구간에는 45%, 그리고 관세가 제일 낮은 최하위 관세구간에는 평균 35% 감축(최소 25, 최대45)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G20는 미국과 EU의 절충점으로 최상위 관세구간에서부터 75%, 65%, 55%, 45%(개도국은 40%, 35%, 30%, 25%) 감축률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G10은 예시적인 수치로서 45%, 37%, 31%, 27%(단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 감축률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세상한 설정에 관해서는 G10과 ACP를 제외한 주요 4개국(그룹) 모두가 관세상한 설정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75%를, EU와 G20은 100%(단 개도국 150%)를 관세상한으로 제시하고 있어, 관세상한에 관한 한 G10이 매우 불리한 형편이다. 다만 관세상한이 모든 농산물에

표 3-2. 주요국의 입장: 관세감축

	관세감축	
	경계	감축률
EU	선진국 (30-60-90) 개도국 (30-80-130)	선진국 35-45-50-60% (최하위구간은 20~45%) 개도국 (선진국 2/3 수준) (관세상한 선진국 100%, 개도국 150%)
미국	(20-40-60)	progressive linear(평균 60-70-80-90%) 관세상한 75% (선진/개도국구분 불확실)
G20	선진국 (20-50-75) 개도국 (30-80-130)	선진국 (45-55-65-75%), 개도국 (25-30-35-40) (관세상한 선진국 100%, 개도국 150%)
G10	선진국 (20-50-70) 개도국 (30-70-100)	선진국 (27-31-37-45%), 개도국 (선진국의 2/3수준) (관세상한 설정 반대)
ACP	선진국 (20-50-80) 개도국 (50-100-150)	선진국 (23-30-35-42), 개도국 (15-20-25-30) (관세상한 설정 반대)

예외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G20는 민감품목에도 관세상한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미국과 EU의 제안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나)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민감품목의 수로 미국은 농산물 전체 세번 수의 1%를 제시하고 있다. G20는 최대 1%(개도국은 1.5%)를 제시하면서 그 수가 늘어날 경우 더 많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는 종전 전체 세번 수의 16~22%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 농산물 전체 세번의 최대 8%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하위 관세구간에 관세감축의 융통성이 허용된다면, 민감품목의 수를 4%까지 축소·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7월의 G6 각료회의에서 EU는 민감품목의 수에 추가적인 융통성을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G10은 민감품목 개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전체 세번 수의 10% 내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감품목의 대우와 관련하여 수출입국간 근본적인 차이는 TRQ확대 폭에 있다. 수출국들은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현행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TRQ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G10은 원칙적으로 현행 TRQ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은 민감품목으로 TRQ품목과 非 TRQ품목을 구분하여 상이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민감품목이 TRQ품목일 경우, TRQ를 초과하는 관세(out of-quota tariff)는 일반 관세 감축률의 50%를 적용하고, TRQ내 관세(in-quota tariff)는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TRQ 확대는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기본 중량(3%)을 하고 다시 일반 관세감축률과 민

감품목의 관세감축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대 10%의 추가 증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감품목이 非TRQ품목일 경우는 새로운 TRQ 설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반 관세감축방식을 따르되 i) 이행기간 동안만 특별히 기존 SSG적용을 가능하게 하든지, ii) 일반 관세감축방식을 따르되 이행기간을 길게 부여하든지, iii) 일반 관세감축방식을 따르되, 이행초기에는 낮은 감축률을, 이행말기에는 큰 폭의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안(back-loading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G20는 선진국의 민감품목은 기존 TRQ품목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은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감축률의 최소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TRQ증량은 기준기간 국내소비량의 최소 6.0%에서 시작하여 관세감축의 편차를 감안하여 확대(단 확대수준은 미제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감품목에도 관세상한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여 민감품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EU는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으로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감축률의 1/3 ~ 2/3 수준을, TRQ증량은 최종 양허수준 및 최근의 수입실적과 함께 일반 관세 감축률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양허수준 대비 최대 16~32%를 증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G10은 민감품목에 대해 일반품목 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관세상한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민감품목의 대우는 관세감축률과 TRQ확대를 조합하여 설정하되, 관세 감축률이 작아지면 TRQ증량 폭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¹⁶⁾

16) 민감품목에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관세감축률의 $(1/x)$ 을 적용할 경우 TRQ를 $y\%$ 확대하는 기본 조합을 기초로 일반품목 관세 감축률의 $1/5 \sim 4/5$ 이 적용되면 TRQ는 $5 \sim 35\%$ 늘어나되, 최종 증량 폭은 국내소비량 대비 현행 TRQ수준의 비율을 고려하여 상이한 조정계수($1/5 \sim 3$)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표 3-3. 주요국의 입장: 민감품목

	민감품목		
	개수 (총세번 수의)	대우	
		관세감축	TRQ 증량폭
EU	8% (하향조정가능)	일반 관세 감축 폭의 1/3 ~ 2/3 수준	구간별로 12 ~ 32% / 10 ~ 24% / 8 ~ 19% / 5 ~ 16% 증량
미국	1%	<TRQ 품목> ① 일반 관세율의 1/2 적용 ② 쿼터내관세는 철폐	<TRQ 품목> 기본증량: 국내소비량 3% 추가증량: 일반 감축률 일탈 정도를 고려하여 확대
		<非TRQ 품목> 선택 ① 일반 감축폭+SSG ② 일반 감축폭+긴 이행기간 ③ 일반 감축폭+back-loading	<非TRQ 품목> TRQ 증량 면제
G20	1% 이내 (선진국)	<선진국> TRQ 품목에 한해 지정 일반 감축 폭의 70% 이상	<선진국> 최근 3개년 국내소비량의 최소 6%에서 시작
	1.5% 이내 (개도국)	<개도국 TRQ 품목> 일반 감축폭 보다 적은 폭	<개도국 TRQ 품목> 최근 3개년 국내소비량의 최소 4%에서 시작(국내소비량 산정 시 생계용 자가소비량 제외) <개도국 非TRQ 품목> ① 일반 감축폭 보다 적은 폭 ② 최대 45% 일탈+back loading ③ 긴 이행기간 ④ 기타 TRQ 신설 등
G10	10 ~ 15% 정도	관세감축률과 TRQ 확대의 조합을 통해서 설정하되 관세 감축률이 작아지면 TRQ 증량폭을 확대	

다)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세이프가드장치

개도국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과 특별세이프가드장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G33¹⁷⁾과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 및 수출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G33은 특별품목 공동제안을 통해 특별품목의 수로 농산물 총세번 수의 최소 20%를 주장하면서 대우로는 관세감축면제, 5%, 10% 관세감축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⁸⁾

그러나 선진국과 수출개도국들은 특별품목은 선정은 제시된 지표를 충족하는 최소한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특별품목이라도 최소한의 시장개방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특별품목의 수로 해당국 세번 수의 5개 이하를 언급하며,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또는 국내 생산품과 밀접한 대체품)에 한해 지정하되, 순수출 농산물은 특별품목에서 배제하는 제안을 하였다. 아울러 특별품목도 일정 부분 관세를 감축해야 하며, 동시에 TRQ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출개도국을 대표하여 태국은 특별품목의 지정이 南南무역(south- south trade)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HS 8단위에서 특별품목을 지정하되, 세계 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개도국의 수출 농산물의 특별품목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제안과 마찬가지로 특별품목도 관세감축 및 TRQ 증량을 하되, 특히 관세상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의장의 참고문서(reference paper)도 제시되어 있다. 참고 문서에는 특별품목의 수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세번의 일정 비율로 접근할 경우 G33의 주장(최소 20%)에서 상당히 낮아져야 할 것임과 함께 특별품목의 대

17) G33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세이프가드를 협상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개도국그룹으로서 ‘특별품목그룹’으로 불림. 인도네시아, 인도, 케냐, 중국 등을 포함하여 현재 약 46개 국가가 회원이며, 우리나라도 G33의 일원임.

18) 특별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관세감축률을 적용
i) 특별품목으로 지정된 세번 중 최소한 50%는 관세감축을 면제
ii) 위의 i)그룹에 속하지 않는 전체 관세라인의 25%는 5%의 관세 감축
iii) 위의 그룹 i)과 ii)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특별품목들은 10% 이하의 관세 감축률을 적용

우는 민감품목을 기준으로 그 보다 좋아야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도 G33과 선진국/수출개도국의 대립구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G33는 모든 농산물이 SSM 대상이며, 물량기준 SSM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량이 이전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를 초과할 경우에 당시 양허세율의 50%에서 최대 100%까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SSM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수출개도국들은 SSM의 적용대상 품목을 가능한 한 좁히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일반 관세감축률이 적용되는 농산물 가운데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물량기준 SSM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량이 최근 3년간 평균 MFN 수입량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발동 가능하며, 이 때 추가관세는 초기양허관세와 당해연도 양허관세의 차이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 3-4. 주요국의 입장: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

	G33 제안 SSM	미국 제안 SSM
발동 기준	i) 물량기준(BTL)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 이상 (TRQ내 수입량 포함) ii) 가격기준(BTL) 자국 화폐로 표시된 최근 3개년 월평균 수입가격의 95% 이하	i) 물량기준 최근 3개년(또는 2002~2004년) 평균 MFN 수입량의 130% 이상 (구제조치 발동전에 실제 국내가격이 하락했음을 검사) ii) 가격기준 최근 3개년 (또는 2002~2004년) 평균 MFN 수입가격의 70% 이하 (자국 화폐로 표시) (구제조치 발동전에 실제 수입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검사)
구제조치	i) 물량기준 추가관세는 해연도 양허관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ii) 가격기준 추가관세는 실제 수입가격과 BTL과의 차이만큼 부과 가능	추가관세는 UR 양허관세와 당해연도 양허관세와의 차이의 최대 50% 초과 금지

2) 국내보조분야

가) 감축대상보조(AMS) 감축 폭

AMS 감축과 관련해서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구간의 수를 3개로 확정짓고, 최상위 구간에 EU를, 차상위 구간에는 일본과 미국을, 최하위 구간에는 나머지 국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 아울러 각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 가운데 농업생산액 대비 AMS 양허수준의 비중이 높은 국가(예를 들면 일본)는 AMS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남은 쟁점은 구간별 AMS 감축률과 구체적인 경계뿐이다.

구간별 AMS 감축률에 대해서 주요국간 입장 차이는 있으나, 최상위 구간의 감축률은 70~83%로 의견이 좁혀져 있다. 미국은 구간별 감축률로 최상위 구간에 83%, 중간구간에는 60%, 최하위구간에는 37%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EU는 최상위 구간의 감축률을 70%, 중간구간을 60%, 최하위 구간을 50%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G20은 구간별로 최상위 구간부터 80-75-70%의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G10은 최상위 구간부터 70-60-40%의 감축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품목특정 AMS의 상한을 계산하기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기준 연도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UR 이행기간인 1995~2000년을 이용하여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외한 평균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만은 1999~2001년 평균을 주장하고 있다.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최소허용보조의 기준 감축은 이미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 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 미국은 현재의 기준인 5%(농업

총생산액의)를 50% 감축하여 2.5%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최소허용보조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80% 감축(5%→1%까지 인하)을 제시하고 있다. G20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 없이 AMS를 사용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최소허용보조의 감축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¹⁹⁾

다) 블루박스

기본골격에 따르면 블루박스의 지급은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총액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제안에서 기본골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5%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와 G20은 총생산액의 2.5% 상한 설정만으로는 미국의 국내보조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²⁰⁾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G20은 품목별로도 신규 블루박스의 상한이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EU도 신규 블루박스의 대상 품목에 대해 특정 기준기간을 설정하고, 특정 기간의 국내외 가격차를 확인한 후 향후 이 가격차를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구간도 AMS와 마찬가지로 홍콩 각료회의에서 3개로 합의되어 최상위 구간에 EU, 차상위 구간에 일본과 미국, 최하위 구간에 나머지 국

19) 홍콩 각료회의에서 AMS를 사용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그대로 유지(농업 총생산액의 10%)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0) 이를 흔히 보조이동(box shifting)문제라고 하는데 기존에 감축대상보조에 포함된 보조를 블루박스보조로 옮겨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보조는 줄어들지만 블루박스보조까지 합한 실제 보조금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G20은 이와 같은 보조이동을 막고 실질적인 감축을 가져오기 위해 국내보조에 있어서 품목별 상한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가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구간별 감축률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여, 미국은 최상위 구간에 83%, 중간 구간에 60%, 최하위 구간에 37%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EU는 최상위 구간부터 70-60-50%를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최상위 구간의 감축률을 80%까지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G20는 최상위 구간에 80%, 중간구간에 70%, 최하위구간에 60%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 G10은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70-60-40%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나타난 국내보조분야의 핵심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 주요국의 입장: 국내보조분야

	EU	미국	G20	G10
AMS 감축	1구간: 70% 2구간: 60% 3구간: 50%	1구간: 83% 2구간: 60% 3구간: 37%	1구간: 80% 2구간: 70% 3구간: 60%	1구간: 70% 2구간: 60% 3구간: 40%
무역왜곡 보조총액 감축	1구간: 70% 2구간: 60% 3구간: 50%	1구간: 75% 2구간: 53% 3구간: 31%	1구간: 80% 2구간: 75% 3구간: 70%	1구간: 75% 2구간: 65% 3구간: 45%
최소허용 보조기준	80% 감축 (5%→1%)	50% 감축 (5%→2.5%)	AMS 없는 개도국은 기준 인하 면제	상당한 감축
블루박스	품목별 규제	농업생산액의 2.5% (총액상한)	품목별 규제	적절한 규제
허용보조	현행 규정 유지	현행 규정 유지	개도국 관련 규정 완화	현행 규정 유지

3) 수출경쟁

수출경쟁분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수출보조금 철폐문제가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가장 진전이 빠른 분야이다. 현재 남아 있는 쟁점은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의 관행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식량원조에서 핵심쟁점은 위급 상황(emergency situation)에서의 식량원조(이를 genuine food aid 혹은 safe box라고 부름)와 이를 활용한 사실상 상업적 식량원조(이를 우회식량원조라고 부름)를 구분하는 방법과 후자의 상업적 식량원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 요소를 규제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는 그동안의 협상과 논의를 통하여 사실상 많은 쟁점이 정리된 상태이며, 최근 의장이 제시한 참고문서는 거의 최종 합의문안에 가까이 다가가 있어 향후 협상에서 이 분야가 세 부원칙 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원조에서 남은 쟁점은 상업적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서 현금화(monetization) 및 재 수출금지 등 세부 기술적 사항들인데, 이를 놓고 EU와 수출개도국들은 강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식량원조의 수혜국들은 획일적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수출국영무역에 대해서는 동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적 관행과 함께 독점력을 이용한 무역왜곡요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과 EU, 수출개도국들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수출국영무역을 겨냥하여 이를 강력히 규제하지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현존하는 GATT 조항(제17조)만으로도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제는 충분하며, 수출국영무역의 독점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독점에 기초한 무역왜곡 행위가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협상분위기는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 관행에 대한 세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신용 역시 수출국영무역과 마찬가지로 수출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이었다. 의장의 참고문서도 상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수출신용은 수출보조로 간주하여 2013년까지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남은 핵심 쟁점은 상환기간이 180일 이하인 수출신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EU와 수출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출신용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는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상환기간이 180일 이하인 모든 수출신용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체자금조달(self-financing)규정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서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자체자금조달 여부를 판단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1) 협상 타결 전망

향후 농업협상의 전망은 앞서 언급한 삼각쟁점과 맞물려 농산물 관세감축과 무역왜곡 보조금의 추가 감축, 그리고 개도국 특별품목의 대우를 놓고, 미국과 EU, G33, G20가 서로의 기존 입장을 얼마나 양보하여, 타협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가) 농산물 관세 감축과 민감품목

농업협상에 참가하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관세자료를 이용하여 캐나다가 모의실험에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제시한 관세감축 제안에 따를 경우 EU의 농산물 관세 감축률은 평균 66%가 되며, 미국 자신의 감축률은 평균 62%가 된다. 반면 EU가 제시한 관세감축을 따를 경우 미국의 평균 감축률은 37%가 되며, EU 자신

은 40%를 감축하게 된다. 한편 G20가 제시한 감축률에 따를 경우 미국의 감축률은 평균 47%가 되며, EU는 평균 51%가 된다.

표 3-6. G6 국가의 농산물 관세 감축 모의실험 결과¹⁾

(단위: %)

		호주	미국	EU	일본	브라질	인도
양허관세 평균값		4.0	11.3	22.8	41.8	35.7	114.0
EU 제안	민감품목 미고려	35.3	37.1	40.7	41.0	29.4	35.8
	민감품목 고려(1%)	35.0	36.7	40.4	40.6	29.2	35.7
	민감품목 고려(8%)	33.2	34.5	38.1	37.8	28.2	33.4
G20 제안	민감품목 미고려	45.3	47.4	51.5	51.8	29.4	35.8
	민감품목 고려(1%)	44.9	46.9	51.1	51.3	29.2	35.7
	민감품목 고려(8%)	42.6	44.1	48.3	47.8	28.2	34.3
미국 제안	민감품목 미고려	60.3	62.3	66.1	66.1	58.8	69.8
	민감품목 고려(1%)	59.8	61.7	65.6	65.6	58.5	69.5
	민감품목 고려(8%)	56.8	58.3	62.2	61.6	56.3	66.9

주: ¹⁾ 농산물 관세 감축 모의실험은 G6를 비롯한 10개국이 참여하여 캐나다가 작성했으며,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배포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모든 회원국에 그 결과가 알려져 있음

자료: <http://www.agtradepolicy.org>

미국은 지난 7월 중순의 G6 각료회의에서 EU가 G20 제안에 가까운 평균 51% 감축을 제안했을 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협상은 평균 감축률을 기준으로 51%와 미국의 주장인 66%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EU는 기존의 입장인 40% 감축에서 51% 감축으로 양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와 유사한 양보를 할 경우 최종 타협점은 G20 제안보다 약간 높은 50~56%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호주도 비공식적으로 이와

유사한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관세 감축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민감품목의 TRQ 증량 수준에 있다. 지난 7월의 G6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EU의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민감품목의 TRQ 확대 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감품목의 TRQ 증량 폭을 놓고서는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가 커서 향후 타결방향을 쉽게 예측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최근 EU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국내소비량 기준의 TRQ 확대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실질적 증량수준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률의 최소한 50% 이상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무역왜곡보조 추가감축과 기준연도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 폭을 놓고 미국은 1999~2001년을 기준으로 EU는 83%, 미국자신은 53%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1995~2000년을 기준으로 EU자신은 70%, 미국은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G20는 기준연도는 EU의 주장을 따르면서 감축 폭은 EU보다 큰 EU 80%, 미국 75%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가 계산한 미국과 EU의 국내보조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EU의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미국 제안(75% 감축)에 따를 경우 이행초기 1,132억 유로에서 이행연도 말 283억 유로로 감축되며, EU 자신의 제안(70% 감축)에 따를 경우 이행초기 1,103억 유로에서 331억 유로로 감축된다. 한편 G20 제안(80% 감축)에 따르면 EU의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이행연도 말에 221억 유로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EU의 제안(60% 감축)에 따를 경우 이행초기 482억 달러에서 이행연도 말에 193억 달러가 되며, 미국 자신의 제안(53% 감축)에 따를 경우 이행초기에 477억 달러에서 이행연도 말에 224억 달러로 감축되고, G20 제안(75% 감축)에 따르면 이행연도 말에 121억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다.

표 3-7.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모의실험 결과

(단위: 백만 유로, 백만 달러)

	EU		미국	
	이행 초	이행 말	이행 초	이행 말
G20 제안 (기준연도 1995~2000) (EU: 80%, 미국: 70% 감축)	110,305	22,061	48,224	12,056
미국 제안 (기준연도 1999~2001) (EU: 83%, 미국: 60% 감축)	113,189	28,297	47,741	22,438
EU 제안 (기준연도 1995~2000) (EU: 70%, 미국: 60% 감축)	110,305	33,091	48,224	19,290

자료: <http://www.agtradepolicy.org>

지난 7월의 G6 각료회의에서 EU는 무역왜곡보조총액의 75% 감축 수용의사를 표명하면서 G20와 연합하여 미국도 60%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시장접근분야에서 EU의 새로운 제안이 미국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내보조의 추가 감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시장접근분야에서 EU의 추가 감축이 없이는 무역왜곡보조의 추가 감축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 자신도 품목특정 AMS 감축과 블루박스의 품목특정 규제 등의 쟁점을 놓고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국내보조분야 안에서 상호 이익의 균형은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준연도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1995~2000년 평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만이 1999~2001 평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의 기준연도를 고집하는 주요한 이유는 2000년 이후 품목특정 AMS를 많이 사용하여 UR

이행기간을 기준연도로 할 경우와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품목특정 AMS 감축의 상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기준연도는 다수의 입장에 따라 1995~2000년으로 하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999~200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블루박스와 관련하여 미국은 자국의 CCP보조를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2002~04년 CCP 지급총액은 약 36억 달러(연평균 12억 달러)로 농업총생산액의 2.5%인 42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블루박스의 총량규제(농업생산액의 2.5% 한도)가 있어도 사실상 미국의 실질적인 감축 부담이 없다. 그러나 CCP의 품목별 지급액을 보면 쌀, 면화, 땅콩에 대한 CCP 지급이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를 초과하고 있어, 새로운 블루박스에 품목별 규제(예: 품목 생산액의 5%)가 추가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표 3-8. 미국의 CCP 지급 수준(2002~04년 평균)

(단위: 억 달러, %)

	밀	옥수수	수수	쌀	면화	땅콩
생산액(A)	69.2	228	8.86	14.3	48.6	7.44
CCP 지급액(B)	0.009	1.9	0.08	1.66	6.92	1.16
(B/A)×100(%)	0.1	0.8	0.9	11.6	14.2	15.6

자료: CCP지급수준은 www.ewg.com, 품목별 생산액 자료는 www.nass.usda.go.kr.

21) 미국의 품목특정 AMS 상한액은 1995~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105.1억 달러가 되지만, 기준 연도를 1999~2001년으로 변경하면 161.3억 달러가 된다.

결국 최종 타협안은 미국이 G6 각료회의에서 EU와 G20의 무역왜곡보조 총액 추가감축 요구(이행기간 말 무역왜곡보조 총액이 200억 달러 미만이 되도록 추가 감축을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에 의해 새로운 농업법에서 보조금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함께 여타 국내보조분야 쟁점에서 미국이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과 EU간 이익의 균형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보조분야에서 최종 타결 방향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EU제안에 가깝게, 그리고 기준연도와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규제는 미국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부원칙의 윤곽

향후 농업분야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된다면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미국과 EU의 중간점인 G20안을 중심으로 국내보조에서는 미국이 EU와 G20요구를 수용하고, 시장접근분야에서는 EU가 미국의 요구에 일부 들어 주는 방향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미국이 농업보조금 감축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무역왜곡보조총액을 감축하고 대신 신규 블루박스에서도 일부 품목별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기준연도 문제에서 미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이 기대수준을 낮추어 EU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선에서 미국과 EU는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G20도 농업부문에서 그들의 요구를 미국과 EU가 일부 수용한데 대해 공산품 관세감축에서 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소폭 감축할 경우(사실 공산품

관세감축에서 G20의 어려움을 일부 인정해 준 결과) 미국, EU와 G20간에도 균형이 찾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AMS 감축률은 최상위구간에 70%가까이 될 것으로 보며, 신규 블루박스는 농업총생산액의 2.5% 규제외의 품목별 상한이 부분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관세감축은 EU제안 보다 다소 높아져 최상위구간에 적용될 감축률은 75% 안팎이 될 것으로 보며, 민감품목의 수는 2~3% 내외, 감축률은 일반품목에 적용될 감축률의 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1) 협상 개요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 분야에 대한 관세감축, 미양허관세의 처리, 부문별 무세화, 비관세장벽 제거, 비종가세의 종가세 환원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다. 따라서 공산품이 협상의 주요 대상이지만 수산물 및 임산물 또한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비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가장 핵심 사항은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NAMA 협상에서의 핵심 쟁점은 비농산물 관세감축에 관한 것이 된다.

WTO회원국은 각자 상이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농산물에 부과되는 각국

의 관세구조의 특징은 크게 관세정점(tariff peak), 고관세(high tariff),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정점은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구조로써 특정 품목의 관세가 평균 관세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 국가가 특정 품목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개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관세는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관세 구조를 말한다. 한편 경사관세란, 최종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종제품의 수입 원료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최종 완제품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구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관세 구조의 차이는 NAMA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관세 구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 관세정점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관세인하공식과 관련하여 관련 계수의 설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관세율 인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NAMA 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공식 외에 부문별 자유화 협상을 통하여 특정 부문별로 무세화를 추진해 나가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부문별 자유화협상(sectoral liberalization)은 특정 상품부문을 설정하여(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등) 부문별로 협상을 추진하되, 해당 품목의 생산량 또는 교역량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임계 수준(critical mass)을 넘어서는 국가들 간에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자는 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어떤 부문에서 무세화 또는 자유화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협상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NAMA 협상은 농업협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개도국들은 일반적으로 농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DDA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NAMA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쉽게 해소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협상분야간 역학관계에 있는 것이다. 만일 농업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하여 NAMA 협상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농산물과 비농산물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해 내느냐가 이번 DDA 전체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관건이 되고 있다.

2) 2004년 7월 기본골격에서의 주요 합의 사항

2004년 8월 1일에 합의된 기본골격의 NAMA분야는 칸쿤 각료회의에 상정되었던 테르베즈 초안²²⁾을 중심으로 향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추가하는 정도로 채택되었다. 기본골격에서는 NAMA 협상의 목표로 관세정점, 고관세, 경사관세, 비관세장벽(NTBs)의 철폐 및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인하공식, 부문별 관세철폐, 개도국 우대조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다. 관세인하공식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비선형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여, 양허품목의 감축기준은 최종 양허세율로 하기로 했다. 미양허 품목의 경우는 2001년 실행세율의 2배를 감축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부문별 관세철폐는 합의가 미진하여 대상 분야, 참여 방식 및 개도국 우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논의를 계속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22) 칸쿤 각료회의 의장을 맡았던 테르베즈의 이름을 딴 초안이다. 2003년 9월 10~15일간 개최된 칸쿤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개발, 기타 이슈 등 5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테르베즈 각료회의 의장은 각 협상그룹 의장이 카스티요 일반이사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제2차 각료회의 문서초안을 수정 발표하였는데, 이를 테르베즈 초안이라 한다. 2003년 방콕 APEC 정상회의에서 DDA 협상의 재활성화를 위해 테르베즈 초안에 기초하여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해서는 관세감축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최빈개도국은 관세감축 의무 및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면제하되, 대신 양허 정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홍콩 각료선언문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인하공식으로서 스위스공식의 적용이 합의된 것 이외 NAMA분야에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스위스공식도 핵심인 적용 계수(coefficients)를 놓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왔던 선진국 및 개도국간 이중계수(dual coefficients)안은 브라질과 인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관세감축의 기본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정도로만 각료선언문에 포함되었다.

한편 각료선언문은 도하 위임사항(mandate)과 기본골격에 나타난 관세감축 관련 기본 방향을 재 기술하는 이외에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소규모경제, 부문별 접근(sectoral initiatives), 관세인하 개시를 위한 기준 관세율 설정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균형을 강조하여 두 분야의 시장접근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³⁾

DDA 흐름상 홍콩 각료회의를 통하여 의제별로 ‘완벽한 세부원칙(full modality)’에 도달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는 ‘분야별 세부원칙 도출’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이견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홍콩 각료회의가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 이

23) 12월 17일 3차 초안에서는 두 분야의 시장접근에 있어 ‘동등하게 높은(commensurately high)’ 수준이라고 기술되었으나, G10의 반발에 따라 ‘비교적 높은(comparably high)’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어 또 다시 결렬될 경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회원국간에 공유되었고, 이러한 공감대는 결국 부문별로 세부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통해 각료선언문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4) 최근 협상 진행

홍콩 각료회의 이후 NAMA 협상은 2006년 6월까지 소규모 그룹회의를 통해 핵심 3대 쟁점 및 여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은 합의에 도달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 쟁점인 관세인하공식의 계수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2006년 협상에서 이루어진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i) 미양허 품목 기준세율 계산은 constant nonlinear mark-up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ii) 개도국 신축성(flexibility) 문제²⁴⁾와 관련해서는 일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기본골격의 6항과 관련해서는 양허비율 35%미만의 국가를 관세 감축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소규모 경제국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국가들이 기본골격 6항과 유사한 대우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제시문안이 없어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LDC와 관련된 사항(기본골격 9, 10, 15항)은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LDC국가는 관세감축공식을 적용받지 않으며, 2008

24)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를 언급한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2개의 신축성을 개도국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 (a) 최대 [10]%의 관세품목까지 공식적용미만의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이때 적용되는 감축률은 공식적용감축률의 50%까지는 되어야하며, 회원국 총수입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b) 예외적으로, 관세품목의 최대 [5]%까지는 양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때 적용되는 미양허 품목의 수는 회원국 총수입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협정문에 나타나는 브래킷 []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논의의 중심에 있는 숫자 또는 문안이므로, 브래킷 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년까지 선진국의 97%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 대우를 부여받기로 하였다. 다만 LDC국가의 기술지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 외 특혜잠식, 신규가입국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부문별 자유화 및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비록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요 부문별 자유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2차 제안서가 나온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전자부문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품목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2차 제안서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국 NAMA 협상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NAMA 협상 최대 핵심 쟁점인 (iii) 관세 인하공식의 계수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세인하공식의 계수는 농업협상에서의 개도국 관심사항과 맞물려 있어 진전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NAMA협상에서의 핵심 쟁점은 관세감축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관세감축을 위한 다양한 공식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회원국간에는 공식채택에서부터 각 공식에 적용될 계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세감축과 함께 기본골격 8항에서 제시된 신축성부여 문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관세감축공식과는 달리 부문별 자유화 또한 주요 쟁점중 하나이다.

1) 관세감축 공식 및 계수

NAMA협상의 핵심 논쟁은 관세감축공식 및 계수 설정에 관한 것이다. 도쿄 라

운드이후 지금까지 선·개도국 그룹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관세감축공식을 제시해 왔다. 처음으로 제시된 관세감축방식이 식(1)과 같은 원형 스위스공식이다. 원형 스위스공식은 관세율을 일정 상수(A) 이하로 수렴하도록 만든 조화공식(harmonization formula)이다.

$$(1) \quad t_1 = \frac{A \times t_o}{A + t_o}$$

원형 스위스방식은 모든 관세율을 동일한 감축폭으로 인하시키는 선형인하방식과는 달리 높은 관세를 대폭 감축하고, 낮은 관세는 소폭 감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형 스위스공식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높은 개도국에게 더 큰 폭의 감축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 개도국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계수를 적용한 스위스공식은 개도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현재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중계수 스위스공식(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각 다른 조정계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인하공식을 개도국의 신축성과 연계하여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는 개도국은 기본골격에 나와 있는 패키지의 8항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즉, 개도국은 신축성 조항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가로 더 낮은 관세 감축률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제안에 개도국은 거센 반발을 하였고, 현재 협상의 흐름은 개도국의 신축성 조항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선진국들은 8항 가운데서도 특히 (b)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며, 가급적 (a)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관세가 10% 보다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식적용에 따른 감축률 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제안은 기존의 원형 스위스공식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각기 다른

조정계수를 부여하는 등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해줬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 시장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적용되는 계수의 차이는 가능한 작아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중계수의 구체적 수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공식·비공식 입장은 다음의 [표 3-9]에 제시되어 있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선언문 의장보고서는 선진국 계수는 5~10, 개도국 계수는 15~30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2006년 협상을 통해 라미 사무총장은 선진국 계수 8, 개도국 계수 24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중 계수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중계수 스위스 공식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 계수의 차이는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진국에겐 10을, 개도국에겐 15를 부여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8항과 관련되어서는 (a)만을 인정하고 10%보다는 작은 관세품목에 대하여 공식적용 미만의 감축률을 적용하려는 선진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3-9. 이중계수 관련 국가별 입장

국가	계수	
	선진국	개도국
미국	8-10	15
일본	10	15
파키스탄	6	30
중국	0-10	15-30
필리핀	2-8	15-30

스위스공식과 대치되는 또 하나의 공식은 2003년 당시 DDA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이었던 지라르가 제안한 지라르 공식이다.

$$(2) \ t_1 = \frac{B \times t_a \times t_0}{B \times t_a + t_0}$$

위의 식(2)에 제시된 지라르공식은 각 국가의 평균 관세율(t_a)과 조정계수(B)를 도입하여, 원형 스위스공식이 가지고 있는 고관세율의 대폭 인하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즉,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요구를 적절히 절충한 성격의 공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평균 관세율을 도입한 지라르 공식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 관세율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주장은 양허세율과 실행세율간에 큰 격차가 있는 개도국의 관세구조 특성상 관세감축공식에 평균 관세율을 도입한다고 해도 개도국의 고관세를 제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방식에 비해 논의되어야 할 계수의 수가 늘어나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편 2005년 4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3국은 지라르공식에 기초한 관세감축방안을 제출하였다. 소위 ABI제안이라 불리는 본 공식은 식(2)의 지라르공식을 기본으로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차별적인 조정계수를 부여해 기본골격에 제시된 개도국의 신축성을 반영하고 있는 공식이다.

기타 관세감축공식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가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소수 의견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예를 들면 EC, 노르웨이, 중남미 3국(멕시코, 칠레, 콜로미아) 등이 각기 원형 스위스공식을 변형한 관세감축공식을 제안하였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²⁵⁾

25)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공식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 미양허품목의 양허화

미양허품목의 양허화 문제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이 가장 빨라 미양허품목을 100% 양허하는데 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양허품목 기준세율의 설정에 대해 constant mark-up 방식과 decreasing mark-up 방식이 대립하기는 했다. 그러나 홍콩각료회의의 부속서(의장보고서)에서 constant mark-up이 대세라고 언급한 이후 2006년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constant mark-up 방식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수준은 5%p~30%p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04년 7월에 합의된 기본골격에서 미양허품목의 기준세율은 실행세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5%~30%p는 저관세 미양허품목의 기준세율을 너무 낮게 만들고, 반대로 고관세 미양허품목의 기준세율은 지나치게 높아지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와 홍콩은 미양허 실행세율에 5%p의 상수를 부가하여 기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실행세율에 30%p를 부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EU도 10%p의 mark-up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기제안 수치중에서 30%p mark-up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3) 부문별 자유화

모든 상품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식 외에 특정 산업부문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골자로 하는 부문별 자유화 방안도 진전이 빠른 분야중 하나이다. 2002년 말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부문별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2003년 5월 자라드(Girard) 의장은 부문별 자유화 대상으로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섬유류, 가죽, 신발, 광석·귀금석·보석, 수산물 등 7개의 부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대부

분의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개도국들은 부문별 자유화 논의를 반대하면서, 먼저 관세감축공식의 계수부터 합의를 한 이후 부문별 자유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부문에 대한 무세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뿐, 다른 산업부문의 자유화 논의에 대해서는 협상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물 부문은 오히려 적극적인 자유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자유화는 2004년 7월 합의된 기본골격에서 개도국의 수출 이익이 되는 분야도 부문별 자유화에 포함시켜 중점 논의할 것을 제시하는 선에 타협되었다.

부문별 자유화 논의는 2005년 1월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 왔던 의무적 참여방식을 포기하고 자발적 방식에 기초한 임계수준(critical mass) 접근 방식을 제안한 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임계수준 접근방식이란, 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자유화에 참여할 경우, 그 국가들 간에 부문별 무세화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방식이나 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에게는 참여 압력이 예상되는 협의 방식으로 부문별 자유화는 WTO/DDA의 MFN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부문별 자유화는 각 부문별 관심국가가 주도하여 복수국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선언문에서는 부문별 자유화의 대상으로 [표 3-10]에 제시된 13개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2006년 들어서 미국 등은 자국의 관련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문별 자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에는 미국, 일본, EU 등이 주도하여 부문별 자유화에 대한 정보공유과정(information session)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문별 자유화 협상에 개도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도하였다.

표 3-10. 분야별 무세화가 논의되는 분야

분야	공동제안국	논의 정도
전기·전자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미국	일본 주도로 활발히 활동중
화학	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주도로 활발히 논의중
수산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주도로 논의중
임산물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태국, 미국	뉴질랜드 주도로 논의중
보석	태국,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태국 주도로 논의중
자전거	대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대만 주도로 논의중
스포츠 용품	대만, 일본, 싱가포르	대만 주도로 논의중
기초재료	UAE	제안서는 제출되었으나 논의가 부진함.
자동차	일본	제안서 미제출, 논의중이나 전망은 불투명함.
의약품·의료기기	미국, 스위스	제안서 미제출, 논의 부진
신발	홍콩, 미국	제안서 미제출
의류		제안서 미제출
섬유		제안서 미제출

현재 각 국은 분야별 자유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복수국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어떠한 부문별 자유화에 대한 협상에도 임하고 있지 않다. 향후 부문별 자유화 협상 성공여부는 생산과 교역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참가여부가 타결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 비관세 장벽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2003년 7월 당시 지라르 의장이 제시한 단계((1)확인(identification) 및 검토(examination), (2) 분류(categorization),

(3) 협상(negotiation))에 따라 협상이 진행중이다.

첫째, 확인 및 검토에서는 회원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NAMA 협상의장은 2003년 1월말까지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통보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62개의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통보하였다. 그 후 칸쿤 각료회의 결렬 후, 각 국은 다시 한번 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현재는 이를 기초로 22개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²⁶⁾ 2006년 들어 비관세장벽 협상은 미국, EC, 일본이 주가 되어 복수국간 협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비관세장벽 통보 및 검토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전자부문에서의 비관세장벽 복수국간 협의도 주재하는 등 미국, EC, 일본과 한 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분야 비관세장벽 복수국간 협의는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통보된 비관세장벽은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즉, 회원국이 선정한 비관세장벽은 (i)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논의하며, (ii) DDA 협상 여타 분야 (무역원활화)에서 구체적인 협상 세부원칙(modality)를 가지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해당 협상 그룹에서 논의하되, 진전사항을 NAMA 협상 그룹에 보고하도록 하고, (iii) 구체적인 협상 세부원칙은 없으나 도하 각료선언의 여타 분야와 관련된 비관세장벽은 여타 포럼에서 논의하여 진전사항을 NAMA 협상 그룹에 보고하며, (iv) 협상 세부원칙이 아예 없는 비관세장벽은 NAMA 협상 그룹결정에 따라 무역협상 위원회(TNC)에 보고한 후, 적절한 WTO 기구로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보고된 비관세장벽에 대한 회원국간의 협상이 진행의 마지막 단계이다. 2006년 4월까지 총 26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7개 복수국간 협의를 통해 산발적인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26) 한국은 2005년 7월 21개의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표 3-11. 한국의 NTB 최종 리스트

	품목	세부내역	대상 국가
1	대다수 품목 (섬유, 주류, 윤활유, 공구류)	과도하게 엄격한 수입허가제도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	대다수 품목	수출국내에서 수출품상태에 대한 수입국의 영사 확인요구	중동, 중남미
3	섬유, 신발	특별원산지증명서 요구	멕시코
4	자동차	연간 2000대 미만의 소량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인증검사 비용	일본
5	화장품	과도한 비용 및 상표검사 지연	중국
6	식품용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 획득시 관련 협회 가입이 요구되고 가입비가 과다함	일본
7	식품	수입식품 포장에 수입국 언어표기 요구	
8	섬유	30m 이상 직물류 수입시 직물의 양면에 원산지 표시 강제	이집트
9	화학	위험평가시 물질이 형태와 수량에 의해 등록, 평가, 승인되도록 하고 물질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	EU
10	수산물	활어운반차량과 같은 특수차량운행 금지로 통관 후 상품을 다른 차량에 옮겨 실어야 함	일본
11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산업 정부지원	호주, 남아공
12	대다수 품목	복잡하고 불명확하고 비일관적인 통관절차	중국, 과테말라, 브라질, 이집트
13	대다수 품목	통관문서 오류 발견시 과도한 벌금 부과(최고 2만불)	캐나다
14	대다수 품목	차별적이고 과도한 통관수수료, 항만유지수수료	미국
15	자동차	중고차 및 중고부품 수입금지 또는 제한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16	대다수 품목	불합리한 관세평가 및 자의적 집행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17	목재	수출금지 및 제한, 수출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8	자동차	지정된 항구에서만 통관	중국
19	정보기술상품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세번분류	EC
20	대다수품목	중복 통관 검사	브라질
21	통신기기전자	엄격한 안전 규정 인증	

5) 기타 쟁점

2004년 7월 기본골격 6항은 양허비율 35%미만 국가는 관세 감축 공식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대신 여타 개도국의 최종 평균 양허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NAMA 품목을 100% 양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허비율을 35%로 하는 합의함에 따라 6항의 혜택을 보는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마카오, 모리셔스, 수리남, 스리랑카,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쿠바,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12개국에 이른다. 6항에 해당되는 12개국은 자국에 대하여 양허수준과 관련하여 100%를 70%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12개국의 주장이 기본골격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며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기본골격 9항은 LDC 국가²⁷⁾에 대하여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부문별 자유화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신에 양허비율을 상당 수준 증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97% 품목에 대해 2008년까지 LDC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DC 국가들은 무관세·무쿼터 관련사항을 NAMA 세부원칙내에 적절히 반영하고, 선진국들은 C/S 제출시 해당 품목 및 관련조치, 제의 품목에 대한 이행 계획 등을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문별 자유화 관련하여 LDC의 경쟁력이나 특혜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부문분야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C/S에 무관세·무쿼터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국가를 어떻게 대우해주느냐 하는가도 또 다른 쟁점중의 하나이다. 도하 각료선언문 35항에는 일반이사회의 감독 하에 소규모경제를 다자무역체제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27)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르완다, 미얀마, 토고 등 32개국이 해당된다.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이들 국가에게 신축성을 부여하지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소규모 국가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경제규모, GDP 대비 교역의 중요성, 수출의 다변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다. 소규모 국가들은 기본골격 8항보다는 6항 형태에 기초한 해결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8항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6항 국가에 준하여 신축성을 부여하지는 입장이다.

DDA협상 결과 NAMA에서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 질 경우, 그동안 선진국들과의 특혜 관세조약을 통해 혜택을 받아오던 개도국들이 특혜 마진의 폭이 축소되거나 미미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혜 관세 수혜국이었던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보상 등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개도국들은 MFN 원칙을 내세우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특혜관세침식을 두고 개도국간 대립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케냐, 모리셔스 등은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일정 수준의 특혜마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계수(correction coefficient)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페루 등은 특혜잠식이 주로 소수 국가 및 소수 품목에 한정된 것이므로, 다자 차원이 아닌 양자 차원의 해결과 비무역조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규가입국의 처리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신규 가입국들은 장기이행기간 부여, 관세감축공식에서 높은 계수 부여, 적용 유예기간 부여, 특정 품목에 대한 공식 적용 완전(부분)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기 이행기간 외의 신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규 가입국의 정의조차 불분명하여 앞으로 논의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 향후 협상 전망

WTO/DDA 스케줄에 따르면 금년 4월말까지 협상의 세부사항(modality) 협의에 도달하고 7월말까지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스케줄 초안을 확정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존재하여 세부사항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7월 24일 DDA 협상이 중단(suspension)되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의 협상 성공 여부는 농업 협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DA가 일괄타결방식으로 최종 합의에 이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NAMA 협상의 진전도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공식의 계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의 주장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결방향 예측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수치가 선진국은 8~10 그리고 개도국은 15~30 이기 때문에 향후 타결방향도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한편 선진국들은 개도국과의 계수 차이가 10이내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개도국에 적용될 계수는 20에 매우 가까운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문별 자유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전기·전자분야를 제외하고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문별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²⁸⁾에 따르면, 관세인하공식 적용과 함께 부문별 자유화가 병행될 경우, 부문별 무세화에 참여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

28) DDA NAMA 관세인하 공식 적용 및 분야별 무세화 참여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송백훈 2006).

타나고 있다. 즉, 부문별 무세화에 참여하지 않은 산업보다 참여한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의 양허화와 관련하여 mark-up을 8%p에서 30%p사이로 하는 여러 제안서가 제시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제안된 mark-up 수치 중에서 30%p가 채택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제안된 수치의 중간단계인 20%p 근처에서 타결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인 20%p에서 결정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농업협상과 함께 기설정되었던 서비스협상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DDA 협상의제로 채택된 이후인 2002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서비스협상은 양허협상과 규범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허협상은 말 그대로 서비스 양허협상을 말하며, 규범협상은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협상으로 의제는 국내규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협상은 사실 지난 2004년 DDA 기본골격이 합의된 이후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04년 7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7월 패키지”라 불리는 DDA협상의 기본골격이 합의된 이후 2005년 3월 케냐에서의 소규모각료회의 및 2005년 7월 중국 대련에서의 소규모각료회의를 통하여 서비스협상의 촉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특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협상은 답보상태가 계속되었다.

한편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이후 서비스 양허협상 및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1) 양허협상

GATS 발효 이후 WTO 회원국들은 1997년에 기본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추가 협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서비스양허협상을 재개한다는 GATS 19조 1항에 따라 양허협상을 2000년 1월부터 개시하였다.²⁹⁾ 2001년에 회원국들은 향후 협상의 주요 골격을 담은 협상가이드라인과 양허표 작성지침을 3월에 채택하였고,³⁰⁾ 23개국이 주요 관심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상의 목적과 중점적으로 추구할 사항 등을 담은 100여개의 협상제안서를 제출하고 검토하였다.³¹⁾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서비스협상은 DDA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 도하 각료선언문은 1차 양허요청서와 양허안을 각각 2002년 6월 30일과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것과, DDA 전체협상을 2005년 1월 전까지 종결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1차 양허요청서를 36개국에 제출하였고, 6월 이후 25개 WTO 회원국들로부터 1차 양허요청서를 접수하였다. 우리는 주요 교역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로 건설, 유통, 금융, 해운, 통신 등 우리 업계가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우리가 각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양허요청서는 법률, 보건·의료, 교육, 특급배달, 시청각, 에너지 서비스 등에 대한 개방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³²⁾

29) 1999년 12월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로 인하여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농업과 서비스 협상만 시작되었다.

30) WTO(2003),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S/I/92와 WTO(2003),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S/I/93 참고.

31) 최낙균 외(2001), p. 70 참고.

표 3-12. 1차 양허요청서 제출 및 접수 현황

구 분	상호 제출	일방 제출/접수
우리가 제출 (36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3)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헝가리, 칠레,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13) - 우리만 위 13개국에 제출
우리가 접수 (25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3)	파나마, 모리셔스 (2) - 위 2개국만 우리에게 제출

* 1차 제출후 추가 제출

자료: 류창수(2005)

도하 각료선언문에 명기된 일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을 2003년 3월 일정에 맞추어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1차 양허안은 법률, 부동산 중개, 에너지 유통, 고등 및 성인교육 등을 새로운 양허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이중 법률서비스에 외국법 자문서비스(foreign legal consultant service)를 새로이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실제 개방된 수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³²⁾ 우리나라와 같이 시한에 맞추어 1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1개 회원국에 불과하였고, 이들 양허안도 일부 국가들이 mode 4에 대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분야를 새

32) 자세한 내용은 최낙균 외(2002), p. 78~88 참고

33) 최낙균 외(2003), p. 85~6 참고

로이 양허안에 반영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⁴⁾

칸쿤 각료회의의 교착상황에 빠진 서비스협상은 7월 패키지에 의해 협상동력을 유지하였다. 7월 패키지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5년 5월까지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인력이동 등 개도국 관심분야에 대한 양허를 확대하고 개도국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31일 수정 양허안을 제출하였는데, 동 수정 양허안에서는 mode 4 분야에서 전문직 계약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중 10개 직종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일부 분야에 기재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의 주요 기준을 명시하는 등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수정 양허안 전문을 외교통상부의 DDA 홍보용 홈페이지(www.wtodda.net)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도 하였다.

7월 패키지 이후에도 농업 및 NAMA 등 여타 분야에 비해 서비스 협상의 부진이 지속되자 WTO 회원국 사이에서 DDA협상 전반의 불균형적인 진전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케냐 소규모각료회의 및 2005년 7월 대련 소규모각료회의의 기회에 서비스협상의 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는 특히 Request/Offer 협상 방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양허안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완적 방식(complementary approach)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⁵⁾ 2005년 9월 23일 파리에서 개최된 EU, 미국, 인도, 브라질의 G-4 각료회담에서 서비스협상 진전을 위한 Core-group³⁶⁾ 구성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서비스 협상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협상부진이 현재의 양자적 R/O 협상 방식의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

34) Ibid, p. 75, 87 참고

35) 보완적 방식으로는 공통의 평가(evaluation), benchmark, target의 수립 등이 있다.

36) Core Group: 미국, 인도, 캐나다, EC,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이집트, 칠레, 아르헨티나

한 것으로 인식하고 다자적, 복수적 방식을 병행하는 보완적 협상방식 채택을 주장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동 이슈가 서비스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양자 R/O 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량적 목표 등을 설정하는 보완적 협상방식 마련에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홍콩 각료회의에서 수량적 목표 채택은 실패하고, 당초 선진국들의 목표에 비해 약화된 형태로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양허안 개선 목표 및 복수적 R/O 협상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문안 부속서(C)가 채택되었는데, 우선 각 회원국의 양허안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Mode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다.

- Mode 1: 현재 개방수준 양허, 현존 상업적요건 철폐
- Mode 2: 현재 개방수준 양허
- Mode 3: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경제적수요심사(ENT)철폐(감축) 등
- Mode 4: 계약서비스공급자(CSS) · 독립적전문가(IP) 양허,³⁷⁾

경제적수요심사(ENT) 철폐(감축) 등

이와 함께 각 회원국의 분야별, Mode별³⁸⁾ 양허 기대수준을 정리한 의장 TNC 보고서(TN/S/23)를 협상시 참고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양자협상을 보완하기 위한 복수적 R/O협상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복수적 R/O협상은 양허요청국 및 요청

37) 여기서 CSS는 현지국에 상업적 주재 없이 서비스공급계약에 기초, 이동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며, IP는 현지국에 상업적 주재 없이 서비스공급계약에 기초, 이동하는 공급자로서 수출국내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공급자를 뜻한다.

38) 법률, 통신, 시정각,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 의료 등 19개 분야 및 Mode1 · 2, Mode 3, Mode 4.

대상국의 분야별 전문가간 직접적 논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복수의 국가가 특정 대상국들에 대해 특정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간 비공식 협의그룹으로 활동해온 분야별 Friends 회의를 중심으로 분야별 복수적 양허요청서가 작성되어 2006년 3/4월 협상부터 복수적 R/O 협상이 시행되게 되었다. 한편,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협상작업 관련하여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은 2006년 7월말, 최종 양허표의 제출은 2006년 10월말로 하는 일정도 수립하였으나, 전체 DDA협상의 중단에 따라 동 일정도 유보된 상태이다.

복수적R/O 우리나라 참여현황

-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10)
 - 건축/엔지니어링, 컴퓨터서비스, 통신, 건설, 환경, 금융, 해운, 에너지, MFN 면제, 유통
 - 양허요청을 받은 분야(8)
 - 법률, 우편/쿠리어, 시청각, 교육, 항공운송, 물류, 국경간 공급(Mode 1&2), 상업적 주재(Mode 3)
 - 양허요청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분야(2)
 - 자연인이동(Mode 4), 농업관련 서비스
- ※ 단, 우리나라가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양허요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

자료: 김준동(2006)

2) 규범제정 협상

규범제정 협상의 의제로는 국내규제,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정부조달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국내규제에 대한 논의는 국내규제작업반에서 논의가 되며 다른 세 개 분야는 GATS규범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내규제의 경우 1998년 12월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의 채택” 등 가시적 성과를 내었지만 다른 분야는 거의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4년도 이후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가) 국내규제

서비스 교역은 다양한 형태의 국내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의 일반적 목적은 최소한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국내규제는 서비스 교역의 장애가 될 수 있다. GATS는 각 회원국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규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GATS 제6조 1항은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규제 집행은 합리적(reasonable)이고 객관적(objective)이며 공평(impartial)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제6조 4항은 국내규제 중 특히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기술표준, 인가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GATS 제6조 4항은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기술표준, 인가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는 기준으로 첫째, 자격·기술·인가관련 요건은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과 능력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둘째, 자격·기술·인가관련 요건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셋째, 인가취득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의 제한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규제 규범제정 활동은 상기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GATS 제6조 4항은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기술표준, 인가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기준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 각국의 분야별 국내규제가 과연 위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UR협상기간 동안에는 시간의 부족으

로 결국 UR 이후에 추진한다는 작업계획만 협정 제6조 4항에 규정하고 GATS 운영을 책임지게 될 서비스이사회가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 각국의 국내규제가 상기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규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동 규범 제정을 위해 1995년 4월 전문직서비스작업반을 서비스 이사회 산하에 설립하여 1998년 12월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을 처음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1999년 4월 보다 광범위한 국내규제 전반에 대한 규범 제정을 위해 국내규제작업반을 설립하여 규범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 3월에 채택된 DDA서비스협상가이드라인은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국내규제 규범제정을 양허협상 이전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의 상당부분이 국내규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교역상의 장벽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어 규범제정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규범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개도국, 선진국 등 모두 관심분야와 방향, 규범의 범위 등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국내규제 규범 제정을 통해 국가의 규제감독권한 주권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 규범 제정으로 인한 행정부담의 증가 우려 등도 존재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홍콩 각료선언문에 DDA 타결까지 국내규제에 대한 legal text 제정을 명시하였고 2006년 7월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은 그간의 논의를 모은 consolidated text³⁹⁾를 제시하였다.

나) 보조금

보조금은 생산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정의, 형태, 통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갖는 교역상의 왜곡을 방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공공정책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을 반영한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 교

39) WTO(2006)

역통계의 경우 매우 불완전하여 서비스 보조금의 영향을 파악하기 힘들고, 서비스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거래에 여러 공급모드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공급형태 및 그 단위가격 파악이 어렵다. 또한 동종생산물(like products)의 개념이 모호하고, 동종생산물 간 질적 차이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조금에 관한 규범제정은 UR 후속 협상과제로 GATS 제15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GATS 제15조 1항은 회원국이 특정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GATS규범작업반을 구성하여 보조금 협상을 개시하였고 현재까지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홍콩, 칠레 등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GATS규범작업반에서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서비스 분야 보조금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국가만이 제출한 실정이다. 칠레는 2004년 11월 통신, 에너지, 해운 등 3개 분야에서의 자국 지원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사무국이 보조금 관련 TPR 사례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서비스 분야별 각국의 보조금 관련 조세 혜택을 분석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GATS규범작업반에서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것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율방법에 있어서 주요국들간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규범제정에 유보적인 반면, 홍콩 및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들은 다자간에 적용되는 규범을 제정하여 무역왜곡효과를 시정하는 한편,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다수 국가들이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15조에 규정된 정보교환조차 주저하고 있어 논의상 진전이 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홍콩각료회의 선언문 부속서에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을 촉구하는 문안을 담아 향후 보조금 정보교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

로 전망된다.

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ESM: Emergency Safeguard Measures)에 비추어 서비스분야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서비스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당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하는 수입규제조치라 정의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은 서비스산업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개도국들이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범제정은 UR 후속 협상과제로 GATS 제1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GATS 제10조 1항은 ESM에 대해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하며, 이 협상의 결과를 WTO 발효일 3년 이내(1997년 12월 31일) 발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시한을 연장(2004년 3월 15일)하였으며, 2004년 3월 15일 서비스이사회에서 ESM 협상 시한을 삭제하는 결정문 채택하였다. 1995년 7월 GATS규범작업반을 구성하여 ESM 협상을 개시하였고 현재까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002년 상반기부터 작업반 논의주제가 ESM 접근방식 및 협상시한 연장과 향후 작업계획에 집중되면서, ESM 핵심요소에 대한 논의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그동안 ASEAN의 수평적 ESM 규범제정을 골간으로 하는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ESM 도입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간의 확연한 입장차 때문에 작업반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

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SM 협상을 어렵게 하는 원인들로 서비스 고유의 특성(무형성, 비저장성, 타 경제 부분과의 연관성 등), 관련 통계의 부족, 서비스의 다양한 공급형태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ESM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ENT 등 ESM을 제정하지 않고도 GATS 틀 내에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시장접근의 진전을 규범제정, 특히 긴급세이프가드 부분에서의 진전과 연계시키고 있어 향후 시장접근 부분에서의 실질적 진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 정부조달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다자무역체계의 중요한 원칙인 무차별성과 내국민대우 등의 의무에서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있어서 무차별성과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은 복수협정이므로 모든 WTO 회원국들에 적용되지 않고 가입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관한 시장개방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MFN과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현재 GATS규범작업반에서 정부조달에 대한 규범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제정은 UR 후속 협상과제로 GATS 제1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GATS 제13조 2항은 WTO 발효일 이후 2년 내에 정부서비스조달에 관한 다자간협상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1995년 7월 GATS규범작업반을 구성하여 정부조달 협상을 개시하였고 현재까지 EU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U는 2003년 5월 정부조달 규범제정관련 제안서(S/WPGR/W/42)를 제출하여, 동 제안서를 기초로 논의 중이다. EU는 동 제안서에서 GPA 당사국이 아닌 경우도 동 협정의 규정을 많이 채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자차원에서의

양허협상을 통해 정부조달 메커니즘을 단순화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기존 양허표에 5번째 열을 추가하여 mode별로 양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은 GATS 제13조의 협상 위임범위가 모호하고 GPA협정과의 중복문제 등을 들어 협상의 진전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싱가포르 이슈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서비스분야만 정부조달 관련 협상을 계속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조달은 국가의 일반적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포괄적인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수평적 성격을 갖게 되는 바, 서비스 분야별, 모드별로 달리 취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복잡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 싱가포르, 칠레 등은 EU 제안대로 현 양허표에 별도의 정부조달 항목을 설정하게 될 경우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부조달은 현재 EU만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GPA 국가들도 별로 지지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규범 제정 관련 협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1) 양허협상

서비스양허협상은 질적으로 많이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 입장과 농업, NAMA의 진전없이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선진국들은 mode 4에 대한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EU는 농업협상에서 추가 양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NAMA, 서비스분야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에 다자적 목표설정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EU는 특히, 건설, 컴퓨터, 유통, 환경, 금융, 통신, 해운, 전문직 서비스 등 8개 핵심 분야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금융, 통신, 에너지, 특급배송, 유통, CRS(computer related services)의 6대 분야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고, 인도는 자국의 관심사인 mode 4 분야가 포함되고, 모든 국가가 추가 신규 양허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양허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며,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농업 등의 협상에서 먼저 진전이 있어야 서비스 분야에서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야별 복수적 R/O 협상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속되었으나 농업과 NAMA 협상의 진전 없이는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⁴⁰⁾

2) 규범협상

가) 국내규제

국내규제작업반의 국내규제관련 규범제정 논의의 초점은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규범의 개발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 필요성, 동등성, 국제표준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투명성과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투명성은 서비스 규제 체제에 있어 양허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양허 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개도국은 mode 4와 관련 경제수요 심사의 투명한 기준, 신속하고 투명한 VISA 발급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규제 논의에 대해 가장 큰 쟁점은 미국이 필요성 심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GATS 제 6조 4항상 필요성심사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한 규제권한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규제들이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요성 심사를 위한 요건은 1) 정당한 정책 목적, 2)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규제, 3) 정당한 목적과 동 규제간의 필요한 정도의 연계 등이 있다.

40) 서비스 분야별 쟁점에 대해서는 최낙균 외(2003) 참고.

한편 동등성은 한 국가의 정책 목적이 타국의 규제에 의해 실현되고 있을 때, 그 타국의 규제를 자국의 규제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인정협정(MRA)의 기초가 된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타국의 규제에 별도의 추가적인 요소가 부과하여 동등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나) 규범제정 방식(수평적 규범 vs 분야별 규범)

그동안 국내규제 규범제정은 수평적 규범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 및 실질적인 논의 부진 등을 감안, 가능한 일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범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작업반에서 수평적 규범 및 분야별 규범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앞으로도 동 문제가 계속 쟁점화될 전망이다. 2005년 9월 작업반 회의에서 법률 및 엔지니어링 분야(호주), 통신분야(대만) 등 분야별 규범 제정 관련 제안서들이 제출되었으나, 개도국들은 수평적 규범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법률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한 제안서 제출을 통해 분야별 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3-13. 국내규제 각국 입장

구분	분야별 규범 선호	수평적 규범 선호	기 타
국가	호주, EU	일본, 홍콩, 인도, 칠레, 멕시코, 중국,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입장	홍콩각료회의 이전까지 가능한 일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범 제정	홍콩각료회의의 까지 수평적 규범제정에 집중하고, 이후 분야별 규범 논의	투명성 분야에 한정하여 수평적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로 논의

자료: 송영관(2005).

〈목적, 범위, 적용〉

주요 쟁점은 1) 국내규제 규범의 범위를 5개 범주로 한정할지 여부, 2)적용범위를 양허한 분야에만 한정할지 여부, 3)적용범위를 연방정부로 한정할 것인지, 주정부로 확대할지 여부 등이다.

규범대상의 쟁점으로는 제 6.4조의 자격요건, 자격절차, 기술표준, 인가요건, 인가절차 외에 포함되는 규제조치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동안 논의는 모든 국내규제 관련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미국 등)과 제 6.4조 거론 분야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분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국내규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규범을 투명성에만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기타 규범은 각 서비스 분야별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Annex 초안은 상기 5개 분야에 한정하고 있으며, EU도 상기 5개 분야 외의 조치를 규범에 포함하는 것은 제 6.4조 협상 위임범위에 벗어난다는 의견이다. 콜롬비아 등 Mode 4의 개방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비자발급을 포함한 입국심사 절차도 국내규제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우리는 그동안 6.4조의 위임범위 하에서 위 5개 분야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범위에서 양허대상에 한정할지 여부에 대한 그동안 논의에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양허대상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모든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등은 국내규제 조치사항 중 이미 GATS협정상 의무가 양허여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협정 규정에 의해 이미 완전히 배제된 경우도 있으므로 국내규제의 성격상 미리 양허대상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이미 GATS 6.5조의 임시규정도 양허대상에만 한정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시장접근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적다는 입장이다.

규범의 의무준수 범위를 연방정부로 한정할 것인지, 주정부로 확대할 것인지 문

제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등 연방정부는 국내규제규범이 주정부에까지 적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방정부 체제하에서는 각 주정부가 자격, 허가요건/절차 등을 포함한 국내규제사안에 대해 자율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연방정부가 의무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GATS 협정 제3조(a)에 따라 국가의 조치가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

사무국은 1996 사무국 문서를 참고로 배포한 바, 다수국가들은 동 문서상 제시된 5개 범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대만은 2005년 10월 비공식회의에 정의문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정의에 관한 대만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1) 자격요건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지식, 기술 및 여타 전문 능력을 말하며, 2) 허가요건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서비스의 질과 소비자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이며, 3) 기술표준은 서비스 수행에 따른 규칙 등 서비스 자체에 관련된 표준이고, 4) 자격/허가절차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격 및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관련 절차를 지칭한다.

〈투명성〉

투명성 의무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항은 1) 법규정의 출판 및 공표(전자매체를 통한 출판), 2) 질의 기관,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상세 정보 공개, 3) 회원국의 요구에 따른 조치 근거에 관한 정보 제공, 4) 조치 발효 이전 사전 공개, 5) 사전 협의, 코멘트 제공기회 부여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전협의 의무 포함 여부가 있

는데 미국은 동 의무를 ‘best endeavor’ 조항으로 제시한 반면, 개도국들은 행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필요성심사와 관련된 규범 요소〉

미국은 필요성 심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패널분쟁 사례를 통해 각국 규제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국내주권의 침해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필요성 심사를 포함할지 여부는 각 분야 및 사례 별로 검토되어야 하며, 회계규범에서 적용되었다고 다른 분야에서도 수평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필요성 심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나, EU, 일본을 비롯하여 개도국들은 최소한의 필요성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EU, 홍콩 및 개도국들은 투명성을 강화해도 필요성 심사 없이는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으로는 제 6.4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고 “서비스의 질 보장”에 필요한 정도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만약 구체화한다면 어떤 예시적 목표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GATS 제6.4조는 “교역에의 장벽”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필요 수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기존 협정(TBT, SPS 협정 등) 및 회계규범을 “합법적 목적(legitimate objectives)”을, 일본 초안은 GATS 서문에 명시된 “국가정책목적(national policy objectives)”을, 그리고 스위스 초안은 “합법적 국가정책목적(legitimate national policy objectives)”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논의 초기에는 합법적 목적의 예시목록을 작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일본초안은 정당/합법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각 국가에게 보다 폭넓은 정책목적의 추구를 허용하여 필요성심사 요건과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필리핀, 인도 등 개도국들도 각국 정책목적의 합법성(legitimacy)을 검토해서는 안 되며, 정책목적은 예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이동 문제와 비자유조건과 절차에 대한 문제〉

비자유조건과 절차가 규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비자유조건과 절차가 어떤 규정에 규율 받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아래와 같이 분분한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인력이동 부속서는 비자유조건, 절차를 협정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인력 이동 부속서는 비자유조건/절차가 양허한 분야에서 회원국이 얻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등은 제6.1조 양허한 분야에서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성격의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며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에 비자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한편 개도국들은 나아가 제 6.4조 규범도 서비스 공급자의 비자유조건 및 절차가 허가/자격 요건/절차 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한에서 규범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가요건 및 절차 문제〉

인가요건 규범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것은 1) 투명성 요건, 2) 거주요건의 점진적 철폐 또는 최소화, 3) 합리적인 전문직협회의 회원요건 부여, 4) 회사명 사용상의 합리적 제한, 5) 합리적인 외국전문직의 손해배상보험 요건 등이다.

인가절차 규범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것은 1) 투명성 요건, 2) 인가신청절차 기간, 3) 수수료, 4) 거부이유통보, 5) 발효기간 등에 대한 절차상의 합리성자격요건 및 절차 문제이다.

〈자격요건 및 절차 문제〉

그동안 자격요건에 대한 규범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 제기된 것은 1) 자격 획득을 위한 시험, 연수, 경험, 언어요건 등이 서비스활동과 직접 관련될 필요성, 2) 교역, 경험 또는 시험요건의 동등성에 기초하여 여타국가에서 획득한 자격의 인정 및 검증 메카니즘 설립 의무, 3) 자격시험에 거주요건 금지, 4) 상호인정협정과 관계이다.

또한 자격취득절차 규범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것은 1) 합리적 시험빈도, 2) 자격심사 시험, 3) 수수료 등이다.

다) 보조금

〈보조금 정의〉

현재 작업반 내에서 상품분야의 보조금협정(ASCM)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상품분야 ASCM의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소득 및 가격지지』로 정의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조금 분류〉

서비스 보조금 분류에 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이나 기본적으로 ASCM의 구조를 원용하되, 그 내용이나 시정방법에서는 GATS의 기본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상품분야의 접근방법과 함께 농업분야 보조금 규율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보조금의 경우, UR 협상 당시 각국 정부가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지급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허용한계를 설정한 후 감축 이행기간을 양허하고, 규제 상한 이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허용 보조금과 유사한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보조금 규율〉

비양허 업종에서 국내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율대상을 시장접근을 양허한 업종에 국한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 보조금은 시장접근상의 양허와 관계없이 모두 규율하고, 수입대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상 양허를 한 업종에 국한하여 규율토록 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규율 방식은 보조금 규범으로서의 당초 목적에도 부합되면서 각국의 정책적 목적이나 GATS의 점진적 자유화라는 기본원칙을 인정하기 위해 ASCM의 구도를 원용하되 그 내용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ASCM의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ASCM에서와 같이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다소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전 감축 방안을 도입하고,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해서는 ASCM에서 사용하는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규율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역왜곡효과를 갖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보상, 기존 GATS 양허의 철회, 상계조치로서 내국세 또는 부과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보상이나 보복조치가 기존 보조금의 왜곡 효과에 상응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객관적인 피해조사를 시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문제는 서비스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바, 동 논의결과를 보조금 규범제정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동종 서비스의 개념정립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하여 서비스긴급세이프가드 논의에서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개도국 우대〉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개발 관련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조금의 필요성이 선

진국보다 크며, 서비스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보조금의 규범을 제정하는데 있어 개도국들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서비스 보조금 규범제정시 개도국 우대와 관련, 긴급세이프가드에 서와 같은 개도국 우대조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ASCM상의 개도국 우대 조항들과 향후 제정될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 협정상의 개도국 우대 조항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긴급수입제한조치

〈ESM 도입여부〉

ASEAN을 주축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은 ESM 규범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EU, 캐나다, 스위스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표 3-14. ESM 각국 입장

	개도국	선진국
기본 입장	- 상품 세이프가드 협정과 유사한 수평적 ESM 규범 도입	- GATS 제21조(양허표 수정), 제12조 (BOP관련 제한조치), 제14조(일반적 예외) 등 ESM과 유사한 조항들이 이미 있고, 양허안에 ENT 등 유사 제한조치들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ESM 도입에 반대
주장 근거	- 개도국 국내산업 육성 필요성 - 시장개방 이후 발생할지 모를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장치 기능 필요	- 상품과 서비스 특성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ESM 도입 불가능 - 개도국 주장으로 규범제정이 불가피할 경우, ESM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통보 및 협의절차에서의 투명성유지 방안과 특별 심사 절차의 도입 제외
Mode	- 선진국 반발이 클 경우 Mode 3는 제한적 적용 고려 가능	- Mode 3 및 Mode 2 적용 제외 (외국인투자정책 및 통계입수의 어려움 등)
협정문 작성	- 조속한 ESM규범 협정문안 마련 주장	- 협정문안의 작성은 시기상조 - 각 항목별로 입장이 수렴된 후 협정문안 마련

자료: 송영관(2005).

〈ESM 조치를 정당화하는 상황〉

쟁점으로는 ESM을 정당화하는 상황으로서 1) 수입증가, 2) 피해, 3) 수입증가 및 피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 외에 제4 요건으로 ‘unforeseen development’라는 개념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들 수 있다. 필리핀은 2004년에 가상사례로 안경판매점을 포함한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시력검사 및 안경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던 국내 검안사(optometrist)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시력검사는 양허하지 않았지만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해 안경판매까지 동시에 하던 검안사의 수입이 감소하리라고는 사전에 예측 곤란하므로 이를 unforeseen development로 정의하고 ESM을 정당화하는 상황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위스, EU, 칠레, 뉴질랜드 등은 Emergency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unforeseen development를 별도 규정으로 명기하고 제4 요건으로 포함하자는 반면,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베네수엘라, 홍콩, 폴란드, 노르웨이, 태국 등은 Emergency 안에 unforeseen development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 마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유통시장 개방이 여타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ESM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고, 칠레는 수요자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SM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였다.

〈Mode 3 포함 문제〉

선진국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개방된 외국인 투자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Mode 3에 대한 ESM 적용에 반대하는 반면, ASEAN 및 개도국은 외국인기업과 내국인기업간의 차별을 지지하고 외국인기업에 대해 Mode 3의 ESM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Mode 3의 포함 여부는 외국인 투자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ESM 규범제정 협상의 주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종서비스 개념〉

ASEAN 초안은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종서비스 및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을 피하고 각 사안별로 결정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DSB에 의뢰하는 방안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멕시코는 동종서비스와 직접경쟁관계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 국가가 동종성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산업’의 정의 및 기득권〉

국내에 Mode 3 형태로 투자한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따라 입장이 대별되고 있다. 국내산업의 정의에 외국인기업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입장은, 결국 ESM 적용대상에서 Mode 3가 사실상 배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함 입장을 표방하는 미국, 일본, EU,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1) 사실상 내·외국인 기업 구분 모호하고, 2)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철회 및 투자안정성 손상 우려가 있으며, 3) 외국기업의 기득권 보호문제의 경우, 국내산업의 정의상 기득권을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SEAN, 인도 등은 Mode 3 역시 ESM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용 가능한 조치의 형태〉

ASEAN 초안은 적용 가능한 조치로 GATS 협정 제16조 시장접근, 17조 내국민대우, 18조 추가약속의 양허철회/수정과 수량제한을 상정하고 있으나 상품에서는 양허한 관세의 철회형태만이 존재하는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3개 형태로 존재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Mode 2에 대한 ESM의 예는 환전통제, 해외에서 선박수리 서비스를 받는 선박에 대해 보다 높은 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제16조, 17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지 않았으나, 제18조 적용은 강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미국, EU, 스위스, 아르헨티나는 18조가 규제 개혁, 경쟁조건 개선 등과 관련되어 있고 수량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ESM이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쿼타의 적용과 관련, ASEAN은 쿼타 설정은 모든 상정 가능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만 각국의 특수상황과 통계지표의 발달 여부, 특히 각국의 능력과 기술적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U는 가격정보와 수량정보간 분리에 대한 가능성(feasibility)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으나, 브라질은 이미 GATS 16조 시장접근이 다양한 수량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허도 해 왔음을 들어 쿼타의 확대적용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상〉

ASEAN 초안은 보상의무를 규정하면서 사전협의 의무 및 2년 보복조치의 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보상면제기간 설정에 대해 브라질은 찬성하는 반면, 미국, EU, 홍콩, 칠레, 멕시코 등은 반대하였다. 또한 스위스는 보상면제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EMS 적용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ESM 규범제정의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은 주로 기술적 측면과 모드별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논의중이나, 필요성(Desirability)의 경우, 회원국들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 중이다. 서비스 양허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개방 이후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ESM의 필요성은 자명하다는 의견, ESM의 필요성과 더 높은 자유화수준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의견, ESM의 필요성은 ESM의 접근방식 및 핵심요소들과 연계시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논의의 층위가 다양하다.

결국 ESM의 필요성 문제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며, 작업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현재의 협상 진전 속도가 DDA협상 종료시까지 지속된다면, 농업 및 NAMA에 비해 서비스의 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고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2005년 말 홍콩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부속서가 합의로 채택됨에 따라, 그간 부진을 면치 못하던 서비스협상이 2006년 초부터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서비스협상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mode별 양허수준의 목표 도입, 복수적 R/O 등은 향후 서비스협상의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개도국들의 강한 반발로 다자적 수량목표(numerical target) 도입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고, 복수적 R/O 협상방식 또한 그 구속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문안이 수정되어, 서비스 부속서는 당초 선진국들이 추구했던 목표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복수적 R/O 협상방식의 도입에 따라 2006년에는 서비스양허협상에 다소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2006년 두 차례 복수적 R/O 방식을 통한 서비스양허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DDA가 중단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수적 R/O방식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에 서비스양허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여도 복수적 R/O 협상방식이 지속될 지는 불투명하다.

DDA가 재개된다고 하여도 서비스협상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서비스양허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과 NAMA 협상에서의 진전과 더불어 개도국 참여 확보를 위해 개도국 특별 고려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필요하다. 개도국

참여 확보 방안으로는 개도국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Mode 4 등 개도국 관심분야에 대한 대폭 양허 확대가 필요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선진국들의 국내 사정상 mode 4 등의 양허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각국이 개방된 수준까지라도 최대한 양허를 확대하여 개도국들의 참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 NAMA, 개발 등 여타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협상에의 개도국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규범

가. 개요

규범 협상 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에 의하여 2002년 2월 설립되었다. DDA 협상의 9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채택된 규범 분야는 반덤핑,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DDA 출범 당시 각료 선언문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규율을 명확(clarify)하게 하고 개선(improve)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과 목적은 유지되어야 하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기존의 WTO 규율과 절차를 명료화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하되, 협상은 지역무역협정의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협상 초기에는 이슈 발굴 차원에서 회원국들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

치 협정에서 명료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조항들을 제시하였다. 총 141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대부분은 반덤핑협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도국들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에는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위한 회원국 간의 비공식회의가 계속되었고, 2005년 초에는 양자 간 및 복수국 간 협의 체계가 구축되어 협정 개정안의 조문(legal text)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이슈 발굴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여러 사안들이 이미 1996년에 설립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⁴¹⁾ 아래에서는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부터 2006년 말 현재까지의 규범 협상의 각 분야별 주요 논의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나. 논의 동향

1) 반덤핑

반덤핑 협상은 주요 개념의 정의 확립과 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를 이루었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배포된 반덤핑협정 관련 이슈 및 제안서를 총 편집한 보고서(Compilation of Issues and Proposals)에 따르면, 덤핑 및 피해의 판정, 국내 산업의 정의, 조사의 개시 및 절차, 반덤핑 관세 부과와 징수, 재심, 개도국 특별 우대 등에 관한 사안들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⁴²⁾ 특히, 세부적인 주제로서 피해의 인과관계,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일몰재심, 우회덤핑, 분쟁 해결, 덤핑 수입의 정의와 같은 내용들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기술한 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

41) WTO(2005a).

42) WTO(2003).

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지연되었던 규범협상은 2004년 3월 재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는 이슈 발굴에 초점을 둔 공식 회의 위주로 진행된 반면, 2004년 3월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제안서 분석 등 대부분의 논의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협상의 성격이 형식적인 의견 교환에서 보다 허심탄회한 논의 진행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고,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의장보고서(TN/RL/9)는 밝혔다. 지금까지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제안서의 수는 총 143개이고, 이 중 반덤핑 관련 비공식 제안서는 100여건에 해당된다.⁴³⁾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제안서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칸쿤 각료회의 이후 새롭게 제기되었거나 반덤핑 프렌즈 그룹(Friends of Antidumping)⁴⁴⁾에 의해 기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프렌즈 그룹은 덤핑마진 산정에 있어서 ‘관련자(affiliated parties)’의 정의와 관련된 제안서(TN/RL/W/146)를 공식 제출하였는데, 관련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조사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정의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과 관련자가 연관되었을 때의 덤핑마진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미국, EU 등은 관련자 문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안서 상의 관련자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하였다.

비공식 회의에 최초로 제출된 제안서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관한 것이다(TN/RL/GEN/1). 동 제안서에서 프렌즈 그룹은 반덤핑 관세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소부과원칙의 적

43) 비공식 회의에 제출한 제안서는 JOB 문서로 분류되는데, 이후 TN/RL/GEN/*의 형태로 공개된다. 참고로 공식 회의에 제출된 제안서는 TN/RL/W/*로 분류되어 있다.

44) 반덤핑 프렌즈 그룹 (Friends of Anti-dumping):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대만.

용 의무화를 협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과 최소부과를 위한 피해 마진(injury margin) 산정 방법을 부속서(annex)로 추가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과 제로잉(zeroing)⁴⁵⁾ 금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가격약속은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업자가 덤핑으로 인한 수입국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가격을 인상하기로 수입국 정부와 약속할 경우 반덤핑조사를 중단하거나 조치를 철폐하는 제도인데, 프렌즈 그룹의 제안서(TN/RL/GEN/2)에 따르면 현 협정은 가격약속 관련 용어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조사당국은 수출업자의 가격약속을 거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렌즈 그룹은 현 협정이 제로잉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로잉 금지 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회원국들 간의 이견을 보여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안서를 통하여 협정 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TN/RL/GEN/8).

정상가격(normal value)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공식 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 회의에서도 진행되었다(TN/RL/W/150, TN/RL/GEN/9). 프렌즈 그룹은 관련 조항이 모호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식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제안서는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조항의 해석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일부 기술적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뿐 크게 반대하지 않은 반면, EU는 기존 규범 및 관행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 비교(fair comparison)와 관련하여 프렌즈 그룹이 제출한 제안서(TN/RL/W/158)가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현 협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공정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종 덤핑 마

45) 덤핑마진 산정시 개별수출가격이 가중평균정상가격보다 높아서 네거티브 덤핑마진이 발생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고 영(zero)으로 간주하여 최종 덤핑마진을 높이는 관행을 말함.

진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협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EU는 프렌즈 그룹 제안이 현 협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심과 관련해서는 9조 재심에도 원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덤핑 판정(2조)을 하고 증거를 수집(6조)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TN/RL/GEN/10, 44). 즉, 재심에서도 덤핑률 산정시 원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2%의 미소마진(de-minimis margin)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산정하지는 것인데, 현재 환급재심의 경우 0.5% 미소마진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이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2005년 2월, 프렌즈 그룹은 'Senior Officials' Statement'를 발표하였는데, 반덤핑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반덤핑 협상의 6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과도한 효과 경감, 반덤핑조치의 영구화 방지, 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투명성, 반덤핑조사의 비용 절감, 부당한 조사의 신속 종료, 덤핑과 피해를 규정하는 규율의 개선과 명료화다.⁴⁶⁾ 또한 문안에 기초한(text-based)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미국, EU, 인도 등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덤핑 조치의 효과와 공공이익(public interests)의 관계에 대한 제안서가 프렌즈 그룹에 의하여 다시 상정되었다(TN/RL/W/174, TN/RL/GEN/53). 반덤핑 조치는 국내 산업을 덤핑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나, 그 효과는 국내 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조사 대상 수입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생산자 또는 최종 소비를 하는 소비자에게 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반덤핑 조치는 결국은 수입국의 납세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반덤핑 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일부 국가들은 국내 공익에 관한 결정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46) WTO(2005b).

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실질적 피해 및 인과관계(causation) 판정에서 조사당국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예시 목록(illustrative lists)를 제시하였다(TN/RL/GEN/42). 즉, 조사기간 중 국내 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시장점유율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과 조사기간 중 정상 수입 물량이 덤핑 수입 물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또는 덤핑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덤핑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이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미국, 한국 등은 동 제안서의 예시 목록이 너무 제한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자(또는 관련제품)의 수가 많아 개별 덤핑 마진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당국이 진행하는 제한조사(limited examination)에 관한 규정인 반덤핑협정 6.1조에 대한 개정안도 프렌즈 그룹에 의해 제출되었다(TN/RL/W/181, TN/RL/GEN/46). 현행 협정 6.1조는 샘플선정 기준을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라고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어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정안에는 제한조사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집트는 덤핑산정 과정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비교시 통화환산(currency conversion)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TN/RL/W/183). 회원국들은 현 협정이 환율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항의 명확화에는 동의하였으나, 이집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원국들 간에도 방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캐나다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중단하지는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TN/RL/GEN/37, 48). 회원국들은 WTO 협정에 위배된 조치에 의거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규정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일몰 재심(sunset review)과 관련하여 프렌즈 그룹은 모든 반덤핑조치는 5년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재심없이 종료를 주장하였다(TN/RL/GEN/74). 이에 대해 미국, EU는 덤핑의 피해 또는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5년 이후 무조건 종료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캐나다는 일몰 재심 규정을 유지하되, 조사당국의 직권조사 규정을 철폐하고 재심 관련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회원국들은 캐나다 제안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제품을 일부 변경하거나 선적방법 등을 바꾸어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우회덤핑(circumvention)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는데(TN/RL/GEN/71, 106), 한국, 일본 등은 우회여부의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2006년으로 접어들어서는 의장이 7월말까지의 의장 문안(text) 제출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제안서별 논의를 마치고 회원국 간의 이견차이를 좁혀 구체적인 조문(legal text)을 작성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조문 작성의 분위기는 다음에 다룰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 협상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2) 일반보조금

일반보조금 협상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을 개선하고 명료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 협상과 같이 논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회원국들은 일반보조금의 협상 진전도 규범 협상내의 다른 분야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2005년 10월 기준으로 10건의 구체적인 내용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중 5건이 보조금 규율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5건은 상계조치를 위한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한 것이다. 보조금의 정의,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심각한 손상, 허용보조금 등 기존에 거론된 이슈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출 신용 및 보증과 관련하여 시장금리와 비교하여 금지 보조금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TN/RL/W/177), 미국, 일본, EU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보조금 배분 방식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TN/RL/GEN/4, 12, 17, 45). 미국은 동 제안서에서 보조금을 반복(recurring) 보조금과 비반복(non-recurring)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예를 제시하였다. 비반복 보조금의 예는 부채 탕감 또는 고정 자산 제공 등으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구조와 관련이 깊게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그 혜택은 수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한 비반복 보조금 혜택의 연도별 배분 방법과 계산 방식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은 보조금을 구분하여 혜택 배분 방식에 대한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였다.

3)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비공식그룹인 피쉬(fish) 프렌즈 그룹⁴⁷⁾의 적극적인 의견 제

47) 피쉬 프렌즈 그룹(Fish Friends Group)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미국.

안으로 진전이 많았던 분야이다. 협상 초기에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율 마련을 주장하는 프렌즈 그룹과 수산자원의 고갈은 보조금의 지급보다는 관리정책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별도 규정 마련 제안에 강한 반대를 나타내는 한국, 일본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2004년 6월, 일본이 수산보조금 금지 방식에 대한 제안서(TN/RL/W/159)를 제출하면서 협상은 전환 국면을 맞이하였다.⁴⁸⁾ 즉, 별도 규정 신설 자체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일본이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산보조금의 별도 규정화는 합의된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동 제안서에서 일본은 뉴질랜드(TN/RL/W/154)가 제시한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방식(top-down approach)에 맞서, 과잉 어획능력(overcapacity)과 불법(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IUU) 어획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되,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허용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도 뉴질랜드의 제안에 대항하여 비용/수익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 능력 또는 과잉 어획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어업관리, 자원상태, 어업과 규모 차이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감안한 수산보조금 규율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TN/RL/W160).

2005년 2월, 한국, 일본, 대만은 하향식 방식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기본 원칙과 불합치 한다는 점을 재지적하고,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으로 포함되어야 할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TN/RL/W/172). 이후, 회원국들은 금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각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 보조금을 유형별로 검토할 시기라는 데 뜻을 모았다.

수산보조금의 개도국 특별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에 관

48) ICTSD(2004).

해서 브라질은 개도국의 일정 조건하의 어획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허용보조금의 예를 제시하였다(TN/RL/W/176, TN/RL/GEN/56). 회원국들은 어획능력 향상과 과잉 어획능력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고 개도국 특별우대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EU는 수산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TN/RL/W/178, TN/RL/GEN/39), WTO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방식(WTO control system)과 각국이 자체적으로 투명성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신설하고, 그 시행 결과를 WTO가 사후 검토하는 방식(domestic-based system)의 두 가지이다. 회원국들은 투명성 문제가 논의의 중요한 핵심임을 인정하고 EU가 제시한 방식의 정확한 내용 및 두 방식간의 균형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상태이다.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는 프렌즈 그룹도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논의에는 관심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감척 및 면허회수(buyback)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TN/RL/GEN/41). 감척 및 면허회수 제도는 과잉 어획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선 및 어로면허의 회수를 통해 어획능력을 통제하는 것인데, 미국의 제안은 이러한 감척사업에 대한 지원은 허용보조금으로 간주하여 합법화 하지는 내용으로 대체로 회원국들은 동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4)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의 확산 추세에 따라 DDA에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은 진전이 부진한 상태였다. 협상의 본래 취지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남발을 막아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원칙인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가급적으로 널리 적

용되도록 하지는 것이었으나, 무역자유화와 통상제도의 개선이라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체제에 기여하는 면을 인정하는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을 강화하지는 요구가 잘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⁴⁹⁾

칸쿤 이후 지역무역협정 관련 논의는 지역무역협정의 구조적 사안(systemic issues)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칠레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의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역무역협정의 승인 또는 기각 역할을 배제하지는 제안(TN/RL/W/151)과 GATS 제5조 관련 사안들이 GATT 제24조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N/RL/W/152, 163).

지역무역협정의 발전적 측면을 강조하는 ACP국가들에 의한 제안이 있었는데,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한 개도국간의 무역협정이 GATT 제24조에 의해 손상 되서는 안 된다는 것과 GATT 제24조 관련 절차와 규정에 개도국 특별 우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TN/RL/W/155). 그러나 권능조항과 개도국 특별 우대에 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

2005년에는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총 8개의 공식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중 5개가 GATT 제24조 8항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 SAT)’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만큼(TN/RL/W/173, 179, 180, 185, 190), SAT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밖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균형에 대한 제안(TN/RL/W/182, 186)과 지역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006년 6월 의장은 지역무역협정의 사전 공고와 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 메커니즘(Transparency Mechanism)’ 개정안을 잠정적으로 승인하였다. 투명성 메커니즘에 의하여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 하의 지역무역

49) 강문성 외(2003).

협정에 대한 검토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수행하고, 권능 조항에 의한 개도국간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검토는 무역발전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담당하게 된다. 라미 사무총장은 규범 협상 그룹의 투명성 메커니즘 승인을 환영하고, 지역무역협정이 더 이상 다자체제의 장애물(stumbling blocks)이 아닌 한 구성요소(building blocks)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결정이 타 분야에 있어서 협상 진전의 전조로서 작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다. 향후 전망

DDA 협상 중단으로 그동안 제안된 논의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문안 협상을 시도하는 등 진전을 보이던 규범 분야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이 무산되기보다는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최근 라미 사무총장도 협상을 다시 개시할 뜻을 밝힘으로써 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규범협상 그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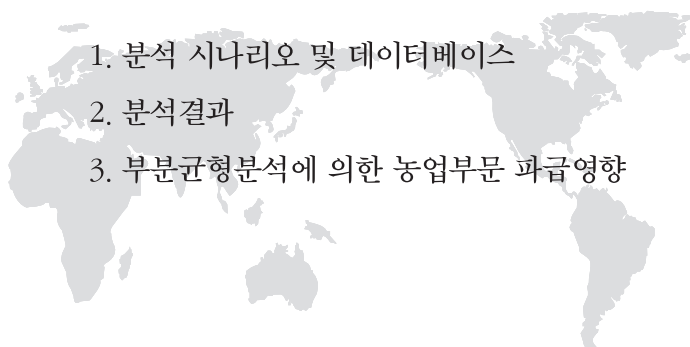
20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 선언문(WT/MIN(05)/DEC)은 그동안의 규범 협상에서 이룬 성과를 인정하고, 여타 협상 분야와 협상의 진전 정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 선언문은 규범 협상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각료 회의 이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협상의 발전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관련 규율의 투명성, 예측성, 명료화를 추구하되, 무엇보다도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편익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DDA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규범 분야는 홍콩 각료 회의 선언문의 지시 사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협상과 관련해서는 반덤핑 조치의 적법

절차, 투명성 및 예측성은 강화하되, 조치의 부당한 사용을 제지하고 조사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던 보조금 분야는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제안서에 기초한 심도 있는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며, 별도 규율 마련에 합의한 수산 보조금 협상에서는 투명성과 시행 가능성을 내포하는 규율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지난 7월에 투명성 메커니즘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한 지역무역협정 협상에서는 실질적 모든 무역의 요건과 지역무역협정의 유예기간 및 발전적 측면에 관한 문안 초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본 장에서는 일반균형분석 체계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DDA 경제적 파급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DDA 협상의 모든 의제 및 의제별 핵심 쟁점을 CGE모형에 반영하여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현실 세계를 단순화하면서 핵심 관심분야인 농업, NAMA, 서비스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DDA 시장 개방 시나리오는 시장접근분야에 한정해서 농업, NAMA, 서비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부여 등 주요 의제 및 쟁점을 중심으로 했다.

한편 농업분야는 품목별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분균형모형을 따로 설정하여 DDA 개방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1) 국가분류

DD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는데 있어 먼저 세계 각국을 한국, 미국, EU, 중국(홍콩포함), 최빈개도국, 기타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 등 7개 국가 또는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미국 및 EU는 DDA 협상의 주요 협상그룹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으며, 최빈개도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무관세·무쿼터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리하였다. 중국을 따로 본 것은 중국이 한국의 DDA 개방효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뿐 아니라 DDA 협상차원에서도 중요한 협상국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타 세계는 기타 선진국과 기타 개도국으로 세분하여 WTO 주요 협상 그룹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표 4-1. 국가분류

	그룹	GTAP상의 국가
1	한국	한국
2	미국	미국
3	EU	프랑스, 독일, 영국 등
4	중국	중국, 홍콩
5	최빈개도국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등 UN이 정한 최빈개도국
6	기타 선진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케인즈 선진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 스위스 등 EFTA 선진국
7	기타 개도국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남아공 등 G20 국가들 터키, 모로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2) 산업분류

전체 산업은 6개의 농산물과 1개의 채취업(임업, 수산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 그리고 7개 제조업과 2개 서비스업 등 모두 16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농산물 6개 부문은 쌀, 곡물, 채소·과일, 육류·낙농, 가공식품(유지류, 식품, 음료 및 담배), 기타농업 등이다. 여기서의 가공식품에는 유지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농업 부문은 이미 자유화가 충분히 진행되었거나 추가 개방에 따른 충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밀, 사탕수수, 산동물, 원유, 설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농산물 부문은 1개 채취업, 7개 제조업 및 2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업은 섬유, 화학·화학제품(정유,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금속,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제조업으로 세분하였는데, 기타 제조업은 가죽제품, 목제품, 종이·인쇄 및 광물제품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업은 개방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는 서비스 1부문(건설, 수송·통신 서비스, 사업·금융 서비스)과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2부문(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국방·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양분하였다.

표 4-2.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표

No.	String	GTAP 57	IO 167
1	쌀	1, 23	1, 57
2	곡물	3, 5, 8	
3	채소 및 과일	4	
6	육류 및 낙농	19, 20, 22	
5	가공식품	21, 25, 26	
6	기타농업	2, 6~7, 9~12, 24	
7	채취업 (임업, 수산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	13~18	
8	섬유·직물	27, 28	87~108
9	화학·고무·플라스틱	32, 33	137~177
10	철강·금속	35~37	193~225
11	수송기기	38, 39	281~294
12	전자	40	262~269
13	기계	41	226~280
14	기타제조업 (가죽, 목제품, 종이·인쇄, 광물제품)	29~31, 34, 42	112~136, 178~194, 295~304
15	서비스1 (건설, 수송·통신, 사업·금융)	46, 48~54	
16	서비스2 (도소매, 전기·가스·수도, 국방·보건·의료)	43~45, 47, 55~57	

주: 1) 한국은행(2004)과 GTAP의 산업분류를 토대로 작성

나. 분석 시나리오

DDA 시장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 시나리오는 우선적으로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시나리오 2)의 2가지로 나누었다. 그 다음으로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의 최대의 쟁점인 스위스공식 개도국 계수와 서비스시장의 개방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농산물 관세감축은 G-20가 제안한 관세구간 및 구간대별 관세감축률을 적용하였으며, 아울러 민감품목도 고려되었다.⁵⁰⁾ 비농산물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스위스공식 계수 8을, 개도국의 경우 계수 20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시나리오 1-1,2와 시나리오 2-1,2),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선진국 계수 10, 개도국 계수가 25인 경우도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 (시나리오 1-3,4와 시나리오 2-3,4)

한편 각 시나리오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최빈 개도국에게 무관세를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미국, EU 및 기타 선진국은 전산업에서 최빈개도국 무관세 혜택을 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조업분야에서만 최빈개도국 수입에 대해서 무관세를 가정하였다.

DDA 서비스 협상 결과가 서비스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모형안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부문 개방이 모든 국가 및 권역의 거시 경제 및 농산물·비농산물 부문에 긍정적 이익을 발생시킬 것은 분명

50) 쌀은 2004년 쌀 협상을 고려하여 양허품목에서 제외하였다. 민감 품목은 곡물, 채소·과일과 육류·낙농품으로 선정했으며, 동 품목의 관세감축률은 G-20가 제안한 감축률의 70%를 적용하였다.

하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이 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타 산업 및 타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시나리오 1-1, 1-3 및 시나리오 2-1과 2-3에서 모든 국가의 서비스 부문 20% 관세감축을 가정하였다 (권역별 서비스 관세상당치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 이에 따라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서비스 장벽이 0로서 서비스 개방이 없는 경우가 된다.

이상과 같은 총 8가지의 DDA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DDA 효과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패널 A: 농업 개도국 조건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
농산물	한국. 관세구간 및 감축	개도국 쌀제외	개도국 쌀제외	개도국 쌀제외	개도국 쌀제외
	한국. 민감품목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비농산물	스위스 공식계수	선진국. 8 개도국. 20	선진국. 8 개도국. 20	선진국. 10 개도국. 25	선진국. 10 개도국. 25
	선진국과 한국. 최빈개도국 무관세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서비스	서비스 장벽 및 개방	유 20%	무	유 20%	무

패널 B: 농업 선진국 조건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2-3	시나리오 2-4
농산물	한국: 관세구간 및 감축	선진국 쌀제외	선진국 쌀제외	선진국 쌀제외	선진국 쌀제외
	한국: 민감품목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비농산물	스위스 공식계수	선진국: 8 개도국: 20	선진국: 8 개도국: 20	선진국: 10 개도국: 25	선진국: 10 개도국: 25
	선진국과 한국: 최빈개도국 무관세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서비스	서비스 장벽 및 개방	유 20%	무	유 20%	무

- 주: 1) 농산물 관세구간 및 구간대별 관세감축: G-20 제안사항을 적용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 각 그룹별 WTO 양허세율의 감축률을 계산한 후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실행세율의 감축률을 시나리오에 적용.
- 2) 비농산물 관세감축: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며, 선·개도국 계수 (8, 20) 및 (10, 25) 을 고려한 하여 새로운 양허세율을 계산한 후,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실행세율의 감축률을 시나리오에 적용.
- 3) 한국의 농산물 민감품목을 고려는 곡물, 채소·과일과 육류·낙농품 관세감축률의 70% 관세삭감을 고려함. 미국, EU 등 기타 권역에서는 민감품목을 고려하지 않음.
- 4) 최빈개도국 무관세고려와 관련, 미국, EU 및 기타 선진국은 전산업에서 최빈개도국 무관세 혜택을 가정하나, 한국의 경우는 제조업에서만 대 최빈개도국 수입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가정.
- 5) 서비스 개방시나리오 경우, 선·개도국 모두 20% 관세 삭감을 적용.

다. 데이터베이스

1)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DDA 협상에서는 WTO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회원국간 합의된 관세구간 및 관세감축률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양허세율 기준으로 결정된 관세구간 및 관세감축이 각 국의 개별 산업의 실행세율을 얼마나 감축시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CGE 연구에서는 WTO 양허세율의 감축을 그대로 GTAP 실행세율

감축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개방의 이익 또는 특정 산업에서 개방의 피해가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GTAP 산업분류별 WTO 양허세율 및 실행세율을 7개 권역별 14개 산업별 (서비스 부문 제외)로 계산하여, 각 권역별 해당 산업의 양허세율의 변화가 실행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계산한 후 모의실험시 이를 GTAP 세율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량적 결과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표 4-4]에서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DDA 이후의 국가별 산업별 양허세율을 계산하고, DDA 이전의 실행세율에서 DDA 이후 변화된 양허세율의 감축률을 계산하여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이 때 변화된 양허세율이 변화 전 실행세율보다 높을 경우 관세감축률을 0으로 가정하였다.

표 4-4. WTO 양허세율 및 실행세율

	한국		미국		EU		기타선진국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쌀	400.0	5.0	11.2	11.2	18.65	11.17	8.68	2.49
곡물	110.6	106.5	4.7	4.8	21.31	4.23	9.19	4.95
과일·채소	130.6	128.8	3.3	3.3	21.98	9.44	3.67	3.41
축산	34.4	32.9	7.5	7.5	32.68	7.31	10.69	2.74
가공식품	49.9	38.0	2.9	2.9	25.23	13.37	6.40	3.91
기타농업	15.5	11.0	3.8	3.8	26.29	9.59	6.86	2.50
채취	7.3	9.0	0.1	0.1	8.71	2.64	1.12	0.50
섬유	20.5	10.2	10.1	10.2	12.91	9.80	7.06	6.30
화학·고무·플라스틱	7.1	5.2	2.6	3.0	8.32	3.45	0.72	0.96
금속	5.1	2.9	1.7	1.8	8.90	2.65	1.28	1.72
수송기기	9.9	6.6	3.0	3.0	12.38	7.24	3.23	6.22
전자	1.3	1.0	0.4	0.5	6.06	1.70	0.84	1.79
기계	8.2	5.6	1.3	1.6	7.97	2.21	0.34	0.63
기타제조업	6.9	4.4	1.2	1.2	9.95	2.50	10.63	13.76

표 4-4 계속

	중국		최빈개도국		기타개도국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쌀	56.6	59.2	29.80	9.01	12.03	6.08		
곡물	3.0	2.4	132.90	30.19	56.66	23.39		
과일·채소	11.1	11.0	122.10	5.92	48.02	27.38		
축산	9.1	10.1	40.93	13.50	25.89	8.06		
가공식품	10.5	13.6	143.71	24.64	64.16	30.06		
기타농업	13.3	14.0	272.72	50.39	107.53	29.62		
채취	2.5	2.5	32.88	9.38	28.08	6.52		
섬유	9.5	10.7	107.10	21.39	52.57	23.66		
화학·고무·플라스틱	6.1	7.0	18.46	9.25	14.76	3.59		
금속	5.3	5.3	36.93	12.48	26.15	8.55		
수송기기	8.6	11.3	35.69	17.65	38.44	20.27		
전자	1.2	1.4	29.82	11.88	25.96	7.06		
기계	5.9	5.8	37.26	9.43	21.65	4.06		
기타제조업	8.0	8.0	101.95	28.91	70.22	28.47		

2) 서비스 관세상당치

서비스 개방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GTAP 데이터⁵¹⁾에 서비스 관세상당치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51) GTAP 기준 데이터는 서비스 부문의 관세가 0인 것으로, 즉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이 전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매우 큰 서비스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관세상당치를 무시하고 제조업 및 농업의 관세인하 효과를 분석할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균형보다는 부분균형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반대로 본 보고서처럼 서비스 장벽을 반영하여 분석할 경우 일반균형분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입력된 관세상당치가 현실의 정확한 장벽 크기를 정량적으로 포착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다.

표 4-5. 국가별 서비스부문별 관세상당치

	건설	도소매	수송 및 통신서비스	사업 및 금융서비스	기타서비스
한국	16.0	21.4	184.9	36.3	40.7
미국	5.0	4.6	111.4	21.7	31.7
EU	10.0	10.0	182.0	27.2	23.6
중국	25.9	35.0	185.7	39.7	42.1
최빈개도국	24.7	26.5	158.9	42.6	38.0
기타선진국	5.7	6.0	142.2	28.4	32.9
기타개도국	40.0	34.9	193.9	49.9	40.8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1) 거시경제효과

GDP 증가,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후생증가, 민간소비지출 증가 등 거시지표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거시경제 파급효과의 시나리오별 순위는 시나리오 1(농업부문 개도국)에서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2 및 시나리오 1-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농업부문 선진국)에서도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시장의 개방 유무가 GDP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시나리오 1-1과 시나리오 1-2의 비교), NAMA에서 스위스 공식의 계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좁히는, 즉 개도국들의 시장개방폭이 클수록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나리오 1-1과 1-3의 비교).

한편 농업부문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선진국이되는 경우가 거시 경제 전체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즉, 농업에서 선진국 조건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GDP가 약 0.1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등변화로 파악된 후생 증가 폭도 약 7억 달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결과가 한국이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포기하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⁵²⁾

한편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가 정태적 효율성만을 고려할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정태분석과보다 자본축적 분석의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약 3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의 장기적 결과 우리나라 생산 활동의 수익조건이 개선되고 이를 반영하여 다시 자본축적이 증가함으로써(생산가능곡선이 확장됨으로써) 생산 및 소비활동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산물 개도국 조건의 4가지 시나리오 중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시나리오는 NAMA의 관세감축에서 선진국, 개도국 계수가 (8, 20)인 시나리오 1-1이지만, 계수 (10, 25)인 시나리오 1-3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NAMA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계수 차이를 좁힐수록 DDA 개방으로 얻는 우리의 이익이 소폭이지만 증가한다. 스위스 공식 계수를 선진국 8, 개도국 20으로 하는 경우보다 (10, 25)로 선·개도국간 계수 차이를 증가시킬 경우, 선진국 및 개도국의 시장개방 폭이 축소되면서 발생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52) 다음에 나오는 부문별 산출액 변화를 보면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가 비농업부문의 산출액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농업부문의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농업부문 자체의 산출액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산출액도 감소한다.

표 4-6. 시나리오별 거시경제효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패널 A: 농업 개도국 조건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GDP 증가 수량(%)	0.72	2.44	0.45	1.51	0.71	2.26	0.43	1.33
금액(백만불)	3,254	11,015	2,051	6,817	3,229	10,227	1,938	6,033
후생증가 동등변화(백만불)	4,171	9,337	2,992	6,129	4,041	8,677	2,773	5,470
민간소비지출(%)	1.01	2.27	0.73	1.49	0.98	2.11	0.67	1.33
교역 수출증가(%)	3.15	5.27	2.27	3.61	2.67	4.60	1.80	2.95
수입증가(%)	4.88	6.30	3.39	4.24	4.22	5.51	2.73	3.45
자본축적(%)	-	3.66	-	2.28	-	3.33	-	1.96

패널 B: 농업 선진국 조건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2-3		시나리오 2-4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GDP 증가 수량(%)	0.88	2.74	0.59	1.81	0.87	2.60	0.59	1.67
금액(백만불)	3,972	12,397	2,679	8,175	3,946	11,748	2,651	7,527
후생증가 동등변화(백만불)	4,658	10,217	3,394	6,999	4,528	9,679	3,260	6,460
민간소비지출(%)	1.13	2.48	0.82	1.70	1.10	2.35	0.79	1.57
교역 수출증가(%)	3.49	5.81	2.60	4.15	3.01	5.15	2.13	3.50
수입증가(%)	5.68	7.22	4.19	5.15	5.02	6.44	3.53	4.38
자본축적(%)	-	4.01	-	2.62	-	3.71	-	2.32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도국의 제조업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선진국과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없을 경우 DDA에서 얻을 수 있는 거시경제 이익의 크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고, NAMA 계수 (8, 20)가 설정된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시나리오 1-1과 1-2의 비교),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경우가 미개방한 경우보다 GDP가 약 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 개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경제적 유인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농업 선진국 조건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도 개도국 시나리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부문별 산출액 변동

개도국 조건 농업개방의 경우(시나리오1의 정태분석)를 대상으로 경제전체 산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서비스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할수록, 선·개도국간 NAMA 계수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우리 경제 전체의 산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시장 개방의 여부에 따라 경제 전체의 산출액은 12억(시나리오 1-1과 1-2 비교)~15억 달러(시나리오 1-3과 1-4 비교) 차이가 나며, NAMA 계수의 선택에 따라 13억(시나리오 1-2와 1-4 비교)~15억 달러(시나리오 1-1과 1-3 비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산물 산출액 감소(피해규모)규모는 약 29~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비스시장의 부분 개방과 함께 NAMA 계수를 (10, 25)으로 한 시나리오 1-3의 경우, 농산물 산출액 감소는 약 32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NAMA 계수를 (8, 20)으로 한 시나리오 1-1의 28억 9천만 달러 감소보다 약 3억 6천만 달러 더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NAMA분야에서 시장개방폭을 확대하는 것

이 농업분야의 산출액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NAMA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NAMA 계수는 동일하지만, 서비스 개방여부에 따른 생산액 변동차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때 농업의 산출액 감소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NAMA 계수를 (8, 20)으로 설정한 경우,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약 29억 달러, 개방한다면 약 32억 5천 달러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농업산출액이 약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정태모형에서의 제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NAMA 계수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산출액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NAMA 계수를 다르게 선택한 시나리오 1-1과 1-3을 비교하면, 계수 (8, 20)일 경우 약 25억 달러 증가하지만, 계수 (10, 25)일 경우는 약 21억 달러에 그쳐 약 4억 달러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장 개방여부에 따른 제조업 산출액 변동을 비교하면, 동일 조건하에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수록, 산출액 증가가 작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중장기적 효과를 나타내는 자본축적모형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서비스시장 개방이 동시에 일어날수록, 제조업의 산출액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NAMA 계수 (8, 20)을 채택할 경우, 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증가하는 추가적인 제조업의 산출액은 약 3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정태모형에서의 서비스 시장 산출증가액은 서비스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때보다 미개방할 경우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1과 1-2를 비교하면, 시장개방이 일어나면 정태모형에서는 16억 달러 덜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오히려 서비스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것이 산출액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시장개방이 단기적으로는 서비

스 산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자본축적이 일어나서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그 증가량은 더 커지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선진국 조건 농업개방의 경우(정태분석) 분석의 결과는 농업의 개도국 조건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절대적 값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농산물 시장에서의 산출액 변동을 보면, 개도국 조건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감소가 나타난다. 시나리오 1-1과 2-1을 비교하면, 농업의 선진국 지위를 받는 경우, 약 65억 달러의 산출액 감소가 예상되어, 개도국경우보다 36억 달러 추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전체의 산출액 증가는 농업이 개도국일 때가 선진국일 때 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개도국 또는 선진국 조건이 제조업부문의 산출액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농업 부문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시장개방확대도 전반적인 가격하락폭이 커진 것도 산출액을 감소시킨 원인이다. 결국 농업이 선진국 조건으로 개방되면 양적으로 우리 경제는 GDP가 0.16% 더 성장하지만 반면 전반적인 가격수준의 하락으로 산출액 증가 폭은 줄어든다.

표 4-7. 시나리오별 산출액변동: 한국에 미치는 영향

패널 A: 농업 개도국 조건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1-4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농산물	-2,887	-2,518	-3,246	-2,827	-3,250	-2,617	-3,287	-2,926
채취업	-127	-45	-118	-71	-104	-32	-99	-58
제조업	2,517	11,893	2,553	8,425	2,115	10,651	2,160	7,204
서비스	5,406	10,460	6,960	9,931	4,614	9,191	6,085	8,639
경제전체	4,908	19,790	6,149	15,458	3,375	17,193	4,859	12,859

패널 B: 농업 선진국 조건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2-3		시나리오 2-4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정태	자본
농산물	-6,490	-5,786	-6,521	-6,073	-6,822	-6,178	-6,853	-6,461
채취업	-61	26	-56	-2	-36	44	-32	17
제조업	2,689	12,952	2,714	9,474	2,278	11,775	2,320	8,316
서비스	5,382	10,807	6,889	10,277	4,593	9,628	6,072	9,074
경제전체	1,521	17,999	3,026	13,676	13	15,268	1,508	10,946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1) 거시경제효과

가) 미국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GDP 증가, 동등변화로 파악한 후생변동(민간소비지출변동 포함)이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정태분석). 그나마 서비스 개방이 없는 시나리오 2와 4에서는 GDP 증가가 1/4로 줄어들며 동등변화는 약 14% 크기로 줄어들고, 민간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축적 분석에서는 모든 거시지표가 현상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DDA에서 얻을 이익이 단기보다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연구대상 7개 국가 또는 권역 중 가장 작게 그리고 4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WTO 개방의 이익을 거의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번 DDA 협상에서 시장개방 폭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있음을, 또한 대폭적 개방 확대가 어려울 경우 DDA 협상에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여부는 미국의 거시경제변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NAMA 공식계수는 그 차이가 줄어들면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를 보면, 미국의 DDA 개방의 이익 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은 서비스산업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전략적 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 EU

서비스 개방을 고려한 정태모형에서 DDA 타결에 따른 GDP 증가는 0.21%(수량기준)이나 자본축적 모형에서는 약 0.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EU의 실행세율 감축 폭을 계산함에 있어 품목별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분류상의 문제로 EU 농업부문 관세감축이 아주 작았음을 고려할 때 위의 결과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정태모형에서 EU의 GDP는 0.03%증가하여 서비스개방을 고려한 결과인 0.21%보다 크게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EU가 서비스 협상에서 개방 폭을 확대함으로써 DDA 개방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의 결과와 같이 농산물 협상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위를 가질 경우, 비농산물 협상에서의 계수차이가 작을수록 EU의 거시경제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입장에서 볼 때 비농산물 시장 협상에서 개도국 계수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EU의 이익증가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선진국

기타 선진국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선진국 농업수출 그룹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선진국을 양축으로 하고 있다.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을 차이를 반영하여 DDA 관세감축률을 계산하는 본 보고서의 과정상 (1) EU 농산물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관세감축 폭과 (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NAMA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관세감축 폭이 생각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기타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케언즈 선진국의 대 EU 및 대 개도국 농산물 수출이 과소평가되었을 것이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대 개도국 제조업 수출 또한 현실보다 감소했을 것이다.

기타선진국이 얻는 경제적인 효과의 패턴은 미국, EU와 동일한 모습이다. 미국, EU와 같이 서비스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개방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이들 국가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중국(홍콩 포함)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모두에서 시나리오 4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 기타 개도국 다음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모형에서의 GDP 증가율이 약 0.2%(서비스시장 미개방)~0.4%(서비스시장 개방)이며, 자본축적모형에서의 GDP 증가율은 약 0.8%(서비스시장 미개방)~1.2%(서비스시장 개방)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개도국 비농산물 시장개방이 축소될 때(계수=25), 개방의 이익이 증가한다. 또한 서비스 개방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마) 최빈개도국

GDP 증가율로 평가할 때 최빈개도국은 DDA 협상에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 정태모형에서의 GDP 증가율이 0.19~0.48%(물량기준)이며, 자본축적모형에서는 0.66~1.30% 증가하고 있다.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모형에서 비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큰 경우(시나리오 1과 2) 최빈개도국의 후생 증가폭이 소폭 커진다. 특히 시나리오 1 자본축적 모형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높은 중장기 효과).

바) 기타개도국

중국을 제외한 농산물수출 개도국(G20: 인도,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을 핵심 구성원으로 하는 기타 개도국도 DDA 협상에서 상당 수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GDP 증가율로 평가할 때 기타개도국은 DDA 협상에서 한국, 최빈개도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다자간 개방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정태모형에서의 GDP 증가율이 0.05~0.34%이며, 자본축적모형에서는 0.2~0.75%를 기록하고 있다. 기준 시나리오(시나리오 1과 2)와 비교할 때, NAMA에서의 개도국 계수가 증가한(비농산물 개방폭 축소) 시나리오 3과 4에서 GDP 및 후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개도국 민감 산업에서의 개방축소(보호확대)가 거시경제 전체의 이익을 작게 하면서 양자간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G20국과의 협상에서는 한국과 농산물 수출 개도국 양자간에 농산물 교역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사) 거시경제효과의 종합적 평가

DDA 상품시장 개방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최빈개도국 및 기타 개도국은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 수준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미국, EU, 기타선진국은 함께 공조하며 상품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

하는 전략을 추진할 유인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에서 EU에 양보하며, 개도국 제조업 개방확대 쟁점에서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기타 개도국의 입장은 제조업 개방 확대 쟁점에서 다소 차별적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최빈개도국과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G20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면서 EU와 합의할 수 있다면 DDA를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농산물 시장 확대(G20의 입장을 반영)에서 EU의 동의를 구하면서, 서비스 포함 전 산업 개방 확대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발하는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무쿼터 등 S&D 제공으로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방 확대로 전체적인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확대되겠지만 농산물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의 불만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방 확대의 이익을 피해그룹에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표 4-8. 시나리오별 거시경제효과: 각 협상그룹에 미치는 영향

패널 A: 정태분석

		GDP증가 수량(%)	동등변화 (백만 달러)	후생증가 (백만 달러)	민간소비 지출증가(%)	수출액 증가(%)	수입액 증가(%)
1-1	한국	0.72	3,254	4,171	1.01	3.15	4.88
	미국	0.04	3,892	2,492	0.03	3.54	1.79
	EU	0.21	17,830	18,072	0.24	0.84	0.77
	중국	0.40	5,305	5,958	0.48	4.15	5.76
	최빈개도국	0.48	2,195	3,767	0.89	7.29	6.90
	기타선진국	0.11	7,082	7,421	0.13	2.04	2.51
	기타개도국	0.34	16,480	14,138	0.32	2.06	2.53
1-2	한국	0.45	2,051	2,992	0.73	2.27	3.39
	미국	0.01	542	-2,333	-0.03	1.72	0.80
	EU	0.03	2,348	3,912	0.05	0.33	0.23
	중국	0.23	3,057	3,359	0.27	3.42	4.90
	최빈개도국	0.24	1,117	2,695	0.64	5.69	5.48
	기타선진국	0.02	998	1,404	0.03	1.26	1.49
	기타개도국	0.06	2,911	971	0.02	1.13	1.44

표 4-8. 패널 A: 정태분석 계속

		GDP증가 수량(%)	동등변화 (백만 달러)	후생증가 (백만 달러)	민간소비 지출증가(%)	수출액 증가(%)	수입액 증가(%)
1-3	한국	0.71	3,229	4,041	0.98	2.67	4.22
	미국	0.04	3,881	2,739	0.03	3.37	1.74
	EU	0.21	17,684	16,928	0.22	0.80	0.74
	중국	0.41	5,432	6,051	0.49	3.78	5.19
	최빈개도국	0.42	1,951	3,662	0.87	6.18	5.76
	기타선진국	0.11	7,001	7,152	0.13	1.89	2.35
	기타개도국	0.33	15,927	14,514	0.33	1.80	2.18
1-4	한국	0.43	1,938	2,773	0.67	1.80	2.73
	미국	0.01	533	-2,079	-0.02	1.55	0.76
	EU	0.03	2,190	2,758	0.04	0.28	0.20
	중국	0.24	3,186	3,454	0.28	3.05	4.33
	최빈개도국	0.19	874	2,592	0.61	4.57	4.34
	기타선진국	0.01	916	1,132	0.02	1.10	1.34
	기타개도국	0.05	2,366	1,353	0.03	0.87	1.09

		GDP증가 수량(%)	동등변화 (백만 달러)	후생증가 (백만 달러)	민간소비 지출증가(%)	수출액 증가(%)	수입액 증가(%)
2-1	한국	0.88	3,972	4,658	1.13	3.49	5.68
	미국	0.04	3,891	2,507	0.03	3.55	1.79
	EU	0.21	17,828	18,085	0.24	0.85	0.77
	중국	0.40	5,245	6,013	0.49	4.24	5.79
	최빈개도국	0.48	2,195	3,766	0.89	7.30	6.89
	기타선진국	0.11	7,094	7,542	0.14	2.05	2.51
	기타개도국	0.34	16,490	14,120	0.32	2.06	2.53

표 4-8. 패널 A: 정태분석 계속

		GDP증가 수량(%)	동등변화 (백만 달러)	후생증가 (백만 달러)	민간소비 지출증가(%)	수출액 증가(%)	수입액 증가(%)
2-2	한국	0.59	2,679	3,394	0.82	2.60	4.19
	미국	0.01	541	-2,317	-0.03	1.73	0.80
	EU	0.03	2,345	3,924	0.05	0.33	0.23
	중국	0.23	2,997	3,413	0.28	3.51	4.93
	최빈개도국	0.24	1,117	2,695	0.64	5.69	5.48
	기타선진국	0.02	1,009	1,523	0.03	1.26	1.49
	기타개도국	0.06	2,921	954	0.02	1.13	1.44
2-3	한국	0.87	3,946	4,528	1.10	3.01	5.02
	미국	0.04	3,880	2,754	0.03	3.38	1.74
	EU	0.21	17,681	16,941	0.22	0.80	0.74
	중국	0.41	5,371	6,106	0.49	3.87	5.22
	최빈개도국	0.42	1,951	3,662	0.86	6.18	5.76
	기타선진국	0.11	7,013	7,273	0.13	1.90	2.36
	기타개도국	0.33	15,937	14,496	0.33	1.81	2.18
2-4	한국	0.59	2,651	3,260	0.79	2.13	3.53
	미국	0.01	532	-2,064	-0.02	1.56	0.76
	EU	0.03	2,188	2,771	0.04	0.29	0.20
	중국	0.24	3,125	3,508	0.28	3.14	4.36
	최빈개도국	0.19	875	2,591	0.61	4.57	4.34
	기타선진국	0.01	928	1,253	0.02	1.11	1.34
	기타개도국	0.05	2,376	1,334	0.03	0.87	1.09

패널 B: 자본축적분석

		GDP증가 수량(%)	동등변화 (백만불)	후생증가 (백만불)	민간소비 지출증가(%)	수출액 증가(%)	수입액 증가(%)
1-1	한국	2.44	11,015	9,337	2.27	5.27	6.30
	미국	0.03	2,762	3,193	0.04	3.27	2.12
	EU	0.36	30,635	27,526	0.36	0.97	0.95
	중국	1.18	15,458	13,313	1.08	4.95	6.51
	최빈개도국	1.30	5,978	6,536	1.54	8.53	7.27
	기타선진국	0.27	16,931	13,718	0.25	2.32	2.69
	기타개도국	0.75	36,215	29,250	0.67	2.59	2.87
1-2	한국	1.51	6,817	6,129	1.49	3.61	4.24
	미국	-0.03	-3,439	-4,483	-0.05	1.55	0.93
	EU	0.03	2,765	4,602	0.06	0.29	0.27
	중국	0.85	11,151	9,145	0.74	4.07	5.44
	최빈개도국	0.86	3,957	4,713	1.11	6.65	5.66
	기타선진국	0.07	4,292	3,532	0.06	1.35	1.55
	기타개도국	0.25	11,946	7,798	0.18	1.38	1.57
1-3	한국	2.26	10,227	8,677	2.11	4.60	5.51
	미국	0.04	3,790	4,077	0.04	3.14	2.05
	EU	0.36	30,446	26,296	0.34	0.92	0.91
	중국	1.12	14,714	12,786	1.03	4.51	5.88
	최빈개도국	1.10	5,058	5,957	1.41	7.18	6.09
	기타선진국	0.27	16,818	13,385	0.24	2.17	2.52
	기타개도국	0.70	33,564	28,091	0.64	2.27	2.49
1-4	한국	1.33	6,033	5,470	1.33	2.95	3.45
	미국	-0.02	-2,404	-3,593	-0.04	1.42	0.87
	EU	0.03	2,555	3,357	0.04	0.25	0.24
	중국	0.79	10,412	8,623	0.70	3.64	4.81
	최빈개도국	0.66	3,044	4,140	0.98	5.30	4.48
	기타선진국	0.07	4,177	3,196	0.06	1.20	1.39
	기타개도국	0.19	9,326	6,660	0.15	1.06	1.19

표 4-8. 패널 B: 자본축적분석 계속

		GDP증가 수량(%)	동등변화 (백만불)	후생증가 (백만불)	민간소비 지출증가(%)	수출액 증가(%)	수입액 증가(%)
2-1	한국	2.74	12,397	10,217	2.48	5.81	7.22
	미국	0.02	2,345	2,905	0.03	3.28	2.12
	EU	0.36	30,284	27,295	0.36	0.96	0.94
	중국	1.15	15,050	13,131	1.06	5.01	6.53
	최빈개도국	1.29	5,959	6,522	1.54	8.53	7.27
	기타선진국	0.27	16,784	13,740	0.25	2.32	2.69
	기타개도국	0.75	35,979	29,057	0.67	2.58	2.86
2-2	한국	1.81	8,175	6,999	1.70	4.15	5.15
	미국	-0.04	-3,852	-4,769	-0.05	1.56	0.93
	EU	0.03	2,418	4,373	0.06	0.29	0.27
	중국	0.82	10,749	8,966	0.73	4.13	5.45
	최빈개도국	0.86	3,937	4,700	1.11	6.64	5.66
	기타선진국	0.07	4,148	3,554	0.06	1.35	1.55
	기타개도국	0.24	11,712	7,606	0.17	1.37	1.56
2-3	한국	2.60	11,748	9,679	2.35	5.15	6.44
	미국	0.03	3,375	3,790	0.04	3.14	2.05
	EU	0.36	30,099	26,068	0.34	0.92	0.91
	중국	1.09	14,310	12,607	1.02	4.57	5.90
	최빈개도국	1.09	5,038	5,944	1.40	7.17	6.09
	기타선진국	0.27	16,675	13,410	0.24	2.17	2.52
	기타개도국	0.69	33,332	27,900	0.64	2.26	2.49
2-4	한국	1.67	7,527	6,460	1.57	3.50	4.38
	미국	-0.03	-2,815	-3,877	-0.04	1.42	0.87
	EU	0.03	2,212	3,132	0.04	0.25	0.23
	중국	0.76	10,013	8,447	0.68	3.70	4.83
	최빈개도국	0.66	3,024	4,127	0.97	5.29	4.48
	기타선진국	0.07	4,036	3,222	0.06	1.20	1.39
	기타개도국	0.19	9,095	6,471	0.15	1.05	1.19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DDA 농업협상의 타결 결과 농업부문에 미치는 품목별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생산 흐름을 전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모형을 설정하였다.

가. 농업부문모형⁵³⁾

개별 품목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품목별 수급방정식을 설정하였다. 토지를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경종작물의 경우 공급측면의 생산은 재배면적과 단수를 추정한 후 재배면적에 단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재배면적함수는 전기의 재배면적과 전기 해당품목의 농가판매가격과 전기 투입 재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단수함수의 추정은 전기의 단수 또는 추세변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재고방정식을 추정하였는데, 재고는 전기 재고와 전기의 소비자가격과 농가판매가격의 차이, 그리고 이자율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수요측면에서 먼저 1인당 소비함수를 자체가격과 대체재가격, 1인당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추정하고,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총소비량을 계산하였다. 기타 가공용소비와 감모 등이 있을 경우 전체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입이 없을 경우 수급 균형 일치식으로부터 금기의 소비자가격이 도출되고 이로부터 금기의 농가판매가격이 유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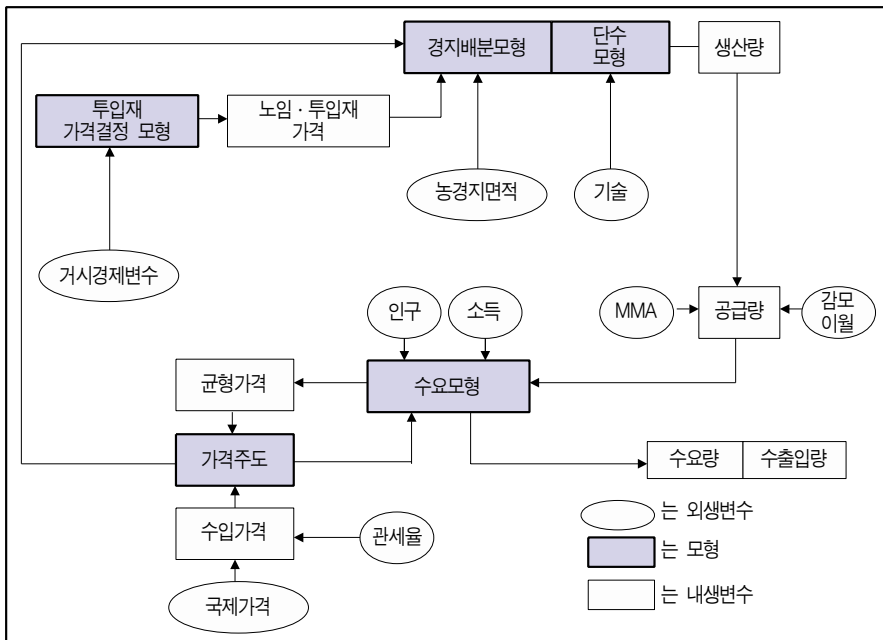
수출입을 고려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농산물의 국제시장가격과 우리나라의 수

53) 본 모형의 설계를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의 「농업전망시물레이션모형, KREI-ASMO」와 한두봉외(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를 참고했다.

입관세를 이용하여 예상 수입가격을 계산하고, 이를 수출입이 없었을 경우 농가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수입여부가 결정되는 가격주도방식으로 모형이 설정되어 있다. 이때 세계시장가격은 실제 우리나라의 적절한 수입이 있을 경우 실제 수입가격을 이용하였으며, 수입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물량이 적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식량농업기구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세계시장가격을 추산한 후 이러한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해당 품목의 생산액은 생산량에다 농가판매가격을 곱해 계산한 후 실제 농림통계연보에서 제시한 통계와의 일치를 위해 조정하였다. 해당 품목의 소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은 먼저 단위 면적당 비용을 구한 후 재배면적을 곱해 총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중장기 전망을 위한 외생변수로서

그림 4-1. 농업부문 전망모형의 기본 틀



GDP 성장률과 환율 등은 향후 일정한 것으로 가정했으며, 전체 재배면적은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축산모형은 축종별로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관련 수급모형에 대한 설명은 부록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나. 대상 품목

분석 대상품목은 수급 및 가격자료로 계량적 추정이 용이한 총 6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곡물에서는 쌀,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을 포함), 두류(콩, 팥, 포함), 기타 곡물(옥수수, 고구마, 감자) 4개 품목(군)이 있다. 채소류는 크게 시설채소와 노지채소로 구분하였고, 노지채소는 다시 하계노지채소와 동계노지채소로 구분하여 하계노지채소에는 고추, 배추, 무, 기타 하계채소의 4개 품목(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계노지채소에는 마늘, 양파, 기타 동계채소의 3개 품목(군)이 있다.

과일류는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기타 과일의 7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축산물로는 쇠고기, 낙농, 돼지고기, 닭고기, 산란계, 기타 축산의 6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특용작물과 기타 농산물로 구분하였다.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1) 기준 전망치

먼저 향후 시장개방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기 위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기준 전망치는 현 수준의 관세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2004년 양허관세 및 TRQ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다만 쌀은 2004년 쌀협상 결과를 감안하여 2015년부터 관세화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쌀의 2004년 양허관세를 10년간 15% 감축하되 TRQ는 미증량하는 것으로 쌀의 시장개방 폭을 설정하였다.

한편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는 2015년에 모두 해제된다고 설정하였다. 동식물 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은 과일류의 시장개방 효과계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관세수준 아래서도 식물검역이 없다면 상당한 양의 과일이 수입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 DDA에 따른 개방

비록 DDA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2007년 초에 한미 FTA가 타결되고 2008년에 이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10년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 중에 DDA 농업협상도 함께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미 FTA에 의한 과급영향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과급영향과 중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DDA에 의한 영향만을 위해 DDA에 따른 시장개방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먼저 모든 농산물의 관세는 2010년부터 10년간 25~40% 감축(G20 제안에 기초하여 2004년 양허관세에 수준에 따라 25~40%로 설정)되는 것으로 설정했으며, TRQ 증량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단 쌀은 기준 시나리오에서와 동일하게 2014년까지 관세화유예가 지속되며, 2015년부터는 관세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한편 동식물 검역은 기준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015년 해제를 가정했다. 이와 같은 DDA 시장개방 시나리오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⁵⁴⁾

54) 농업이 선진국으로 대우받는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았다.

라. 파급 영향

1) 농업생산액의 변화: 농업전체

현 수준의 관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2005년 35조 1천억 원에서 2010년 32조 9천억 원, 2015년 31조 7천억 원, 2020년에는 31조 2천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DDA 협상결과를 2010년부터 이행하는 DDA 개방 시나리오 아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2005년 35조 1천억 원에서 2010년 32조 8천억 원, 2015년 31조 1천억 원, 2020년에는 30조 3천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DDA 농업협상에 따른 농업 생산액의 차이는 2010년 880억 원에서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2015년 5,730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후 2020년이 되면 약 9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4-9. 시나리오별 농업생산액의 변화

(단위: 억 원)

	기준 전망치 (A)	DDA 개방 시나리오(B)	차이(A-B)
2005	350,889		-
2010	328,546	327,666	880
2015	316,922	311,192	5,730
2020	311,812	302,829	8,983

2) 농업생산액의 변화: 품목별

가) 곡물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곡물생산액은 두류와 기타 곡물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소

비수요 감소로 2005년 9조 7천억 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6조 9천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쌀 생산액이 가격 하락과 재배면적 감소로 2005년 8조 5천억에서 2020년 5조 6천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곡물생산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DA 시나리오 아래서 곡물은 전반적으로 생산 감소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가격하락 폭도 작아 오히려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쌀의 시장개방 폭이 과일과 채소류에 비해 작고, 동시에 사료곡물의 양허관세가 매우 높지만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는 매우 낮은 시장접근세율 또는 할당 관세가 적용되어 실제 관세 감축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쌀은 관세화유에 지속 및 최소 관세감축에 따라 오히려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생산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DDA 농업협상이 곡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천 2백억 원의 생산액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는 대부분 쌀 생산액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표 4-10. 시나리오별 곡물 생산액의 변화

(단위: 억 원)

		쌀	보리	두류	기타곡물	계
기준 전망치	2005	85,368	2,498	5,258	4,259	97,383
	2010	77,036	2,086	5,325	4,293	88,740
	2015	66,531	1,878	5,857	4,741	79,006
	2020	56,121	1,645	6,311	5,165	69,243
DDA 시장개방	2005	85,368	2,498	5,258	4,259	97,383
	2010	76,756	2,074	5,284	4,294	88,408
	2015	66,569	1,867	5,752	4,731	78,920
	2020	57,696	1,639	6,130	4,988	70,452

나) 채소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채소 생산액은 2005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다가 개방이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채소생산액은 2005년 6조 9천억에서 2010년 6조 6천억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세로 바뀌어 2020년에는 7조 1천억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지채소 가운데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고추와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체품목의 관세가 매우 낮은 마늘은 생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양파는 생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시설채소생산도 정체 내지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11. 시나리오별 채소 생산액의 변화

(단위: 억 원)

		노지 채소					시설채소	채소계
		기타노지	고추	마늘	양파	소계		
기준 전망치	2005	17,529	8,606	5,352	2,148	33,636	35,549	69,186
	2010	17,306	7,434	3,960	2,714	31,413	34,578	65,991
	2015	18,477	7,539	3,816	3,339	33,172	34,990	68,162
	2020	19,253	7,621	3,754	3,962	34,591	36,121	70,712
DDA 시장개방	2005	17,529	8,606	5,352	2,148	33,636	35,549	69,186
	2010	17,239	7,215	3,835	2,714	31,003	34,581	65,584
	2015	18,025	5,877	2,857	3,061	29,820	35,094	64,913
	2020	18,805	4,878	2,163	3,245	29,091	36,408	65,499

반면 DDA 개방 시나리오 아래서 채소는 고추, 마늘 등 고율관세 양념 채소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에 따라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채소 전체 생산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관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40% 감축될 고추와 마늘은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생산액 감소가 약 2천 7백억원, 1천 6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2020년 기준) 채소 생산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시장개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시설채소의 경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DDA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이 채소부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을 기준으로 5천 2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러한 생산감소는 주로 노지채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과일

과일은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생산이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5년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감소추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과일 생산액은 2005년 3조 8백억 원에서 2013년 3조 4천억 원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3조 1천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사과 생산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배와 포도는 정제 내지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귤은 정제 내지 완전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DDA 개방 시나리오 아래서도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이 유지되는 2015년까지는 과일 생산은 큰 변동 없이 완만히 감소하다가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 제한이 해제되는 201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일류의 경우 관세보다는 식물 검역에 의한 영향이 실제 국경보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DDA 시장개방 시나리오 아래서 생산액 감소가 큰 품목은 관세가 높은 감귤과 포도로 나타났는데, 포도는 감귤과 달리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다가 DDA 시장개방을 맞아 생산이 감소세로 바뀌는 바람에 생산액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DDA 시장개방이 과일부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을 기준으로 4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4-12. 시나리오별 과일 생산액의 변화

(단위: 억 원)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과일	계
기준 전망치	2005	4,671	3,387	4,962	8,108	1,996	1,474	30,817
	2010	4,040	3,023	6,129	6,997	2,061	1,507	31,560
	2015	3,558	3,295	6,154	6,914	1,973	1,534	32,155
	2020	3,433	3,155	6,090	5,798	1,823	1,484	31,112
DDA 시장개방	2005	4,671	3,387	4,962	8,108	1,996	1,474	30,817
	2010	4,040	3,023	6,072	6,997	2,062	1,505	31,502
	2015	3,364	3,115	5,589	6,087	1,866	1,439	30,185
	2020	3,020	2,779	4,824	4,148	1,582	1,283	26,977

라) 축산물 및 낙농

기준 시나리오 아래서 한육우 생산액은 광우병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이 풀리면서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2005년 3조 2천억에서 2020년 2조 6천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양돈과 낙농, 양계는 대체적으로 정책 내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축산 및 낙농 전체의 생산액은 2005년 11조 8천억 원에서 2020년 10조 9천억 원까지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DDA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물 및 낙농부문의 생산 감소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축산물의 양허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기(18~40%) 때문에 DDA 이행에 따른 관세 감축폭이 20~25%에 그쳐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육우의 경우 이미 기준 시나리오에서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생산액 감소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DDA로 인한 추가적인 생산액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DDA 시장개방으로 인한 축산 및 낙농부문의 생산액 감소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4-13. 시나리오별 축산 및 낙농 생산액의 변화

(단위: 억 원)

구 분	년도	축산					낙농	총계
		한우	돼지	닭	기타 축산	소계		
기준 전망치	2005	31,479	37,586	21,985	10,791	101,841	15,831	117,672
	2010	28,976	34,386	19,880	9,875	93,118	14,679	107,797
	2015	24,776	33,928	21,323	9,630	89,657	14,721	104,378
	2020	25,719	34,897	22,873	10,059	93,548	15,180	108,728
DDA 시장개방	2005	31,479	37,586	21,985	10,791	101,841	15,831	117,672
	2010	28,960	34,343	19,871	9,868	93,042	14,670	107,712
	2015	24,655	33,733	21,285	9,590	89,264	14,655	103,919
	2020	25,416	34,606	22,828	9,986	92,836	15,048	107,885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DDA는 미국, EU, 인도와 브라질 등 소위 핵심 4대 국가의 농업보조금 감축, 농산물 관세감축 및 비농산물 관세감축 등 3각 쟁점에 대한 물고 물리는 이해관계 상충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들 국가의 이해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DDA 전체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미 사무총장과 개별 협상그룹 의장은 DDA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DDA 중단 이후 두 방향에서 물밑 접촉을 진행해 왔다. 하나는 제네바 차원에서 개별 협상그룹 의장 중심의 비공식 접촉이고, 다른 하나는 라미 사무총장이 직접 주요국 정상 및 협상대표를 접촉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확인하며 절충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에 기초해 볼 때 라미 총장의 DDA 정상화 제안은 DDA의 재개(resumption)로 해석하기 보다는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⁵⁵⁾

비록 라미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요국을 방문하며 비공식 논의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DDA 재개를 선언한다고 해서 곧 바로 전 분야 걸쳐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중단된 DDA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2006년을 보내는 상황도 WTO를

55) 라미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15일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직후 제네바로 돌아와 16일 임시 TNC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DDA의 정상화”를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라미 사무총장과 개별 협상그룹의장들이 비공식, 개별적으로 접촉해 온 결과를 다자화(multilateralizing) 하는데 광범위한 지지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라미 사무총장의 발언중에는 DDA의 재개라는 표현은 없었다. 이를 고도의 외교적 수사로 보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DDA의 재개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라미 사무총장은 먼저 정상화 발언을 통해 DDA 재개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12월중에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가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 재개를 이끌어내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은 공식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라미 사무총장의 이번 DDA 정상화 제안을 2006년 7월 DDA 중단선언 이후 WTO차원에서 아무런 공식 언급 없이 2006년을 보낼 경우 DDA의 무산 가능성과 함께 WTO자체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WTO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계산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라미 사무총장의 주요국 접촉 결과와 주요 그룹의장들의 비공식 활동을 통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전 정지라는 해석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DDA 타결의 핵심인 농업협상은 비록 비공식 차원이지만 2006년 9월부터 제네바 차원의 기술적 쟁점협의가 계속 되어왔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DDA를 전망하는 것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다. 낙관적 전망은 2007년말에 DDA가 종결되는 것이고, 비관적 전망은 2007년 프랑스 대선 이후 DDA가 본궤도에 진입하여 2008년이나 2009년말 DDA가 타결되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두 전망 모두 가능성이 있다.

가. 낙관적 전망

DDA의 낙관적 전망에 따르면 2007년 2월에 DDA가 공식 재개되고(이를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11월 중순 DDA 정상화를 제안했다고 해석), 특히 2007년 1월중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DDA 전분야 협상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후 2007년 3월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원칙을 합의·도출함으로써 2007년 연말까지 DDA를 종료시킨다는 전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 여부이다. 미국의 TPA 종료가 2007년 6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연장 없이는 설령 DDA가 2007년에 타결된다고 미국이 DDA 결과를 이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TPA의 연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2007년 3월말까지 DDA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며, 그것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한 1차 관문은 2007년 3월까지 DDA의 세부원칙 도출 여부가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주요국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상황아래서 불과 3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DDA의 세부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난 4개월 동안 라미 사무총장이 주요국의 정상 및 통상장관을 접촉한 결과와 최근 제네바에서의 주요 협상그룹 의장의 비공식 활동을 종합해 볼 때, DDA가 계속 부진할 경우 라미 사무총장 자신이 2007년 2~3월에 직접 세부원칙 초안을 작성해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주요국 각료들에 의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다면 2007년 3월말 DDA 세부원칙 도출도 가능하다.⁵⁶⁾

사실 2007년 3월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 여부는 라미 사무총장의 (세부원칙)초안 제시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일 것이다. 라미 초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주요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세부원칙 도출은 어려울 것이고, 지난 2003

56) 지난 UR에서도 비록 미국과 EU간의 블레이하우스 합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던켈 사무총장의 초안이 최종 합의안이 되었다.

년 3월의 하빈슨 초안 처럼 물거품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세부 원칙은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할 만한 최소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타협안을 EU와 G20의 인도와 브라질이 그리고 G10의 일본과 스위스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의 삼각 쟁점에 대하여 미국과 EU, 그리고 G20간의 타협의 발판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타협안이 합의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각자가 기존 자신의 입장에서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즉 DDA를 다시 위기로 몰고 가 WTO 다자무역협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기대수준을 낮추어 이번 DDA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타협안 마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만일 주요국 각료들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2007년 3월말 세부원칙이 도출된다면 또는 완벽한 형태의 세부원칙이 아니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안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곧바로 2007년 말 DDA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록 국별이행 계획서 제출과 검증에 짧은 시간이 남게 되지만 과거 UR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말 DDA 종결선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비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은 현재까지 진행된 DDA의 경험과 속도를 감안할 때 잔여 핵심 쟁점이 많이 남아 있고, 동시에 이러한 핵심 쟁점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가 3개월의 협상만으로 좁혀져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 2~3월경 라미 사무총장에 의한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주요국이 DDA 결과에 대한 기대수준(level of ambition)을 낮추지 않는 이상 절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전망이다. 결국 2007년 3월말 세부원칙 도출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따라 DDA는 최소한 2~3년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DDA의 경과를 감안하면 앞의 낙관적인 전망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11월 DDA 정상화 발언 이후에 협상 재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2007년 상반기에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이 있어 EU의 입장 변화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며, 지난 칸쿤 각료회의 이후 개도국들의 협상력이 커진 가운데 G20과 G33의 의사결정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이 갖는 최대의 약점은 실제 DDA 타결이 2~3년 미루어질 경우 DDA의 좌초는 물론 WTO의 다자무역협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WTO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WTO 중심의 다자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반대 급부로 FTA 등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WTO를 창설한 주요국들이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DDA를 2~3년 지연시킬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추세를 고려할 때 DDA의 다자무역협상이 FTA에 버금갈 정도로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향후 WTO 다자무역협상과 FTA간의 괴리가 커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무역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하다.

결국 현 단계에서는 낙관적, 비관적 전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낙관적·비관적 전망에 관계없이 2007년 3월이 향후 DDA의 2007년 종결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 특히 2007년 3월

에는 라미 초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으며, 그에 따른 주요국의 정치적 이해 절충 및 타협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자의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여 보다 정교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CGE분석에 의하면 DDA 상품시장 개방으로 한국 및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및 기타 개도국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DDA 타결로 인해 상당 수준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 EU, 기타 선진국은 함께 공조하며 상품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하는 전략을 추진할 유인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에서 EU에 양보하며, 개도국의 제조업 개방 확대 쟁점에서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기타 개도국의 입장은 제조업 개방 확대 쟁점에서 다소 차별적이거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조를 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최빈개도국과도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농산물 수출에 경쟁력이 있는 G20 국가)과 최빈개도국은 개도국 비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이는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G20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면서 EU와 합의할 수 있다면 DDA의 2007년 종결도 가능성이 크다. 즉, 농산물 시장 확대(G20의 입장을 반영)에서 EU의 동의를 구하면서, 서비스 포함 전산업 개방 확대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이에 반발하는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무쿼터 등 S&D 제공으로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CGE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최빈개도국에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전략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혜여는 최빈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무역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선진국 및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교역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개도국 조건으로 개방할 경우 GDP, 후생 등 거시경제지표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소폭 감소하지만 농업을 선진국 조건으로 개방하는 경우에 비해 경제 전체의 산출액 증가폭이 크고,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대폭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개도국 조건 농업개방의 경우(정태분석) 한국 농산물 산출액 감소(피해규모)규모가 28억 8천만 달러(시나리오 1-1)~32억 9천만 달러(시나리오 1-4)이지만, 선진국 조건 농업개방의 경우(정태분석)에는 산출액 감소규모는 64억 9천만 달러(시나리오 2-1)~68억 5천만 달러(시나리오 2-4)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를 줄이고 다른 한편 경제 전체의 산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NAMA에서 개도국의 관세감축을 작게할 경우(개도국의 계수 증가) DDA 개방으로 얻는 우리의 이익이 소폭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도국 제조업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선진국과 공조하는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CGE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방이 없을 경우 DDA에서 얻을 수 있는 거시경제 이익의 크기가 다른 4가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공조하여 DDA를 통한 전세계적인 서비스 개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1) 농업

DDA 농업협상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폭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해서는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관세 감축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관세 감축률이 전체 관세 감축률 결정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상위 구간의 관세감축률은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의 대우를 결정하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민감품목의 TRQ증량은 일반 관세감축공식에서 벗어난 정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상위 관세구간의 감축률이 결정되면, 관세감축에 있어서 민감품목의 혜택 정도가 결정되고, TRQ증량은 이 혜택 폭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은 최상위 관세구간의 관세 감축률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을 감안할 때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관세 감축률을 우리나라의 힘으로 낮추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⁵⁷⁾ 따라서 협상에서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관세 감축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되, 동시에 그러한 협상전략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최상위 관세구간에 포함될 핵심 품목만이라도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 보다는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그리고 개도국 특별품목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구조가 쌀 등 소수 몇 개의 품목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율관세 품목 모두의 관세감축 폭을 줄이기보다는 핵심 품목의 관세감축 폭을 줄이는 것이 농업부문의 피해를 줄이는

5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들의 제안에 따를 때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관세 감축률은 이미 최소 60% 이상이다.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 등 G-10 이를 낮추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데 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실현 가능성도 높다.

가) 시장접근분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구간의 경계 설정과는 큰 이해관계가 없다. 즉 우리나라의 핵심 고율관세 품목은 앞으로의 경계설정 논의에 관계없이 최상위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관세구간의 경계 설정 자체에 협상력을 모은다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요 과일류와 채소류, 축산물 등의 양허관세가 45%이하이기 때문에 45% 관세가 최소한 차하위 관세구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는 대개 30%나 40%와 같이 일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는 품목이 많다. 따라서 관세구간의 시작점이 30%나 40%가 아닌 31%나 41%로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관세구간이 '0~30%이하'로 설정되는 것과 '0~30%미만'으로 설정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 관세가 30%인 품목이 최하위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차하위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적용 감축률이 커진다. 이렇게 구간경계의 한계(marginal)에 있는 품목은 간단한 기술적인 논의결과에 따라 한 등급 낮은 관세구간에 포함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⁵⁸⁾

감축공식은 이미 단순선형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감축방식 보다는 감축률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축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협상의 대세이기 때문에 감축률을 낮추는 노력은 하지만, 관세 감축률보다는 민감품목 활용이 우선이라는 전제 아래서 감축률에 대한 신축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58) 참고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양허관세가 20%인 세번은 HS 10단위로 17개며, 30%로 끝나는 세번은 54개 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민감품목 문제는 개수 보다는 대우가 보다 중요하다. 또한 민감품목의 수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그 대우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전략은 적절한 수의 민감품목을 제시하면서 대우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민감품목의 수는 대략 전체 세번의 4%선에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개도국의 민감품목의 수는 이 보다 많은 5~6% 안팎, 그리고 개도국 특별품목까지 추가해 생각하면, 개도국의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총수는 전체 세번의 7~8%선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이라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고율관세 핵심품목과 기타 중요 품목을 대부분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민감품목의 개수는 협상 동향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의 대우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민감품목의 대우와 관련하여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일반 품목의 1/2 수준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⁵⁹⁾ 따라서 민감품목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사실상 TRQ 증량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TRQ기준 증량의 입장으로 견지하되 최근 소비량기준으로 타결될 경우에도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상한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쌀의 중도 관세화를 고려하여 관세감축 보다는 TRQ 증량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⁶⁰⁾

59) 미국제안을 따르더라도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일반품목의 관세감축의 1/2 수준이다.

60)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일반품목의 관세감축 폭 보다 작을 것이고, 특히 개도국 특별품목은 개도국 민감품목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도국 특별품목의 경우 최대 20%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감품목과 마찬가지로 TRQ 확대 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하다.

한편 SSM과 관련해서는 기존 SSG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을 이번 개도국 특별 수입구제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특별수입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발동조건이나 구제조치 내용보다는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관세화를 하지 않아 수입급증이 되어도 기존 SSG를 적용하지 못했던 품목에 대하여 새로운 SSM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SSM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발동기준이나 사후 구제조치의 내용에서는 적절한 양보를 하고, 대신 대상범위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나) 국내보조분야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EU와 일본, 미국을 제외하고 AMS를 지급하고 있는 모든 국가(선진국과 개도국에 관계없이)가 최하위 구간에 속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번 DDA에서 가장 중요한 개도국 우대정신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개도국 우대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하위 구간에 적용될 감축률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여 개도국에게는 보다 낮은 감축률을 확보하는 중요하다.

다른 한편 AMS 감축률 축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쌀의 생산액이 10조에 이르므로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이 7.5%가 되면 매년 7,500억 원까지는 비록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축률이 개도국에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최소허용보조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최소허용보조 기준 인하는 개도국들의 원활한 농정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AMS를 사용하지 않는 개도국에게는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이 이미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AM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체적인 개도국 우대의 정신에서 감축률에 큰 차이를 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블루박스는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로,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장 약점인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상 동향을 보아가며 전략적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CCP의 추가 규제 여부가 문제의 핵심으로 실질적으로는 신규 블루박스정책 도입에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이의 기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박스전환을 통한 국내보조를 막으려는 EU 및 수출개도국(그리고 케언즈 그룹)과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협상 흐름을 보아가며, EU나 G33를 이용하여 미국을 입장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2)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는 스위스공식 적용에는 합의하였으나, 계수(coefficient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공식에 적용될 계수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감축과 함께 기본골격 8항의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여부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이다.

한국은 개도국 제조업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이중계수 스위스 공식을 지지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계수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선진국-개도국간 계수의 차이를 인정하는 대가로, 8항(개도국 신축성)을 폐기 또는 엄격히 하도록 선진국((a)만을 인정하고 10%보다는 작은 관세품목에 대하여 공식적용 미만의 감축률을 적용)과의 공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CGE 분석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계수차이가 작을수록 우리 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경우 농업부문의 피해도 줄어들었

다. 따라서 한국은 NAMA 협상에서 최대한 선·개도국간 계수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관세감축공식에 따른 세율의 부분 감축보다는 부문별 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자유화 논의에서는 임계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그룹의 찬성만 있으면, 그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공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분야를 설정하여 부문별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관세장벽의 제거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비관세장벽의 제거이다. 각국이 행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상품수출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번 협상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행정적인 면에서도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문별 자유화가 병행될 경우, 한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NAMA 계수협상과 함께 부문별 자유화의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DDA의 개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DDA타결이 실패할 경우를 가정하여,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하여 성장의 동력을 무역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국제무역이 한국경제의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DDA의 대안으로 한국은 이미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와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ASEAN과는 상품분야 협상을 끝내고 현재 서비스분과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거대 경제권중 하나인 미국과는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하여 12월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떤 FTA를 추진하느냐 또한 간

과할 수 없다. 단기간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한 FTA보다는 장기적인 전망 하에 FTA를 추진할 국가를 선정하고 체결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3) 서비스

UR 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최초로 제정하는 작업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허협상을 통해 서비스시장개방의 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시 개방수준 또는 그 이하를 양허하였으며, 평균 양허분야도 개도국의 경우 30%, 선진국은 65% 수준에 그쳤다.⁶¹⁾

표 5-1. 개발단계별 평균 양허 현황(2004년 3월 현재)

국가	평균 양허 분야	국가별 양허 분야의 범위
최빈국	20개 분야	1-110개 분야
개도국	54개 분야	1-154개 분야
선진국	108개 분야	87-117개 분야
신규가입국	106개 분야	37-154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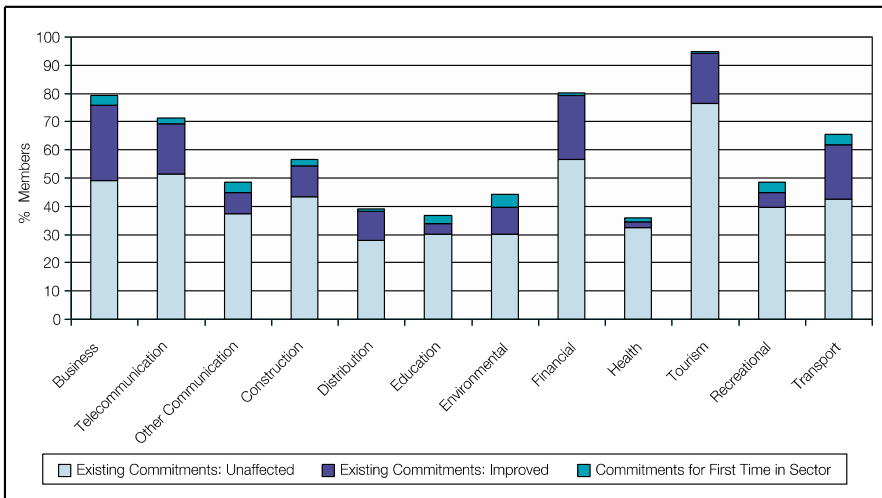
자료: 김준동(2006)에서 재인용.

한편, 2003년 3월 이후 2005년 초까지 제출된 1차 양허안을 평가해 보면, 20개국 이상이 신규 양허 또는 개선을 한 분야는 사업, 통신, 금융, 해운, 관광 등이며, 대부분 분야에서는 10-20개국만이 신규양허 또는 개선을 하였다. 이를 기존 양허와 합하여 보면, 관광, 금융, 사업, 통신 분야는 80% 이상의 회원국들이 양허하였

61) 주요국별 UR양허표상 양허업종 수는 미국 107개, EU 110개, 일본 105개, 캐나다 95개, 우리나라 78개, 태국 55개 등이다. 한편, 2005년 수정 양허안 제출에 따라 우리나라는 104개, 미국은 110개, EU는 150여개 정도를 포함하게 되었다.

고, 시청각, 유통, 교육, 보건 의료는 50%미만의 회원국들이 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성장에 있어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DDA 서비스 협상을 통한 양허확대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1. 기존 양허 관련 개선된 분야(2005년 초 현재)



자료: 김준동(2006)에서 재인용.

무엇보다도 GATT의 관세에 비해 GATS의 무역장벽(규제)은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여러 부처 및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개방 확대는 GATT상 관세인하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번거로운 국내절차(more time-consuming and resource-intensive domestic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 이는 각국이 GATS상 협상을 통해 새로운 개방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더욱이, GATS는 GATT와 달리 4개의 교역형태(mode)를 상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유화 방식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mode간 자유화/양허의 수준

및 협상의 진전 현황에 대한 평가도 곤란하여, Request/Offer협상에 의해 상호 양허의 확대를 “주고받기(trade-off)”가 어렵다는 문제도 작용한다.

특히, GATT는 수량제한(quota)을 관세보다 더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인정하여 무역제한 조치들간에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GATS에서는 사업자수의 제한이나 경제적수요심사(ENT) 등의 시장접근 제한과 내국민대우 제한조치간에 우선순위가 없어 협상이 복잡해지고, 이는 R/O 협상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농업협상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서비스협상에서도 자국 민감 분야(해운, 시청각, mode 4 등)에 대해 개방요구를 강하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9.11 이후 기존 국내 이민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Mode 4의 양허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프랑스 및 캐나다 등은 UNESCO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며 시청각서비스 협상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⁶²⁾

한편, 인도 및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Mode 4 양허수준이 개도국에 대해 새로운 사업기회(new business opportunity)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협상 부진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GATS 관련 분쟁(미-멕시코 통신분쟁, 미-안티구아바루다 gambling 분쟁)의 결과는 다수국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양허를 확대하기를 주저하게끔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서비스협상의 진전 속도가 지속된다면, 농업 및 NAMA에 비해 서비스협상의 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고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양허도 이미 제출한 2차

62) 시청각서비스는 UR 당시에도 특별 부속서나 일반적인 문화적 예외를 도입하여 문화적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Croome 1999, p. 212).

양허안을 기본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 통신, 환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관심사항과 개도국 관심분야인 Mode 4의 양허 확대에 대한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사정상 법규를 개정하면서 신규로 개방하는데 대해서는 선·개도국 모두 부담을 표명하고 있으나, 현재 각국의 실제 개방수준과 양허수준 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격차가 있는 분야 중 국내적으로 상대적 민감도가 덜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허 확대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복수적 R/O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국간의 양자협상을 통해 양허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UR협상 이후 기설정의제로 진행되어온 GATS 제6.4조(국내규제), 제10조(긴급세이프가드조치), 제13조(정부조달), 제15조(보조금)의 규범제정과 관련하여, 국내규제 규범에 대해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업, NAMA, 개발 등 여타분야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개도국들의 전략에 대응하여, 각 분야간 trade-off에 관한 논의도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일단 진전이 예상되는 국내규제 규범에 집중을 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규제 투명성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1) 회계규범상 투명성 조항의 수평적 적용여부, 2) 투명성 증대에 따르는 비용 및 효과 분석, 3) 회계규범에 따른 사전의견 조치가 각국의 정당한 규제권한 침해여부, 4) Mode 4 및 전문직 서비스 양허를 위한 투명성 규범의 필요성, 5) 각국 개발정도에 따른 투명성 의무의 차별적 부여 여부 등이 있다.

국내규제 인가절차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1) 적용범위를 일본제안 서처럼 기양허한 분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 2) 투명성과 관련하여 인가절차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을 일본제안서처럼 문의가 있을 때 공개할지 또는 EU제안서처럼 webpage 등을 통해 공개해야 되는지 여부(이런 경우 언어의 문제), 3) 논의가 진행되는 요소는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이다.

국내규제 자격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1) 적용범위를 일본제안서처럼 기양허한 분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 2) 칠레 등 제안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경력, 시험요건의 동등성 등에 기초하여 여타국가에서 획득한 자격의 인정 및 검증 메카니즘 설립을 의무화할지 여부, 3) 칠레 등 room document에 나와 있는 대로 MRA에 개도국 참여를 수월하게 하는 조치를 고려하는 여부 등이 있다.

국내규제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1) 기술표준규범을 강제 규정 혹은 자발적 규정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표준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기술표준규범을 수평적 규범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규범제정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이 있다.

4) 규범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규범 협상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DDA 협상이 재개되면 규범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시작되는 등 급속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휴지 상태에 있을 때 대내적으로는 분야별로 쟁점 사항과 입장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협상의 경우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제안 대부분이 미국의 현행 반덤핑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협상의 향방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어떠한 타결점에 도달한다면 그 결과는 이후 DDA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반덤핑 조치 피소국 측면에서 반덤핑 협상에 참여해왔는데, 개도국의 급부상에 따른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당국이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반보조금 협상은 현행 협정의 모호한 규정을 명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조금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준이 설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함과 동시에 특정성 소지가 있는 국내 보조금 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보조금 규율 강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피쉬 프렌즈 그룹에 맞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와의 협의 체제가 특히 필요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수산보조금 금지 방식을 두고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 공조함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공조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수산보조금 별도 규율 마련 반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공조했던 일본이 종전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규율 마련에 합의한 적이 있다.

지역무역협정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다자체제 질서를 훼손하는 지역주의 남발에 대항하여 MFN 프렌즈 그룹을 결성하는 등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WTO Plus 원칙에 입각하여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에 따라 기존 입장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역무역협정 협상은 이미 진전이 많이 이루어져 절차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완성되었고 앞으로는 구조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적 사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와 입장 정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문성. 2004. 『DDA협상분야별 쟁점 및 평가와 우리의 통상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5. 『WTO/DDA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민관합동포럼: DDA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홍콩 각료회의를 준비하며.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문성·나수엽. 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문성·박순찬·이창수. 2003.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동엽. 2005.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민관합동포럼: DDA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홍콩 각료회의를 준비하며.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2006.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06-2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6.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도출 실패와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06-1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5. 『DDA 농업협상의 최근 논의동향과 전망』. 민관합동포럼: DDA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홍콩 각료회의를 준비하며.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영관. 2005. 「DDA 서비스 국내규제와 GATS규범 논의동향과 주요 쟁점」. 민관합동포럼: DDA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홍콩 각료회의를 준비하며.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수·박지현. 2004. 「DDA 농업협상 초안 평가 및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제04-17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재정경제부. 2003. 『WTO DDA 중간점검: 도하에서 칸쿤까지 분야별 논의결과』. 서울: 재정경제부.
- 정재호·성명재·이명현. 2003. 『관세를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책보고서 03-30. 한국조세연구원.
- 천준호. 2005. 『DDA 서비스 협상동향』. 민관합동포럼: DDA협상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홍콩 각료회의를 준비하며.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박순찬. 2002.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

- 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2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 외. 2003. 『DDA 중간점검 - 200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행. 2003. 투입산출표.
- 외교통상부. 『DDA 협상동향』. 각 연도.

[영문자료]

- APEC. 2005. "APEC MRT Statement on the DDA Negotiations." 2005/MRT/005.
- Kang, Moonsung. 2004. "Evaluation on the Process of the DDA Negotiations." Paper presented at a Seminar of Invited Ambassadors of Major Countries to Geneva: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DDA Negotiations,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oul.
- Kang, Moonsung. 2005. "Formulas for Industrial Tariff Redu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UN ESCAP Policy Brief No. 5.
- OECD. 2003.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aris: OECD.
- WTO. 2004.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Geneva: WTO.
- ICTSD. 2004. "Developments since the Cancun Ministerial Conference." Doha Round Briefing Series, Vol. 3, No. 7.
- WTO. 2003. "Compilation of Issues and Proposals Identified by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TN/RL/W/143.
- WTO. 2005a. "Hong Kong WTO Ministerial 2005: Briefing Notes. Rules: Regional Agreements.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5_e/brief_e/brief09_e.htm. (Nov 2006).
- WTO. 2005b. "Senior Officials' Statement." TN/RL/W/171.
- WTO Summary Report(TN/RL/M/*).

부록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EU는 2005년 3월 단일계수 스위스공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도국에게는 추가로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의 공식을 제안하였다.

$$(1) \text{ 선진국 : } t_1 = \frac{A \times t_0}{A + t_0}$$

$$\text{개도국 : } t_1 = \frac{(A + C) \times t_0}{(A + C) + t_0}$$

식 (1)와 같은 EU제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도국에 선택에 따라 크레딧(C)을 공식에 부여한다는 점이다. EU제안에 따르면, 개도국은 두 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개도국이 단일계수를 수용할 경우에는 신축성 조항인 8항을 인정해 주며, 둘째, 양허비율 확대(100%양허, 99%양허), 와 8항 포기 등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대가로 개도국에게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조정계수뿐만 아니라 크레딧 범위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제시된 방식에 비하여 협상의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노르웨이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공식을 제안한 바 있다.

$$(2) \text{ 선진국 : } t_1 = \frac{A \times t_0}{C + t_0}$$

$$\text{개도국 : } t_1 = \frac{A^* \times t_0}{C + t_0}$$

노르웨이가 제시한 공식은 기존에 제안된 방식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다. 이 방식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다른 조정계수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선

진국에게까지 크레딧 또한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개도국간의 협상에 결정해야 할 수치가 3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에게도 크레딧을 부여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3국은 원형 스위스공식에 기반을 두며 개도국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공식방법을 제안하였다.

$$(3) t_1 = \frac{A \times t_0}{A + t_0}$$

조정계수 A의 값은 [부표 1]의 옵션에 따라 β_1 , β_2 , β_3 를 적용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개도국은 양허비율, 관세상한, 8항 적용여부, 이행기간 등 네 가지 항목별로 개도국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공식은 개도국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기 때문에 개도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 4개로 늘어나고, 협상 완료 후에도 개도국이 각자 다른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 등 복잡한 협상구조를 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표 1-1. 중남미 3개국 제안 조정계수 옵션

	옵션 1	옵션 2	옵션 3	옵션 4
양허비율	Lower[95]%^	Medium	Full [100]%	Full [100]%
관세상한 (조정계수A값)	β_1	β_2	β_2	β_3
8항 적용여부	No	No	Yes	No
이행기간	단기	중기	장기	중기

부록 2. 농업부문모형

주요 농산물의 관세감축에 따른 파급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설정된 농업부문모형은 크게 투입재 가격결정모형, 경지배분모형, 단수모형, 수급결정모형, 주도가격모형으로 나누어진다.

가. 투입재 가격결정 모형

농업부문의 투입재 가격은 외생으로 주어진 거시경제변수와 수급결정모형에서 산출된 내생변수인 농산물 가격의 함수로 설정하여 투입재 가격들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즉 GDP 디플레이터,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가 농기계와 경상투입재 가격의 함수식에 투입되어 농기계 가격과 경상재 가격 전망치가 추정되는 구조로 추정된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ln(machp_t) = a_0 + a_1 \ln(gdpdef_t) + a_2 \ln(exch_t) + a_3 \ln(agp1_t)$$

$$\ln(inputp1_t) = b_0 + b_1 \ln(gdpdef_t) + b_2 \ln(exch_t) + b_3 \ln(agp1_t)$$

$$\ln(inputp_t) = c_0 + c_1 \ln(inputp1_t) + a_2 \ln(machp_t)$$

여기서 $machp$ 는 농기계가격이고, $gdpdef$ 는 GDP deflator, $exch$ 는 환율, $agp1$ 은 경종작물의 농산물 가격, $inputp1$ 은 경상투입재(예를 들면 종자, 비료, 농약, 영농광열비, 영농자재비 등)가격으로 $inputp$ 는 농업투입재 가격으로 $inputp1$ 와 $machp$ 의 관계에서 도출된다.

나. 경지배분모형

먼저 총경지면적이 외생으로 주어지면 과수 및 시설면적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물을 하계작목과 동계작목으로 구분하여 품목간 경합관계를 고려한다. 하계작목으로 경지배분식에 포함된 품목은 쌀과 하계채소, 두류, 기타곡물, 특용작물, 하계 휴경이다. 이들 하계작목의 경지배분식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추정된다.

$$\begin{aligned}
 \ln(s_{11_t}) &= a_0 + a_1 \ln(p_{11_t}) + a_2 \ln(p_{21_t}) \\
 &\quad + a_3 \ln(p_{13_t}) + a_4 \ln(p_{14_t}) + a_5 \ln(wage_t) \\
 \ln(s_{21_t}) &= a_0 + a_1 \ln(p_{11_t}) + a_2 \ln(p_{21_t}) \\
 &\quad + a_3 \ln(p_{13_t}) + a_4 \ln(p_{14_t}) + a_5 \ln(wage_t) \\
 \ln(s_{13_t}) &= a_0 + a_1 \ln(p_{11_t}) + a_2 \ln(p_{21_t}) \\
 &\quad + a_3 \ln(p_{13_t}) + a_4 \ln(p_{14_t}) + a_5 \ln(wage_t) \\
 \ln(s_{14_t}) &= a_0 + a_1 \ln(p_{11_t}) + a_2 \ln(p_{21_t}) \\
 &\quad + a_3 \ln(p_{13_t}) + a_4 \ln(p_{14_t}) + a_5 \ln(wage_t) \\
 \ln(s_{40_t}) &= a_0 + a_1 \ln(p_{11_t}) + a_2 \ln(p_{21_t}) \\
 &\quad + a_3 \ln(p_{13_t}) + a_4 \ln(p_{14_t}) + a_5 \ln(wage_t)
 \end{aligned}$$

여기서 s_{11} 은 쌀의 경지면적 비중을, s_{21} 은 하계채소의 경지면적 비중, s_{13} 은 두류의 경지면적 비중, s_{14} 는 기타 하계곡물의 경지면적 비중, s_{40} 는 특용작물의 경지면적 비중을 뜻하며, P 는 해당품목의 가격(단 11은 쌀, 21은 하계채소, 13은 두류, 14는 기타 하계곡물, 40은 특용작물을 의미), $wage$ 는 농업노임을 뜻한다.

과수의 경우 재배면적은 전년도 재배면적과 전년도 투입재 가격, 그리고 전년도 자체가격의 함수로 설정했다.

$$\ln(acr_{i,t}) = a_0 + \sum_k b_{i,k} \ln(p_{i,t-k}) + c_i \ln(input_t) + d_i \ln(acr_{i,t-1})$$

여기서 i 는 해당품목, k 는 차수, acr 은 재배면적을 뜻한다. 차수 k 의 결정은 품목별 유목면적과 성목면적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사과와 경우 유목이 성목으로 되어 사과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소요된다.

다. 단수모형

단수의 결정은 전기 단수 또는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시간변수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다만 쌀의 경우는 평년 단수 480kg/10a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과수의 경우 성목면적의 비중을 고려하였다.

$$\ln(yd_{i,t}) = a_0 + a_1 \ln(yd_{i,t-1}) + a_2 \ln(T)$$

여기서 yd 는 단수를, 그리고 T 는 시간변수를 의미한다.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q_{i,t} = acr_{i,t} \times yd_{i,t}$)

라. 급결정모형

수요부문은 수요함수나 또는 가격함수 중 하나를 택하여 추정하였다.

$$\ln(cp_{i,t}) = a_{1,i} + a_{2,i} \ln(perd_{i,t}) + a_{3,i} \ln(rinc_t) + a_{4,i} \ln(sp_t)$$

여기서 cp 는 해당품목의 소비자가격, 해당품목, $perd$ 는 1인당 소비량, $rinc$ 는 1인당 가처분소득, $subsp$ 는 대체재 소비자가격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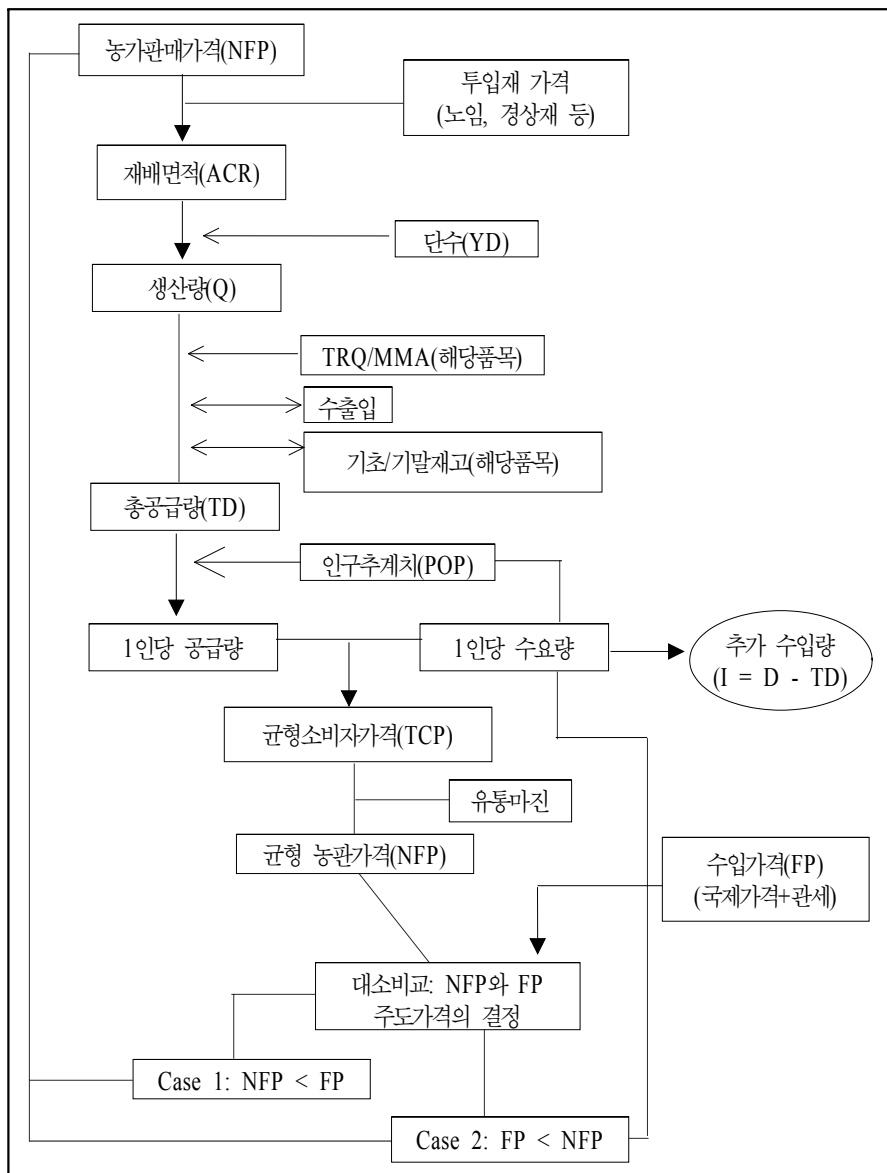
한편, 수출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급부문에서 산출된 생산량에다 MMA, 가

공, 종자, 사료, 수출(외생) 등을 감안하여 식용공급량을 계산하고, 이를 총인구로 나누어 1인당 식용공급량을 산출한 후 이를 위에서 구한 1인당 수요함수와 같다고 놓아 균형 소비자 가격을 도출한다. 균형소비자 가격이 도출되면 여기에서 유통비용(외생)을 차감하여 균형 농가판매가격을 구한다.

마. 주도가격모형

수출입이 없었을 경우 산출되는 균형 농가판매가격과 세계시장가격(외생)에 관세를 추가한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이 시장 주도가격이 된다. 수입여부는 수입가격이 균형 농가판매가격 보다 낮으면 이루어진다. 이 때의 수입량 결정은 주도가격을 1인당 수요식에 대입하여 주도가격 아래의 1인당 식용소비량을 계산하고 1인당 식용공급량과의 차이와 총인구를 이용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부도 3-1. 농업부문모형의 수출입 결정구조





Executive Summary

Issues and Evaluat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until 2006: Korea's Perspective

Jin Kyo Suh, Backhoon Song, Yeongkwan Song,
Jione Jung, and Chang-Soo Lee

The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d at Doha, Qatar, in November 2001 to launch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for multilateral negotiations to reduce the use of trade-distorting policies and bolster the development relevance of WTO. The Doha Agenda spans numerous issu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market access liberalization for good and services, and strengthening of WTO rule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But progress on the trade negotiation has been slow, especially in the key areas of agriculture,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and service. In the end, the five-year-old DDA trade negotiations were at a gravest crisis in July 2006. The negotiations were suspended at the end of July after an attempt by ministers from six key players (Australia, Brazil, the European Union, Ind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break the deadlock failed on 23 July 2006.

Furious recriminations have followed the breakdown, particularly between the EU and the US. the EU blamed the US for refusing to offer any new cuts

to farm subsidies; the latter counters that the EU gave too little on market access to make any such movement possible.

It was widely believed that unblocking the negotiations would require parallel progress on a 'triangle' of issues: the US would have to agree to deeper cuts to domestic farm support; the EU to increased agricultural market access, an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Brazil and India to lower industrial tariffs. Each group has been urging the others to budge first.

As for coefficients within the "Swiss" formula for cutting industrial tariffs within NAMA,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 including Japan, the US and the EU – have suggested a coefficient of "10" for themselves and "15" for developing countries. Industrialized countries agreed tha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reduce tariffs from bound levels, but be steep enough to cut into applied levels for some products. Countries like Argentina, India, South Africa and the Philippines, however, insisted that any reduction commitments for industrials should be balanced proportionally with the outcome in market access for farm products. The gap between coefficients for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close to each other.

With respect to agricultural tariffs and farm subsidies, farm trade negotiations hinged on how much the US would offer on further cutting its domestic farm supports. Moreover, the two sides – major importers and exporters – remained at crossed swords on the sensitive products issue. Importers like the EU, Japan and other members of the Group-of-10 defensive coalition addressed sensitive products with low values of tariff-rate quotas through reference to shadow imports. But, they would not agree to "core" access as de-

manded by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Japan suggested a hybrid approach in terms of the deviation between the tariff for sensitive products and the normal formula.

2007 will be a defining year for the Doha Agenda. After six years, negotiators are weary and eager to see som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Many hope to be able to deliver a deal in 2007. Political activity has already started with a host of bilateral meetings between the US, the EU, and Pascal Lam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TO. For now, Ministers are choosing their words carefully, trying not to raise too many expectations. Many eyes are on the upcoming World Economic Forum's Annual meeting, to be held in Davos, Switzerland 24 – 28 January, 2007. A mini-Ministerial meeting is expected to take place.

Domestic politics in the US, including the swearing in of the new Congress, the imminent expiration of Fast Track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reform of the Farm Bill, will all play a decisive role in the WTO negotiations. If there are no clear signs of political engagement early in the year, it is unlikely that the US Congress will consider passing a new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The current TPA expires on July 1, leaving a short window for negotiators to reach agreement in 2007. If nothing happens early on, it could put the Doha Agenda into hibernation until the next US presidential elections, in November 2008.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DA negotiation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Korean economic growth through trade expansion and a transparent trading system. The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e CGE analysis shows

the growth rate of real GDP would increase by 0.72~0.88 percents. In terms of the value of sectoral output, the total value of economy-wide outputs would increase by 1,521~4,908 million dollars.

The one of the strategical options of Korea for the ongoing DDA negotiations is to maintain a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agriculture. While in the NAMA negotiation, Korea need to cooperate developed countries to expand market access of industrial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the positive effect of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DA negotiations on Korean economy depends significantly on the level of market opening for the service sector.

KIEP 발간자료목록(2005~06. 12)

■ 연구보고서

-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윤창인·이재협
-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남상열 외
-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이창수·김군태·강준구·박순찬
-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 05-11 최근 해외자본 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백승관·신관호·전종규
- 05-12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오용협·김은경
- 05-13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환율 중심의 안정화 정책의 검토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 05-14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 율·왕윤종·오쿠다 사토루·정재완
-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정성호·박순찬
-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정승호·윤정혁·우상민
-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정성춘
-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동용승·홍익표·이재영·이종운·정형곤
-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 유재원·임혜준 편
-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김종혁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욱·김세원·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신정완·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율·김한성·박복영·황주성·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송백훈·송영관·정지원·박지현·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박성훈·박인원·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윤미경·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조종화·윤덕룡·송원호·이호진·이인형·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송원호·장국현·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박현정·이 근·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이인구·여지나·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김양희·이홍배·이형근·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이철원·신현준·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정재완·최윤정·오민아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황주성·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권기수·김진오·박수완·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신관호·이종화·김형주

■ Policy Analyses

-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Hongshik Lee, and Junkyu Lee
- 05-03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 06-01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 Chang Jae Lee ed.
- 06-02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 on East Asian Economies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정책자료

-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 최낙균 외
-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강정실
-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울 · 홍수연
-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 김홍종 · 김군테 · 오형범 · 나수엽 · 하유정
-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권식
-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 · 강준구 · 박지현 · 김정곤
-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편
-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창수 · 김우영 · 박순찬

- 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 이창수 · 김민성 · 윤창인 · 김진오
- 06-02 몽골경제와 한 · 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 정재완 · 유민우
-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 신현준
- 06-04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 여지나
- 06-05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 정성춘 · 이형근
- 06-06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and Doo Yong Yang

■ 지역연구시리즈

- 06-0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 김세원 · 박명호 · 김홍중

■ 정책토론회시리즈

-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 · 홍수연
-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 · 강준구 · 박지현 · 김정곤

■ 세미나자료모음

-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Reconsid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홍중 · 박성훈 · 페터 가이 편
- 06-01 Road to Rpsperity and Cooperation: Financial Hub in Northeast Asia
- 06-02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06-03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06-04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APEC Study Series

-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 OECD Study Series

-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 Doo
-Yull Choi

■ Discussion Papers

-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 Working Papers

-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 Vivek Jayakumar, Tae
Hwan Yoo, and Yoon Jung Choi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 Françoise NICOLAS
-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 Sumio Kuribayashi
-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 James H. Chan-Lee
-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 임 명
-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Simon Hix and Hae-Won Jun
-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 Zhang Jianping

■ 지역리포트

-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이재영・신현준・김선영
-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배희연

-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獨 경제관계 / 김흥종·김균태·Bernhard Seliger
-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성춘
- 06-01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알제리·나이지리아 / 박복영·황주성
·박철형

■ 지역연구회시리즈

-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이종윤
-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장형수·정여천
-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 박승찬
-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미무라 미쓰히로
-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 유장희·김은미
- 06-01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 Won-hwa Park, Heungchong Kim, and Linda MADUZ

■ 단행본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종·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徐濤敎

고려대학교 석사

미국 메릴랜드대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jksuh@kiep.go.kr)

著書 및 論文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소득피해 추정과 협상대책』 (공저, 2006)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공저, 2006) 외

宋栢勳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bsong@kiep.go.kr)

著書 및 論文

“Investment in R&D and firm level productivity and survival”(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5)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I)(공저, 2005) 외

宋泳官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現, E-mail: ysong@kiep.go.kr)

著書 및 論文

「지역주의와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논의동향」(『OECD Focus』, 7월, 2004)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동향」(『월간 KIEP 세계경제』, 7월, 2004) 외

鄭智元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석사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식품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現, E-mail: jjung@kiep.go.kr)

著書 및 論文

“Understanding the COMPAS Model: Assumptions, Structure,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2004) 외

李彰洙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호주국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국제학부(現, E-mail: chslee@khu.ac.kr)

著書 및 論文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공저, 2004) 외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공저, 2005) 외

연구보고서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2006년 12월 26일 인쇄

2006년 12월 29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250-0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専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B)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Issues and Evaluat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 until 2006: Korea's Perspective

Jin Kyo Suh, Backhoon Song, Yeongkwan Song, Jione Jung, and
Chang-Soo Lee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의 참여한 이견 대립으로 중단되었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최근 미국과 EU의 비공식접촉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7년 상반기 중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의 핵심 의제인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를 중심으로 2004년 7월 기본골격 도출 이후 최근까지의 협상 동향과 핵심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DDA 협상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또한 DDA 협상의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2500
ISBN 978-89-322-1250-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